



2023년
장안대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일: 2024년 4월 4일

장안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24년 4월 4일

이 보고서는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안대학교 총장 이 종 진



목 차

- 제1장 대학개요2
 - 1. 대학의 설립이념과 학훈2
 - 2. 대학의 기본현황 및 교육목적과 인재상2
 - 3. 중장기발전계획 20305
 - 4. 대학기구조직도6

- 제2장 자체평가의 개요8
 - 1. 자체평가 근거 및 목적8
 - 2. 자체평가 추진체계10
 - 3. 자체평가 내용14
 - 4. 자체평가방법18
 - 5. 자체평가 추진일정19

- 제3장 자체평가 결과20
 -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20
 - 2. 교육과정47
 -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69
 -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103
 - 5. 학생140
 - 6. 교·직원179

- 제4장 종합분석 및 활용196

1. 종합분석	196
2. 자체평가지표 평가(성과평가) 환류	201

제1장 대학개요

1. 대학의 설립이념과 학훈

1) 대학의 교육이념

학교법인 서림학원이 설립한 장안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본교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품격,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 직업 소명을 다하는 열정을 갖춘 프로인재를 양성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학식과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 (2) 전문적인 이론과 실험실습교육으로 창의력을 개발하여 현대의 고도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

2) 학훈

자아실현

학교법인 서림학원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실하고 유능한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안대학을 설립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식과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선량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전문적인이론과 실험실습 교육으로 창의력을 개발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직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인 자아 실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대학의 기본현황 및 교육목적과 인재상

1) 대학의 기본현황

총장 성명	이 종 진	전화번호	031-299-3000		
설립자 성명(사립)	류 중 욱	설립연도	1979년		
종류 ¹	전문대학	본교/캠퍼스 ²	본교		
소재지 ³	경기도 화성시	설립유형 ⁴	사립		
학생수 ⁵			교직원수		
편제 정원	재학생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⁶	직원
	정원 내	정원 외			
4,776명	2, 133명	248명	125명	209명	44명
단과대학·학과 수	단과대학		1개		
	학과(부) ⁷		37개 학과(8개 학부)		
재정 현황 ⁸	‘21년 결산		40,725,991,740원		
	‘22년 결산		35,159,850,582원		
	‘23년 추가경정예산		32,818,415,553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홈페이지	http://www.janga.ac.kr				

2) 대학연혁

대학연혁에 따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대학연혁

연 도	주요 내용
2016	01월-제 17대 총장 우완기 박사 취임 03월-중장기발전계획 JUMP 2017 비전선포식 행사 진행 11월-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예비대학(꿈의대학) 운영 협약 체결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수사업(K-Move) 평가 연수 과정·운영기관 모두 'A등급' 획득 12월-2017년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인가(식품영양과, 사회복지과 1년제) (총 14개학과 295명)
2017	01월-경기도 주관 2017년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 참여대학 선정 02월-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17년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운영 약정 04월-「2017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선정 2017년 전문대 연계 일반고 2학년 직업교육 위탁기관 선정 05월 - 대학생기업체 예비취업협력사업 선정

연 도	주요 내용
	08월 - 경기도 남서권역 7개 전문대학 교육협력 협약식 체결 09월 -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 비전선포식 행사 진행 -2017년도 2학기 경기도교육청 꿈의 대학 강좌 운영 : 수강인원 240명, 이수인원 132명
2018	01월 -경기도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사업 선정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인증대학 선정 - 제18대 우완기 박사 총장 취임 02월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평가 인정 08월 - 전문대학연계 고교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양식조리바리스타, 메이크업네일아트)
2019	04, 05월 -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선정
2020	01월 - 『K-Move 스쿨 해외취업 연수과정』 A등급 선정 02월 - 제19대 우완기 박사 총장 취임
2021	03월 - 제10대 조재국 박사 이사장 취임 05월 - 제20대 김태일 박사 총장 취임
2023	02월 -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 비전선포식 행사 진행 05월 - 김지영 박사 총장 직무대행 취임 09월 - 정사언 박사 총장 직무대행 취임 12월 - 이종진 박사 총장 취임

3) 대학의 교육목적과 인재상

(1) 대학의 교육목적

장안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자아실현의 교훈아래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유능한 전문 직업인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재상



3. 중장기발전계획 2030



그림. 장안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Renewal 2030)

4. 대학기구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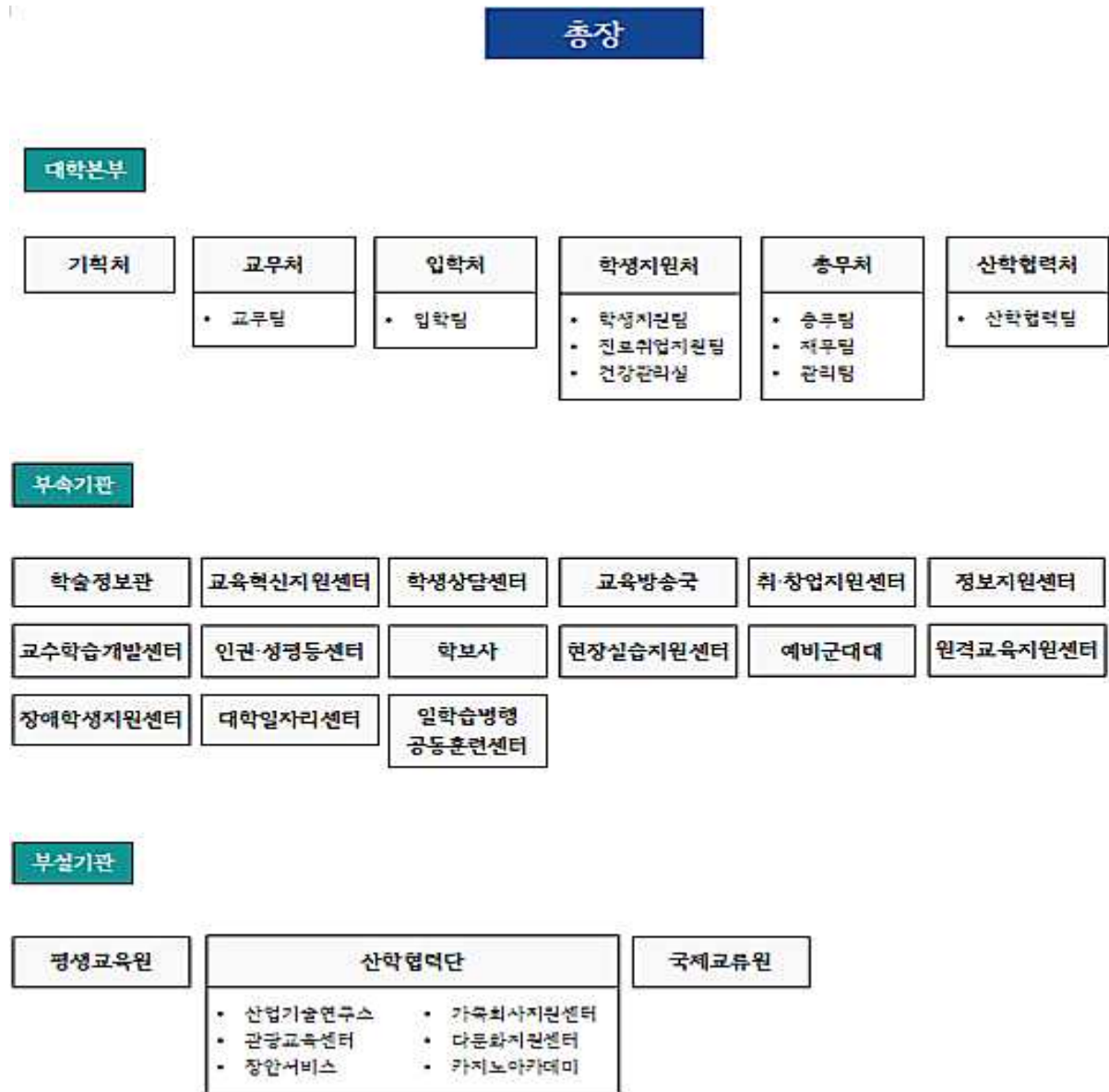


그림. 대학본부 조직도

학부 및 학과

<p>지식융합경영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경영과 • 프렌차이즈경영과 • 물류부품과 • 세부회계과 • 고객서비스과 • 온라인쇼핑과 • 스마트물류드론과 • 마케팅미디어경영과 • 금융재테크과 	<p>호텔관광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경영과 • 관광경영과 • 항공관광과 • 호텔코리과 • 의식비즈니스과 	<p>글로벌외국어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 • 디지털비즈니스일본어과 • 디지털비즈니스영어과 	<p>호텔관광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과 • 행정실무서비스과 • 경찰행정서비스과 • 봉사관과 • 유아교육과
<p>건강과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학과 • 바이오보건환경과 • 뷰티케어과 • 생활체육과 • 운동처방과 • 바이오응답물리학과 	<p>IT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컨텐츠과 • 멀티미디어컨텐츠과 • 소프트웨어융합과 	<p>디자인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디자인과 • 스타일리스트과 • 디지털응용디자인과 • 시각디자인과 	<p>예술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트리밍과 • 실용음악과

그림. 학부 및 학과 조직도

제2장 자체평가의 개요

1. 자체평가 근거 및 목적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11조의 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 ①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중 기관 평가·인증 신청 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 가. 평가·인증기준이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
- 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 관련

- 가. 평가·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
- 다.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
- 라.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 마.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 바.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개정)

○ 장안대학교 「학칙」 제21장 95조 및 「자체평가규정」

- 「학칙」 제 95조에 의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규정」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제12조 (평가계획 수립) 기획처는 매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과)에 통지한다. (시행 2020.1.21.)

제13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과)는 기획처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시행 2020.1.21.)

제14조(평가실시) ① 기획처에서는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제출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시행 2020.1.21.)

2) 자체평가의 목적

장안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장안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3.23.)

- 자체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향상 및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함
- 대학발전계획에 근거한 자체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 체제 구축하고 신뢰성이 바탕이 된 자체평가 결과 공개로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대학의 혁신과 체질개선을 위한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대학 자체평가의 대외 신뢰성을 제고함
- 대학은 교육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2. 자체평가 추진체계

1) 조직구성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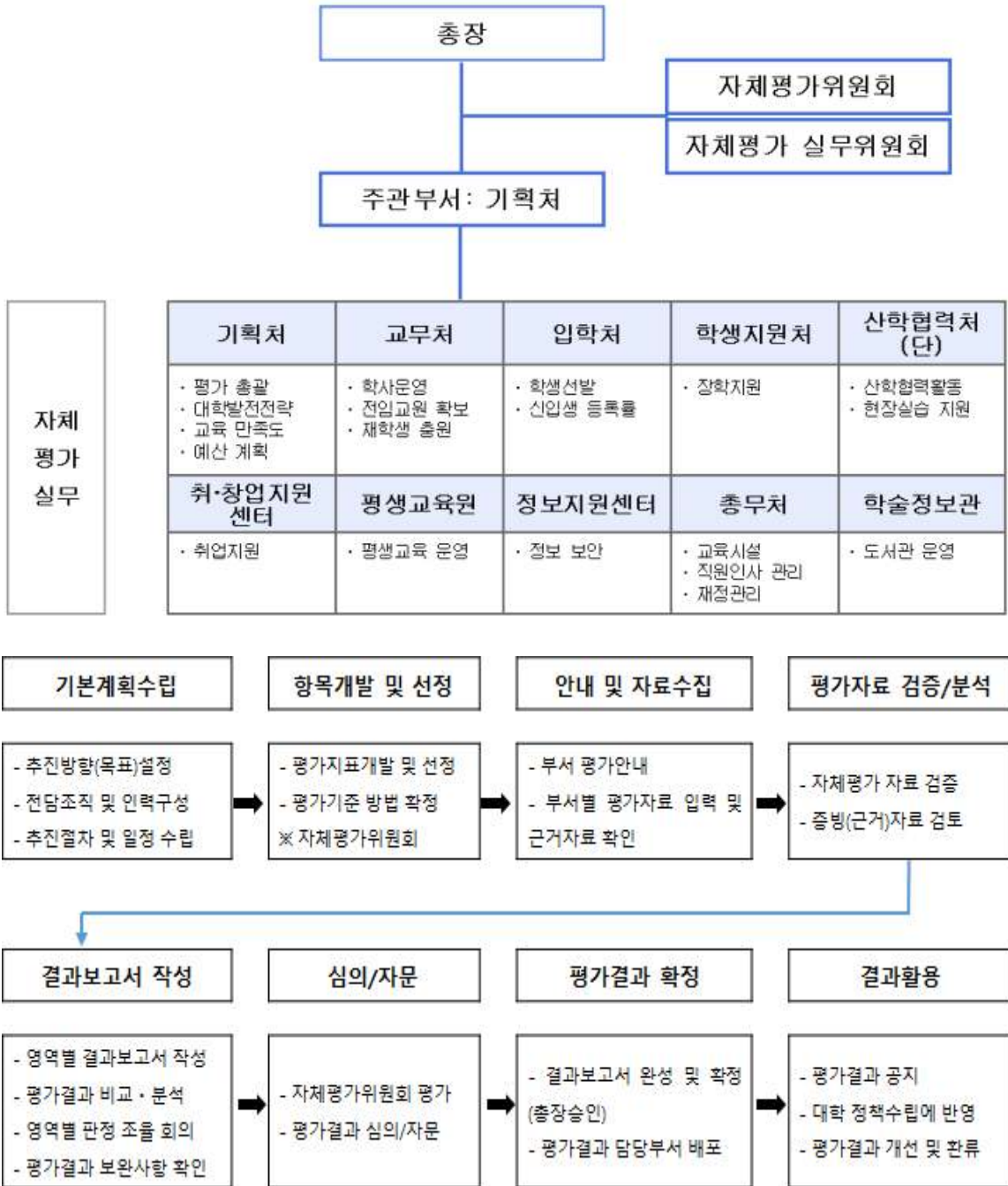


그림. 조직구성 및 추진절차

2) 단계별 업무 추진 내용

사전준비 단계	추진 및 유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평가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자료 수집 •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숙지 • 한국대학평가원 대학통계 데이터 검토 • 평가 대상 대학 담당자 워크숍 참석 • 자체평가 추진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이전 평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기획처
▼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단계	추진 및 유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 • 자체평가 추진 일정 계획 수립 • 소요예산 추정 및 확보 • 조직 구성 • 평가 방법 결정 • 평가결과 활용 계획 수립 • 보고서 집필 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및 업무 분장 • 부서별 업무협조 체계 정비 	기획처 자체평가위원 지표관리위원회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행정부서
▼	
평가지행 단계	추진 및 유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 평가내용/인증기준/인증판정에 대한 이해 • 자료 수집 및 분석 • 평가위원별 평가활동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 자체평가보고서 보고 	기획처 지표관리위원회 자체평가실무위원
▼	
평가결과 활용 단계	추진 및 유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자체평가 시행 목적에 따른 결과 활용 • 대학발전 계획에 자체평가 결과 반영 	기획처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행정부서

그림. 단계별 업무 추진 내용

3) 위원회 구성

자체평가는 기획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1) 자체평가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경찰법률서비스과	기획처장	정○○	위원장(당연직)
사회복지과	교무처장	정○○	위원
시각디자인과	학생지원처장	배○○	위원
식품영양학과	입학처장	이○○	위원
온라인경영과	산학협력처(단)	주○○	위원

(2) 지표관리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대학본부	총장	이○○	위원장(당연직)
경찰법률서비스과	기획처장	정○○	위원
식품영양학과	입학처장	이○○	위원
호텔경영과	교수	김○○	위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	서○○	위원
기획팀	기획팀장	홍○○	위원

(3) 자체평가 실무위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경찰법률서비스과	기획처장	정○○	위원장(당연직)
호텔경영과	교수	김○○	위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	서○○	위원
사회복지과	교수	박○○	위원
외식비즈니스과	교수	장○○	위원
바이오동물보호과	교수	강○○	위원
주얼리디자인과	교수	천○○	위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	위원

(4) 역할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처는 자체평가의 기획, 운영,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표. 자체평가위원회와 지표관리위원회의 역할

구분	역할(수행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규정 제2장 제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자체평가 심사 2.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 3. 평가위원회 운영 4. 대학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선정 5. 대학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선정 6. 대학자체평가 평가 7. 대학자체평가 결과 보고 8.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지표관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핵심 공시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시자료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체평가 실무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자체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2. 대학자체평가 자료의 분석과 평가 실행 3.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 자체평가 결과 활용 방안 마련 5. 대학자체평가를 위해 타 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자체평가 내용

1) 기관평가인증 기준반영: 6개 기준, 13개 세부기준, 30개 평가요소

표 기관평가인증 기준 평가요소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담당자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1.1.1	대학발전계획	정성	정○○ 홍○○
		1.1.2	교육품질 개선	정성	
	1.2 대학경영	1.2.1	조직과 운영	정성	정○○ 배○○
		1.2.2	재정 운용	정량	김○○ 홍○○
		1.2.3	감사	정성	이○○ 구○○
		1.2.4	대학의 책무	정성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정성	정○○ 류○○ 김○○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정량	정○○ 류○○
	2.2 교육 운영 및 질 관리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정성	백○○
		3.1.1	학생선발	정량	이○○ 성○○ 권○○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3.1.2	학사 및 수업관리	정성	정○○
		3.1.3	재학생 등록 유지율	정량	배○○
		3.1.4	학업 성취도 평가	정성	류○○
		3.1.5	원격수업(해당학과에 한정)	정성	백○○
	3.2 교수학습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정성	박○○ 최○○ 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4.1.1	산학협력활동	정성	주○○
		4.1.2	취·창업지원	정량	김○○ 김○○
	4.2 현장실습	4.2.1	현장실습 지원	정성	김○○
	4.3 평생교육체제	4.3.1	평생교육 지원	정성	양○○ 차○○
5. 학생	5.1 학생복지	5.1.1	학생복지	정성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정량	배○○ 이○○
		5.1.3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정성	박○○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정성	
	5.2 교육시설 취·창업 지원	5.2.1	도서관	정량	유○○ 선○○
		5.2.2	교육시설 확보 및 유지	정량	김○○

					김○○ 김○○ 유○○ 서○○ 박○○
		5.2.3	정보보안 지원	정성	정○○ 김○○ 류○○ 백○○ 서○○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6.1.1	인사관리	정량	정○○ 김○○ 류○○ 김○○ 백○○ 서○○
		6.1.2	역량 개발	정성	정○○ 김○○ 류○○ 김○○ 백○○ 서○○
		6.1.3	연구	정량	정○○ 김○○ 류○○ 김○○ 백○○ 서○○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6.2.1	처우 및 복지	정량	정○○ 김○○ 류○○ 김○○ 백○○ 서○○ 구○○
기준(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 (30개) 정성평가: 19개, 정량평가: 11개			

2) 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기본반영: 13개

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13개의 요구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

기준	평가요소	정량지표	산출식	요구수준	자료기준일
1	1.2.2. 재정운용	교육비환원율	$\frac{\text{총교육비}}{\text{등록금수입}} \times 100$	100.0%이상	'23 회계연도 결산
2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전공강좌당 학생수	$\frac{\text{총수강학생수}}{\text{총개설강좌수}}$	학년도별 평균 33명 이하 또는 모든 전공강좌 40명 이하	'23 년 1,2학기 '22 회계연도 결산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frac{\text{실험실습비}}{\text{재학생수}}$	평가 기간 내 평균157천원 이상	
3	3.1.1. 학생선발	신입생충원율	$\frac{\text{정원내 입학자수}}{\text{정원내 모집인원}} \times 100$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 평균(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의 90% 이상	'23 4.1./공시 '23.8.
	3.1.3. 재학생등록유지율	재학생등록유지율	$\frac{\text{정원내 재학생수}}{\text{학년도별 정원 내 입학생수}} \times 100$	80.0% 이상	'23 4.1./공시 '23.8
4	4.1.2. 취·창업지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률	$\frac{\text{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해외 취업자+농업어업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 인정자)}}{\text{총인원}} \times 100$	평가기간 내 평균이 60%이상(전체), 또는 예체능계 취업률 46% 이상이고, 예체능계를 제외한 기타계열 취업률이 62% 이상	'22. 12./공시 '23.12. ('21.8.~ '22.2. 졸업자)
5	5.1.1. 학생복지	장학금지급비율	$\frac{\text{장학금}}{\text{등록금수입}} \times 100$	10.0% 이상	'22 결산/공시 '23.8.
	5.2.1. 도서관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frac{\text{자료구입비}}{\text{재학생수}}$	평가기간 내 평균 21.6천 원 이상	'22 회계연도 결산
	5.2.2. 교육 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확보율	$\frac{\text{보유면적}}{\text{기준면적}} \times 100$	100.0% 이상	'23. 4.1/공시 '23.10.
6	6.1.1. 인사관리	전임교원 확보율	$\frac{\text{전임교원수}}{\text{학생수대비 교원법정정원}} \times 100$	50.0% 이상	'23. 4.1/공시 '23.8.
	6.1.3. 연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frac{\text{연구실적건수}}{\text{전임교원수}}$	평가기간 내 정보공시자료 기준 평균 0.2건 이상	'22 회계연도 결산
	6.2.1. 처우 및 복지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비율	$\frac{\text{교원인건비}}{\text{등록금수입}} \times 100$	평가기간 내 평균 30.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	'22 회계연도 결산

			비 비율 평균 41.0% 이상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frac{\text{직원인건비}}{\text{등록금수입}} \times 100$	평가기간 내 평균 11.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 비 비율 평균 41.0% 이상	'22 회계연도 결산
6.1.4. 교원역량개발	1학기 이상(최소 16주 연속)의 교원연수(연구년, 산업체 연수 등) 만 기재			23년도

4. 자체평가방법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으로 분류를 하여 자체평가 실시함

1) 정량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 모니터링 정량지표 항목에 대한 충족여부 점검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는 11개 평가요소 총 13개 요구수준에 대하여 충족수준 점검
- 대학 정보공시자료와 예·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충족여부를 점검
- 미충족시 개선방안 검토 및 해당부서에 개선 권고

2)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는 6개 기준, 13개 세부기준, 30개 평가요소 판단사항에 대하여 충족수준 점검
- 계획(P), 실행(D), 평가(C), 환류(A) 운영시스템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가능성을 검토
- 미충족 항목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해당부서 또는 학과(계열)에 권고
- 대학에서 지원이 필요한 미충족 항목에 대하여 정책지원을 권고

5. 자체평가 추진일정

자체평가 추진일정은 아래 표와 같음

진행 일정	진행 내용	비고
02.02.(금)	자체평가계획 수립	기획처
02.10.(토)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팀 및 자체평가 실무단 구성	기획처
02.14.(수)	자체평가 평가지표 개발 및 심의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위원회
03.07.(목)~03.15.(금)	행정부서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작성 및 제출	행정부서
03.16.(토)~03.17.(일)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1차 검토	자체평가실무위원
03.18.(월)~03.20.(수)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1차 심의	자체평가위원회
03.21.(목)~03.23.(토)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행정부서
03.24.(일)~03.28.(목)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2차 검토	자체평가실무위원
03.29.(금)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2차 심의	자체평가위원회
03.29.(금)	자체평가보고서 총장보고	기획처
03.29.(금)~04.01.(월)	행정부서 자체평가/ 자체평가지표 결과 공지, 이의신청 접수	기획처, 행정부서
04.02.(화)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심의(이의신청분)	자체평가위원회
04.02.(화)	최종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지표 총장보고	기획처
04.04.(목)	자체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공지	기획처

제3장 자체평가 결과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1.1.1 대학발전계획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하고 있는가?	✓
<p>a) 대학사명과 교육목표 공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음¹⁾ - (대학사명) 대학의 사명인 ‘창의적 전문직업인 양성’은 장안대학교 헌장 전문 및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의 Vision House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표하고 있음^{1),2),3)} - (교육목표) 1979년 설립된 장안대학교는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유능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음^{1),2)} - 대학의 설립목적 및 건학이념과 연계된 교육목표를 장안대학교 헌장 제1조(건학이념), 제2조(교육목표), 학칙 제2조(교육목표) 등 대학 제규정에 반영하여 교내 구성원에게 공표하고 있음^{1),2)} -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표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대학요람 등을 통해서도 명시하고 있음^{3),4)} <p>b) 대학사명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사명인 ‘창의적 전문직업인 양성’과 교육목표인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과 유능한 전문직업인 양성’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서로 연계되어 있음^{1),2)} <p>c)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는 1979년 대학 설립 이후 변경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2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a)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확인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은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내용, 재정운영계획, 성과지표, 달성수준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3),7),8)}
-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수립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은 2023년 1월 19일 대학평의원회, 2023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2023학년도부터 실행 중에 있음^{5),6)}

b) 대학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확인

-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 수립 시 교직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기초자료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반영함⁸⁾
- 또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고도화 TF운영, 추진과제 및 세부실행과제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⁸⁾

c) 대학발전계획 공표 및 추진실적 확인

-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은 비전선포식, 대학홈페이지, 대학요람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3),4)}
-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편성 지침에 중장기 발전계획 과제 목록을 포함하고, 부서 및 학과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전략과제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전략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음⁹⁾
- 또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은 매 학년도 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 예산집행 실적, 성과목표 달성 현황, 환류 사항 등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¹⁰⁾

3	대학은 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a) 대학발전계획 평가체제 확인

- 우리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 및 특성화 및 발전계획 관리 규정, 자체평가규정, 자체평가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자체성과평가를 기획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발전계획 개선 활동을 실시함^{11),12),13),14),15)}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의

성과달성 여부 및 환류사항을 심의하여 차년도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진행중¹⁵⁾

b) 대학발전계획 평가내용 확인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은 매년 학년도 시작 전 예산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학년도 종료 시점에 전략과제 월별 진행 경과, 과제별 성과 달성실적, 환류사항들에 대해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발전계획에 환류하고 있음^{9),10),15)}
- 우리 대학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달성이 어려워진 기존 중장기발전계획인 JUMP PLUS 2025를 폐기하고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인 Renewal 2030을 수립하여 2023학년도부터 실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인 Renewal 2030은 환류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를 보완하여 2023학년도 이후의 중장기발전계획 성과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⁷⁾

c) 대학발전계획 평가결과 반영 확인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환류사항을 반영하여 차년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¹⁵⁾
- 발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1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등의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함으로써 대학발전계획을 환류함^{15),16)}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대학은 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함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1.1	1) 장안대학교 헌장, 제1조(건학이념), 제2조(교육목표)
	2) 장안대학교 학칙, 제2조(교육목표)
	3)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 대내외 공표자료(홈페이지, 비전선포식)
	4) 대학요람(2022, 2023)
	5)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심의 관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3. 1. 19.)
	6)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의결 관련 이사회 회의록(2023. 1. 30.)
	7) 장안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Renewal 2030
	8)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자료 및 주관부서 추진체제
	9) 대학발전계획 예산 실적 및 예산편성지침,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서(2023)
	10)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2022, 2023)
	1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대학의 교육목표)
	12) 특성화 및 발전계획 관리 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13) 자체평가규정 제3조(평가대상), 제4조(평가영역),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14) 자체평가규정 시행규칙 제5조(자체평가 기준)
	15)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성과평가보고서 심의 결과 안내
	16) 업무분장,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성과평가 겸 자체평가 실무단 자료(2022,2023)

1.1.2 교육품질 개선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p>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자체평가규정을 마련하고, 자체평가규정 제12조(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1,4)} <p>b) 자체평가 추진조직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는 기획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1,4)} -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처는 자체평가의 기획, 운영,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¹⁾ - 성과평가팀 겸 자체평가실무단에서는 행정부서에 해당하는 지표도구 개발 및 심의를 진행하며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측정,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⁴⁾ <p>c) 자체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시행규칙 제5조(자체평가기준)에 제1호 의거하여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⁴⁾ -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 및 대학 자체평가규정 제5조(항목별 평가) 제2항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로 같음할 수 있으므로 2023학년도 3월부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2,4)} 		
2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
<p>a) 자체평가 시행 실적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규정 제12조(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⁴⁾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시기에 맞추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교 		

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 및 대학 자체평가규정 제5조(항목별 평가) 제2항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로 같음할 수 있으므로 2023학년도 3월, 2024학년도 3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⁴⁾

- 2023학년도 자체평가 시행규칙의 의거 성과평가팀 겸 자체평가실무위원을 구성하여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지표(성과평가)를 작성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내부평가 및 정부의 외부평가를 구분하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검토, 그 결과 대학 운영에 반영 하고자함⁴⁾

b)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실적 확인

- 우리 대학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자체평가결과는 전부 충족, 2023학년도 자체평가(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결과는 기준 1, 기준 6 보완으로 “조건부 인증” 되었음^{5),6)}
- 2021학년도에 실시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보완 사항에 대해 2021, 2022학년도에 개선을 완료했으며, 그 사항은 2021학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심사에서 보완 판정된 항목인 기준 1, 5, 6의 개선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음⁷⁾
- 2023학년도 자체평가(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은 수립하여 현재 보완 조치 진행 중임⁷⁾

c)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 실적 확인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의(평가) ②항의 의거하여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및 최종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였으며 2023학년도 자체평가보고서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한 후 행정부서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1),8)}

3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는가?	✓
---	--	---

a) 조사체계 확인

- 우리 대학은 교육만족도 규정을 근거로 매년 교육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본 규정에는 교육만족도 조사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조직 및 업무분장, 만족도 조사의 계획수립, 조사방법, 결과보고, 결과 개선 등의 세부사항이 정의되어 있음⁹⁾
-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 및 환류를 위하여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교육

- 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10,11)}
- 우리 대학은 교육만족도규정에 의거 부서 간 역할분담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 체계적으로 진행함⁹⁾
 - 총장: 교육만족도 조사 계획 승인 및 조사결과 검토 승인
 - 관련 위원회: 평가 범위 항목 및 조사결과 환류 계획 자문
 - 주관부서(기획처): 교육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및 시스템관리, 조사결과 통계 처리
 - 관리부서: 평가실시, 자료수집, 결과평가,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기타 교육 만족도에 필요한 사항
 - 행정부서 및 학과: 평가계획 의견수렴, 조사자료 제출, 평가결과 반영
 - 교육만족도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며 그 종류와 시기,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음⁹⁾
 - 재학생 대학 생활 실태조사는 연 1회 학기 초에 학생상담센터에서 수행
 - 강의 평가는 연 4회 학기 중, 학기 말에 교무처에서 수행
 - (재학생, 졸업생)교육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교무처에서 수행
 - (산업체)교육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학년말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 (교수, 학생, 산업체)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수시로 학기 말에 현장지원센터에서 수행
 - 기타 학과, 행정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는 수시로 사업 종료 시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지역사회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학년 말에 평생교육원에서 수행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학년 말에 교무처에서 수행
 - 우리 대학은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함⁹⁾
 - 재학생, 졸업생 만족도 조사는 전반적 만족도, 교육지원, 진로취업지원, 학사행정지원, 교육시설, 캠퍼스 환경 등 6개 항목 43개 문항으로 시행하였으며,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의 경우 인구통계적 변인 2개 문항(학년, 성별) 별도로 구성되었고,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에는 1개 문항(직무)이 별도로 구성되었음^{12,13)}
 -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는 우리대학 재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전공/학과 2개 문항, 교육과정 5개 문항, 교육환경 및 학생활동 문항 9개 문항, 인지도 문항 4개 문항, 전반적인 만족도 1개 문항, 개방형 3개 문항, 인구통계 2개 문항을 별도로 구성하였음¹⁴⁾

b) 조사실적 확인

- 재학생,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는 방법론을 토론하고 표본 추출을 통하여 온라인 (장안포털 및 모바일) 설문 조사로 시행하였으며,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는 학부모 설문지 배포 후 직접 기입법으로 작성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 진행함 교육만족도 조사에 대한 응답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전문가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파악함^{12),13),14)}

c) 조사결과의 반영실적 확인

- 만족도 조사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분석으로 결과가 도출되며,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도출함. 최종 결과는 대학 구성원들의 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후 보고서로 제작되어 대학구성원에게 공유되며, 교육서비스 개선에 활용됨^{12),13),14),15),16),17)}
- 교육만족도 조사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며, 각 학과의 학과장, 학부장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여 결과를 열람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학과별로 학과 불만족 이유 등 정보 제공을 통해 학과 운영 및 개선방안 수립에 참고함^{14),15),16)}
- 만족도조사 결과의 교육서비스 개선 사례
 - 만족도조사 결과는 대학 구성원들의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단계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함
 - 2021학년도 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 교양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가 있어 2022년 교육과정 개편 시 수요자적 관점에서 운영하고, 학생의 설문 조사, 요구도 조사를 통해 희망 교과목을 선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함¹⁸⁾
 - 2022년도 교양교육의 전략을 「J-CONNECT」로 수립하고, 대학 수준 핵심역량의 매칭을 통해 많은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이 개설되었지만, 특정 핵심역량에 편중되어있다는 문제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 신설을 통해 기존 교과목과의 균형적 역량 매트릭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적용함¹⁹⁾
 - 2023년도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의견수렴 및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실시된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2022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상승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만족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임¹⁵⁾
 - 2023년도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과 핵심역량 매트릭스 등의 적용을 통하여 2022년 대비 2023년에 재학생 만족도 학사행정지원의 항목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학생들의 원활한 학사행정 정책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환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후 논의할 계획임¹⁵⁾

<p>판단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음.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음 	<p>Y</p>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	자체평가규정 제3조(평가대상), 제4조(평가영역),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2)	자체평가규정 시행규칙 제5조(자체평가 기준)
3)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성과평가보고서 심의 결과 안내
4)	업무분장,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성과평가 겸 자체평가 실무단 자료(2022,2023)
5)	자체평가 보고서(2023)
6)	자체평가 결과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7)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실적 및 중장기발전계획 모니터링 자료(2022, 2023)
8)	자체평가 결과 공유 확인(2023)
9)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10)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11)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
12)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실적(2022, 2023)
13)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 실적(2022, 2023)
14)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실적(2022, 2023)
15)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22, 2023)
16)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22, 2023)
17)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22, 2023)
18)	장안대학교요람 교육과정 소개(2022)
19)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회의록(2022)

1.2 대학경영

1.2.1 조직과 운영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p>a) 조직구성 관련 규정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정관, 학칙, 직제규정, 사무관리 규정, 위임전결규정, 각종 위원회 규정에 행정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에 관련된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1),2),3),4),5),6)} - 직제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조직도를 최신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1),2),7)} - 학교법인 서림학원 이사회에서 예결산, 대학발전계획, 기타 학교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등의 대학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⁶⁾ - 인사발령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⁸⁾ <p>b)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일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는 대학본부, 부속기관 그리고 부설기관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본부(6개 처):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지원처, 총무처, 산학협력처 · 부속기관(13개 기관): 학술정보관, 학보사, 교육혁신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취·창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예비군대대, 정보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인권·성평등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 부설기관(3개 기관):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국제교류원 		
2	대학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문서관리체계를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
<p>a) 대학의 규정체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을 관리하기 위해 제규정류관리규정 및 제규정류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을 공개하고 있음^{9),10),11)} 		

b) 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 확인

- 우리대학은 규정류의 제·개정, 폐지 시 제규정류관리규정 제7조(제정 및 폐제)에 의거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포함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대학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있으며, 제규정 제개정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12),13)}
- 규정 제·개정, 폐지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자료
-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 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받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포함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구성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고 있음¹⁴⁾

c) 문서관리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

- 우리대학은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서규정에 의거하여 문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의 일련번호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여되며,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운영 예정임^{15),16)}

3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는가?

✓

a)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 확인

- 우리 대학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갖추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17),18),19),20)}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전임교원 5인, 직원 3인, 학생 1인, 조교 1인, 산업체인사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 4인(법인이 추천하는 인사 1인 포함), 학생대표 3인, 관련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등 총 8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무위원회는 교무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관장, 평생교육원장, 교수평의회 추천 1인, 직원 총회 추천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b)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확인

- 각 위원회는 회의 실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²¹⁾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9항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²²⁾
-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6항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²²⁾

c) 학사구조 개편 규정준수와 후속조치 확인

- 2022학년도에는 2023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실적이 없음
- 2023학년도 “장안대학교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대학 구성원 공감대 기반의 학사구조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학과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하였음^{23),24)}
- 관련하여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학과구조조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마련함^{25),26),27)}
- 학과의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의 처우 규정 제정 및 폐과 학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전과가 가능하도록 학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28),29)}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문서관리체계를 갖추고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음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2.1	1) 정관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2) 학칙 제2장 직제, 제10조(조직), 제18장 부속 및 부설기관
	3) 직제규정
	4) 사무관리규정
	5) 위임전결규정
	6) 위원회 운영 및 관리규정 및 위원회 운영 현황(2023년 6월)
	7) 대학 조직도
	8) 인수인계서(2022, 2023)
	9) 제규정류관리규정
	10) 제규정류관리규정 시행규칙
	11) 제규정집 대학홈페이지 공개 자료
	12) 제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 자료
	13) 제규정 제개정 폐지 현황 자료(2022, 2023)
	14) 규정 제·개정, 폐지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자료
	15) 문서규정
	16) 문서수발신대장(기안, 대외접수, 협조문)
	17)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 위원위촉공문
	18)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 위원위촉공문
	19)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 위원위촉공문
	20) 교무위원회규정 & 위원위촉공문
	21) 각 위원회 회의록(교무위원회, 학과구조조정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22) 대학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자료(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수회)
	23) 장안대학교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실시 자료
	24)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25) 학사구조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직원 공청회 실시 자료
	26) 학과구조조정위원회 회의록
	27) 학사구조개편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회의록
	28)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의 처우 규정
	29) 장안대학교 학칙

1.2.2 재정 운용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집행, 변경 및 결산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가?	✓
<p>a) 예산 편성 시 대학발전계획 연계 및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2023학년도부터는 Renewal 2030)와 기관인증평가에 체계적으로 연계된 사업부서별 예산 편성하여 추진 및 운영하고 있음¹⁾ - 예산은 매 학년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제14조 및 연도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서립학원 이사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대학의 대학 실정에 맞는지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2),3),4)} -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사업(예산)계획서에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학생, 직원, 교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서립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예산 최종 확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5),6),7),8)} <p>※ 법령에 의한 결산 절차 준수^{9),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5항에 의거하여 결산서(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포함)가 확정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대학 홈페이지 예·결산공고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확정된 결산을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음^{14),18),19)} <p>b) 예산편성, 집행, 변경, 결산 관련 법령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을 시행하고 있음^{5),6),7),8)}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함^{2),3),4)}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학 특례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서립학원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재정운영이 평가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우리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내·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정운영을 관리하고 있음^{11,12)}
- 예산 통제 강화를 위하여 2022회계연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 신청을 시작하였고, 2023회계연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¹²⁾
- 사립학교법 제 32조의 2항에 따라 적립금의 목적에 맞게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임의퇴직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특정목적 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목적에 맞게 관리·사용하고 있음
- 이월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사립(전문)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이월 항목으로 적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전연도 잉여금처리원칙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또한 의결된 잉여금처리원칙에 의하여 등록금회계에서 직접교육비 지출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여 이월금의 활용계획을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하고 있음¹³⁾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가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대학홈페이지 예·결산공고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확정된 예산을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음^{14),15),16),17),19)}
- 사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²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 편성 부서와 집행부서를 기획처와 재무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c)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우리 대학은 대학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대학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 회계감사 및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및 자문, 대학 발전계획 성과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당해 연도 추진사업의 비용 집행에 대한 예산 대비 집행 실적 등 재정운영 결과를 취합하고, 이는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환류하고 있음²¹⁾
- 등록금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²²⁾로 2022학년도에는 대학 운영 재원 확대를 위하여 장안대학교 축구부 및 국제교류원 신설하여 기존 학과 특성을 반영한 신입생 유치 및 한국어교육원의 학생 유치하였음. 그 결과 2022학년도 축구부²³⁾ 20명에서 2023학년도 축구부 46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회계연도 국제교류원²⁴⁾ 수입 424,650,675원에

서 2023학년도 수입이 약 1,000,000,000원으로 증가하였음. 2024학년도 수입은 1,492,000,000원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음.	
2	교육비 환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정량(모니터링): 교육비 환원율</div> <p>a) 정량지표 양식)1.2.2 재정은용 - 교육비환원율을 활용하여 작성(입증자료 같음)</p> $\text{교육비 환원율(\%)} = \frac{\text{총교육비}}{\text{등록금 수입}} \times 100$ <p>2021년: 144.8% 2022년: 161.5% 2023년: 192.3%</p>	
3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
<p>a) 다양한 재원 확보 실적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등록금 수입 외에 기부금, 법인 전입금²⁵⁾,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원 수입, 평생교육원 수입, 학교 부대시설 활용한 기타교육부대수입 등 다양한 수익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출 측면에서도 예산 절감 노력 등으로 경상비용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 대학은 등록금에 대해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전문대학 등록금 인하정책(수업료 동결 및 입학금 단계적 인하)에 동참하였고, 2023학년도²⁶⁾에 입학금 전면 폐지하여 수입 예산이 축소되었고, 감소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 원천을 다양화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서림학원으로부터 2021학년도에 법정부담전입금 1,000,000원, 2022학년도에 경상비전입금 3,000,000원 및 법정부담금 1,200만원, 2023학년도에는 45억원 지원 받음. 법인 적립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²⁵⁾ - 운동장, 체육관, 강의실 등 학교 부대시설 대여²⁷⁾ 및 식당 운영, 생활관²⁸⁾ 임대보증금 수입 등을 통한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2021학년도 1,357,783,462원, 2022학년도 1,584,748,219원, 2023학년도 약 1,280,930,000원의 수익을, 국제교류원²⁴⁾ 신설로 2022 	

학년도 424,650,675원, 2023학년도는 약 820,000,000원의 수익을, 평생교육원²⁹⁾의 강좌 개설로 2021학년도 351,800,825원, 2022학년도 419,916,673원, 2023학년도 약 394,550,000원(대여료 및 사용료 제외)의 수익 등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30), 31)}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발전기금 및 장학기부금 등 기부금 수입³²⁾으로 2021학년도 93,536,631원, 2022학년도 63,808,000원, 2023학년도 약 255,589,100원의 수익을, 발전기금 등 기금적립을 통합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교육외수입으로 2021학년도 210,062,063원, 2022학년도 501,672,805원, 2023학년도 약 787,011,914원의 수입이 발생함^{9),32)}

b) 재원 확보 노력

- 우리 대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전기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의 강좌 홍보, 국제교류원 학생 모집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서림학원으로부터 2021학년도에 법정부담전입금 1,000,000원, 2022학년도에 법인법정부담금 1,200만원, 2023학년도에는 법인법정부담금 721,266,000원, 경상비 전입금 3,778,734,000원 총 4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수익사업 확보를 통하여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²⁵⁾

<p>판단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집행, 변경 및 결산 업무를 실행하고 있음 ▪ 교육비 환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p>Y</p>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2.2	1) 장안대학교 발전계획 JUMP PLUS 2025 ‘재정운용계획’ p.275~278
	2)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회의록(교비 예결산)(2021, 2022, 2023학년도)
	3)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교비 예결산)(2021, 2022, 2023학년도)
	4) 서림학원 이사회 회의록(교비 예결산)(2021, 2022, 2023학년도)
	5) 부서별, 학과별 사업계획서(2023, 2024학년도)
	6) 장안대학교 예산 편성 관련 문서(2021, 2022, 2023, 2024회계년도)
	7) 장안대학교 예산편성지침(2023, 2024 회계연도)
	8) 장안대학교 본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서(2021, 2022, 2023, 2024 회계연도)
	9) 장안대학교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2021, 2022회계연도)
	10) 외부 회계감사(결산) 감사보고서(2021, 2022회계연도)
	11) 통합정보시스템 예산 편성 화면 캡처(2021, 2022회계연도)
	12) U-ERP 예산 편성 화면 캡처(2022, 2023, 2024회계연도)
	13) 기금운용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4)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예·결산공고
	15)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정보공개 > 대학평의원회
	16)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정보공개 > 등록금심의위원회
	17)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학교법인 > 이사회 회의록
	18) 장안대학교 예산서 교육부 보고(2022, 2023, 2024회계연도)
	19) 대학정보공시 8-라. 예·결산(합산재무재표) 현황,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대학정보공시 9-가. 등록금 산정근거
	20) 장안대학교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21) 부서별 학과별 성과평가보고서 샘플(2023학년도)
	22) 대학정보공시 8-차. 등록금 현황
	23) 장안대 축구부 학생 현황 자료
	24) 국제교류원 2022회계연도 수입 현황 및 2023회계연도 수입 예산 자료
	25) 학교법인 서림학원 전입금 관련 문서(2021, 2022, 2023학년도)
	26) 장안대학교 2023회계연도 본예산서
	27) 학교 시설물 대여 및 사용 수입내역(U-ERP)
	28) 생활관 운영 관련 문서

연번	자료명
29)	평생교육원 2021, 2022회계연도 수입 현황 및 2023회계연도 수입 예산 편성 자료
30)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메인화면
31)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수 시행 관련 문서
32)	기부금 관련 문서

1.2.3 감사

○ 주요판단사항

1	대학은 감사를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p>a) 감사 관련 규정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대학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을 준수하여 법인감사, 외부회계감사,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1), 2) 3),4)} - 우리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1항,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25조, 내부감사규정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년도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2),4)} <p>b) 감사 관련 담당부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는 내부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팀은 감사명령자인 총장이 행정직 중 상위 직급자를 위주로 위촉하여 서로 다른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⁴⁾ <p>c)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윤리적 책무 규정,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인권·성평등센터 운영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각 개별 규정 등에서 내부신고 절차,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을 제정(2024.3.8.)하였음⁵⁾ <p>d) 감사결과 공개 및 개선실적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를 감사명령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보고도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음⁴⁾ - 회계감사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여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6),7)} - 대학정보공시자료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교육부의 2013, 2017년도 학교법인 서림학원(장 		

안대학교) 회계부분감사 처분 미이행 건으로 해당 건의 해결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학교 회계 세입 조치를 완료 하는 등 미이행 조치를 진행 중임 ⁸⁾		
판단 결과	▪ 대학은 감사를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함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	내부감사규정
2)	회계 감사보고서(2021, 2022 회계연도)
3)	외부 회계감사(결산) 감사보고서(2021, 2022회계연도)
4)	내부감사 시행 자료(2022, 2023학년도)
1.2.3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6)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예·결산공고
7)	대학정보공시[10-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8)	(교육부 공문)감사처분 미이행 관련 ‘서면경고’ 통지

1.2.4 대학의 책무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
<p>a) 윤리 규정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책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장안대학교 헌장, 윤리적 책무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성 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연구윤리위원회규정, 교원복무규정, 직원 복무규정 등에 포함하여 직무수행에 관련한 윤리 준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 - 2021~2022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산안을 승인 후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²⁾ <p>b)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2017년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처분 미이행으로 2023학년도 총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 행정제재를 받았으며, 이행을 완료함^{3,4)} - 학교법인은 2013, 2017년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처분 미이행 건의 처리에 대해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대학정보공시 10-가(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의 해결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학교 회계 세입 조치를 완료 하는 등 미이행 조치를 진행 중임⁵⁾ <p>c) 윤리적 책무 준수 노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23학년도에는 성폭력예방교육 2,007명(재학생), 폭력예방교육 431명(교직원)이 교육을 이수함⁶⁾ -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3학년도에 부정청탁 금지 교육 339명,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9명, 아동학대 예방교육 419명,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433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419명, 보안교육 419명이 교육을 이수함⁶⁾ 		
2	대학은 지역사회 봉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
<p>a) 지역사회 봉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장안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자아실현 정신을 구현하여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장안사회봉사단규정」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매년 사회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음^{7,8)} 		

- 「장안대학교 장안사회봉사단규정」 제1장 2조에 의거 본 봉사단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⁸⁾
- ‘RENEWAL2030’ 중장기발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부서 발전계획 과제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5개 이상의 사회봉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음
- 매 학년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과 및 행정부서로부터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필요 예산을 확보해 봉사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⁹⁾
- 2023학년도에는 2023. 8. 25. 사회봉사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3. 9. 21. 장안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모에 신청한 7개 단체 중 평가 기준에 미흡한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음^{9),10)}
- 2022학년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에 참여하여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육 재능을 기부하여 봉사하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음¹¹⁾

b) 지역사회 봉사실적

- 2022학년도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르신 90여 명에게 메이크업, 네일아트, 분장, 특수 분장과 심리적 안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뷰티 테라피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이웃을 배려하고 온정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총 1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3회 동안 9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¹²⁾
- 2022학년도에 7명의 참가자가 함께 경기옛길을 걸으면서 환경정화를 하는 친환경 봉사 프로그램 ‘경기옛길과 함께하는 줍깅데이’를 시행함. 줍깅은 조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임¹²⁾
- 2022학년도에 장안대학교 인근의 복지기관 3곳에서 밑반찬 포장 및 배부를 비롯한 복지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제과제빵, 주야간보호센터, 원예, 하늘소풍 등)의 보조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3개월간 총 30회(122.5시간)의 봉사활동을 총 58명이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¹²⁾
- 2022학년도에 주인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화성시 내 유기견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유기견들을 산책 및 목욕시키고, 유기견 보호센터 청소, 봉사동아리 페이스북 관리, 유기견 입양캠페인을 통해 유기견들의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총 3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4회(12시간) 동안 50마리의 유기견들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였음¹²⁾
- 2022학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에 19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밀알지역아동센터,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등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61명의 아이들에게 K댄스와 패션, 디자인과 업사이클링,

<p>패션주얼리 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 캠프를 진행하였음¹³⁾</p> <p>- 2023학년도 하계 및 동계 방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비전업 청소년학교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디어, 블링이론, 악기연주 수업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학과 지식을 활용한 봉사 캠프를 진행하였음¹³⁾</p>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지역사회 봉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2.4	1) 윤리적 책무를 위한 제규정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2)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및 홈페이지 공개자료(2021, 2022 회계연도)
	3) 교육부 행정제제 확정 통지 공문
	4) 입학정원 5% 모집정지 행정제제 이행 완료 입증자료
	5)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이행 및 회계부분 감사처분 미이행 관련 교육부 공문 및 지정기부금 세입자료
	6) 윤리적 책무를 준수하기 위한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법정 의무교육 실시 결과 보고
	7) 장안대학교 사회적 책무 규정(제정 2011. 7. 1., 개정 2020. 3. 23.) 제6조(사회봉사 활동)
	8) 장안대학교 장안사회봉사단규정(제정 2011. 3. 1., 개정 2015. 9. 1.) 제1장(총칙)
	9) 사회봉사프로그램 실시 기안문(2022학년도, 2023학년도)
	10) 장안사회봉사단 “사회봉사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결과보고
	11) 사회봉사프로그램 실시 결과 보고(2022, 2023학년도)
	12) 재능봉사 캠프 사업 계획서 제출(2022, 2023학년도)
	13) 재능봉사 캠프 사업 결과 보고(2022, 2023학년도)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의 전공교육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
<p>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유능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이를 준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8장 제2조(교육목표)와 34조(교육과정)¹⁾, 학칙시행 규칙 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²⁾,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³⁾,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⁴⁾,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제4조(업무)⁵⁾,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임무)⁶⁾,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 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5조(교육품질 개선 프로세스)⁷⁾,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제9조(관련규정)에 명시함⁸⁾ -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교무처 산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두어 관련 규정의 준수를 실행하고 점검하고 있음⁵⁾ - 교육과정 개발(개편) 주기는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함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개편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교재, 실습과정 등의 개선을 도모함 ·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며 새로운 교육기술의 발전이나 산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여 산업체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함 - 교육과정 개발은 대내·외 환경분석 및 교육수요자 및 산업체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역량(핵심역량 및 직무역량) 설정 및 검증, 역량별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도출, 교과목 도출,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역량 평가지표 작성의 각 절차를 모두 이행하도록 함⁹⁾ - 교육과정 개발 시 각 학과는 대학 수준의 교육목표 및 역량과 연계함과 동시에 전공역량을 함 		

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산업체인사 2인을 포함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함¹⁰⁾

-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는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평가의 전 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음^{15),16)}

b)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여부 확인

-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절차에서 학과 전공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산업 현장의 최근 트렌드를 교육과정에 반영함¹¹⁾
-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절차에서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함¹¹⁾
- 개발(개편)의 필요에 따라 각 학과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2인 이상의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을 개발함¹⁰⁾
- 우리 대학의 관계 부서는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자 및 관계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12),13),14)}
 - 교무처 주관으로 교육과정 개선과 의견 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공유함
 - 산학협력처 주관으로 산업체 만족도와 요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우리대학 졸업생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시켜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상담센터 주관으로 학과의 강점, 취약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학생생활연구’ 집으로 발간하고 있음. 이 내용에는 교육과정 포함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진로에 대한 희망들이 분석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음

c)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

-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은 7개 학과, 14개 전공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개편은 7개 학과에서 이루어짐¹⁵⁾
- 우리 대학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 각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체 2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며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를 2회 이상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¹⁶⁾
-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2조(구성)에 따라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인 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되고 제5조(임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개편, 개발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심의·의결함¹⁷⁾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함¹⁸⁾
-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환류 업무를 수행함¹⁹⁾
-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개편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관련 규정, 개발 프로세스, 핵심역량과 하위역량, 프로파일 작성, CQI 입력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²⁰⁾
-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양식 간소화, 규정에 대한 질문, 신설학과의 역량 책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함²¹⁾
- 매년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을 하는 학과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²²⁾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전산시스템(J-CESS)을 활용함²³⁾
- 개선 활동을 위해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에 따라 환류하고 있음

2	대학의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
---	---	---

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우리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교양 함양에 부합하도록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들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함

- 학칙 제8장 제2조(교육목표)와 34조(교육과정)¹⁾, 학칙시행 규칙 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²⁾,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와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³⁾,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⁴⁾,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제4조(업무)⁵⁾,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임무)⁶⁾,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 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와 제5조(교육품질 개선 프로세스)⁷⁾,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제9조(관련규정)에 명시함⁸⁾

- 우리 대학은 대학공통 일반 교양교육과정과 직업기초능력이 연계된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며 교육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교양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짐
- 직업기초교양 및 일반교양교육과정은 교육혁신지원센터의 주관 하에 전문성을 갖춘 교양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진을 구성하여 역량 중심 교양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화함^{24),25)}
- 역량 중심 교양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통해 직업기초교양의 교과목과 공통적인 운영사항이 학과로 안내되며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직업기초교양 교과목을 선택하고 전공에 적합하게 개발이 이루어짐²⁶⁾
- 일반교양교육과정의 경우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 교양교육에 알맞은 소양교육, 기초교육, 교양교육을 범주로 정함²⁵⁾
- 교양교육과정 개발은 교양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전년도 학생 만족도, 교수자의 의견 수렴, 상의 평가 결과, 대내외 환경분석, 타대학 사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유지, 폐지, 신설을 결정함
- 개발된 직업기초교양 및 일반교양교육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평가의 전 과정은 교육과정심의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평의원회의의 자문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음^{17),18)}

b) 대학 및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와 직업기초 및 교양역량 설정의 연계성 확인

- 우리 대학에서는 인재상과 부합하도록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우리 대학 6대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대학수준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의사소통역량, 정보역량, 창의역량, 융합역량, 공동체역량, 도전역량 총 6개로 정하고 이와 연계된 J-CONNECT 로드맵을 설정함으로써 전공역량과는 차별화되도록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함²⁷⁾
- 우리대학의 2024학년도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 시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표준모델을 참고로 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율교양 영역 3개 분야로 나누고, 기초교양은 다시 필수교양과 소양교양으로 나누고 있음
-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위역량의 방향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대학 수준 교양교육과정의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 「J-CONNECT」 전략을 세우고 있음
- 핵심역량과 「J-CONNECT」 로드맵을 활용하여 우리대학 학생들이 역량별 교양교과를 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함

c)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확인

- 직업기초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우리 대학에서 정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라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직업기초교양 교육과정 개발 시 각 학과는 최근 3년간의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과목 선정에 반영함¹¹⁾
 - 직업기초교양 교육과정 개발 시 각 학과는 대학 수준의 교육목표 및 역량과 연계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산업체인사 2인을 포함한 교육과정개발 위원회를 구성하고 2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산업체인사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짐^{10),16)}
 -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업체인사의 의견 수렴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¹⁶⁾
- 일반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우리 대학에서 정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라 외부 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함²⁸⁾
 - 교육혁신지원센터 주관으로 일반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진을 별도 구성하여 체계적인 개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함
 -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통해 일반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성을 설정함
 - 일반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과목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교양 교과목 강의평가 내용, 교양 교과목의 CQI 보고서 내용을 분석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2024학년도 일반교양교육 교육과정 개발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 및 강의 평가 결과가 높은 수준인 교과목 9개는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명칭변경 교과목 6개, 폐지 교과목 5개, 신설 교과목 7개를 선정함²⁵⁾

d)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

-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지원을 통해 직업기초교양 교육과정 개발은 7개 학과, 14개 전공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개편은 4개 학과에서 이루어짐¹⁵⁾
-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위해 각 학과에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 있으며 이를 지원·심의·자문하는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를 두어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
 - 각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체 2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며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를 2회 이상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2조(구성)에 따라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인 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되고 제5조(임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개편, 개발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심의·의결함¹⁷⁾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평의원회는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함¹⁸⁾ ·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환류 업무를 수행함¹⁹⁾ - 별도로 운영되는 우리대학 일반교양 고도화 개발 연구원들은 우리대학 핵심역량과 연계된 보편적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함^{24),25)} - 교양 교육과정의 정체성 확립 및 교육목표 명확화를 위해 2023년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 진단컨설팅을 2차례 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함²⁹⁾ - 개선 활동을 위해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에 따라 환류하고 있음 	
<p>판단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 교육과정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산업체 요구조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매년 이뤄지고 분석·환류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음 	<p>Y</p>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2024년 3월 22일 기준)
2.1.1	1) 학칙(제1장 제2조, 제8장 제34조)
	2) 학칙 시행규칙(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 제2장 제4조(교과 이수), 제7조(강의계획서))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4)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3조(기능))
	5)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 규정(제1장 제4조(업무))
	6)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제5조(임무))
	7)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 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5조(교육품질개선 프로세스))
	8)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제9조(관련규정))
	9) 교육과정개발보고서의 목차와 개발 프로세스
	10)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11) 교육과정개발보고서 내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내용
	12) 교육만족도 조사
	13) 학생생활연구
	14) 산업체 만족도 조사
	15) 교육과정 개발·개편 참여학과 리스트 및 관련 문서
	16)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17)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8) 대학평의회 회의록
	19)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자료
	21)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간담회 관련 자료
	22) 학과별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 재정지원 내역
	23) J-CESS 내 교육과정 개발 순서 캡처 그림
	24)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진 회의록
	25) 역량 중심 지속적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26)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내 직업기초교양 개발 내용

	27)	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내 핵심역량과 교양 교육 연계성
	28)	역량 중심 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내 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29)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집합형) 사전진단보고서

2.2 교육운영 및 질 관리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 규정에 따라 전공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p>a)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칙 제34조(교육과정), 학칙 시행규칙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개편) 및 운영하고 있음^{1),2),6)}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 1호 마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개발(개편) 주기는 2년(3년제 학과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환경변화와 대학정책 방향에 따라 개발(개편)을 실시함⁷⁾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9조 3호 라항에 의거하여 실습과목의 비율은 전공과목의 20%이상 80% 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2023학년도 실습과목 비율은 51.7%(실습과목 1,815시수, 이론과목 1,693시수)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⁸⁾ <p>b)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의 제시 및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칙 시행규칙 제7조(강의계획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9조, 수업운영규정 제7조(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의 수준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함^{9),10)} - 강의계획서에는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과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통해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교육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습 목표, 교수-학습내용, 학습성취 수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주차별 자가진단 및 역량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과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음⁵⁾ - 수강 신청 전까지 교수자는 강의계획서를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J-CESS)에 입력하고, 학생은 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교과목의 학습목표 및 평가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수강 신청함 -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J-CESS)은 강의계획서를 포함하여 평가계획서, 진단평가, 성적 입력, 교과목 CQI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대학은 이를 통해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의 제시 및 공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함 <p>c)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과, 대학본부, 교수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효과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 학과는 신입생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웹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강의계획서 열람 방법을 공지함
 - 대학본부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 신청 안내 및 강의계획서 확인을 공지함¹¹⁾
 - 교수자는 매 학기 초 과목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안내함
- ※ 표 2-2) 2.2.1을 활용하여 작성

2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지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
---	--	---

- a) 관련 규정 및 준수**
- 우리 대학은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실험실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실험실습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¹²⁾
 - 또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유지·개선을 위해 물품구매규정, 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위원회규정, 교육시설 및 물적자원 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13),14),15),16)}
 - 우리 대학은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의 신청, 지원, 배정 등을 실시하고, 지원 절차에 따라 신청과 구매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함. 실험실습 기자재는 매년 정기적으로 물품에 관한 재물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손·망실, 물품 등을 파악하고 유지, 관리, 이관, 불용·폐기함
- b) 기자재 수요조사 및 지원**
- 대학은 매년 학과 사업계획서를 통해 필요한 실험·실습 계획 기자재 현황을 파악함
 - 학과에서 제출한 실험실습 계획 기자재 필요 현황은 예산 편성 시 심의하여 학과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예산 승인 후 학과는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구매를 요청함. 교무팀에서는 해당 물품과 교과목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승인된 물품 구매 계획은 구매담당자가 필요 물품을 구매하여 학과에 제공하여 지원함¹³⁾
 - 학과는 실험실습용 기자재 운용결과를 실험실습일지에 작성함
 - 물품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물품관리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기록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함¹⁴⁾
 - 우리 대학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실험실습 기자재 수리 현황을 실시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험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¹⁷⁾

c)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

- 우리대학은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⁸⁾
-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 학과의 교수자와 학생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실험·실습 교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학과에 대해 연 2차례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19),20)}
 - 2023년도 1학기 이수자 977명(참여학과 9개)
 - 2023년도 2학기 이수자 648명(참여학과 9개)

※ 표 2-2) 2.2.1을 활용하여 작성

3	실험실습비 지원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 style="text-align: center;">정량: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p> <p>- 2022회계연도 163,8천 원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157천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p>		
4	전공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 style="text-align: center;">정량: 학년도별 전공강좌 당 학생 수</p> <p>- 우리대학의 전공 강좌 당 학생 수는 2023학년도 16.9명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33명 이하를 충족하고 있음</p>		
5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환류하고 있는가?	✓
<p>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p> <p>- 우리 대학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에서 전체 교육 품질의 개선활동에 대한 조직 및 업무 분장을 규정		

하고 있음³²⁾

- 역량 기반 교육과정 전담센터인 교육혁신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제4조(업무)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제7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센터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고 교육혁신지원센터의 환류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²²⁾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검토 및 개선을 규정하고 있음²¹⁾
-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은 학습자가 학기당 2회의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강의평가 점수 70점 이하의 교수자는 강의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26),27),28)}
- 교무팀은 각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교육과정심의회 회의에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실시함²⁵⁾
-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교육만족도 계획, 조사, 결과 분석과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²⁴⁾

b)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확인

- 우리 대학은 교수자가 교과목 CQI를, 이를 모아 학과 차원의 CQI를 분석하여 개선하고, 이를 다시 학교 차원의 CQI로 분석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적용하는 체제로 운영함²⁹⁾
-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환류의 방법과 이를 위한 J-CESS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학과와 교수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간담회를 매년 개최함^{30),31)}
-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환류의 방법과 이를 위한 J-CESS 프로그램 사용 안내를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를 매년 개최함^{32),33)}
- 전공교육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위하여 교무처와 산학협력처 주관으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와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학과에 공유함^{34),35)}
- 학생상담센터 주관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과내용과 진로 및 희망 취업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 학생생활연구집을 매년 발간함³⁶⁾
-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를 위한 장안대학교 J-CESS 프로그램을 운영함⁴⁰⁾
- 학습자 역량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 사전 사후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이는 장안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임⁴⁴⁾
- J-CESS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체 과목별 CQI를 작성하여 자체평가 및 차년도 교육과정과 교과

목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38),40)}

- 지속적 품질관리(CQI)를 위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에 작성함
 - 교과 CQI를 모아 학과 차원에서 분석하여 학과별 지속적 품질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 전반의 개선 활동에 반영함⁴²⁾
 - 교육혁신지원센터 주관으로 학과의 지속적품질관리 보고서를 점검하여 대학수준 지속적 교육 품질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사항을 도출 및 차년도 교육과정(전공, 교양)별 운영 계획을 수립함⁴⁵⁾
- 이상과 같이 장안대학교 전공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교무처, 교육혁신지원센터, 산학협력처, 학생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음

c) 평가 및 환류 실적 확인

- 장안대학교는 학습자 강의평가, 교수자 CQI, 학과 수준 CQI, 대학 수준 CQI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⁴⁰⁾⁴²⁾⁴⁵⁾
- 교육과정의 성취 효과를 위하여 교과에 따라 사전, 사후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에 환류하고 있음⁴⁴⁾
 - 사전, 사후 진단평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음
 - 사후 진단평가는 직무의 성취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가 됨
- J-CESS CQI 작성에서 학습자들의 직무 성취도를 분석하여 차년도 교육과정과 교수법에 환류하고 있음⁴⁰⁾
 - 강의실 환경, 실험실습실 환경, 기자재 수업 자료, 프로파일, 수업운영, 수업 평가 등의 항목으로 개선사항을 교과목별로 매 학기 작성하고 이는 차년도에 적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함⁴⁶⁾

6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
---	---	---

a) 학사제도 관련 규정

- 우리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 및 수요자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해 학칙 제6장(편입학 및 재입학), 학칙 시행규칙 제42조(편입학), 학칙시행규칙 제47조(교내전과),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47),48),49),50),51)}

b) 학사제도의 도입 및 개선 노력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재학생 유지율 향상 등을 위해 학칙 등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임
 - 재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및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해 학칙 제51조(졸업)를 개정하여 졸업학점을 80학점에서 72학점으로 변경함⁵²⁾
 -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교육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칙 제28조(전과)를 개정하여 전과자의 전입학과 졸업요건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이수 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함⁵²⁾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 및 유아교육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학칙 시행규칙 제47조(교내전과) 개정. 또한, 유아교육과로의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하기 위하여 학칙 시행규칙 제42조(편입학)를 개정함⁴⁸⁾
 - 졸업탈락률 감소를 위해 재수강규정 제5조(신청학점)을 개정하여 재수강 가능 학점을 매학기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함⁵³⁾
 - 폐과로 인한 복학, 재입학, 졸업탈락자 등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타 학과 수업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 부칙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함⁵⁴⁾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는 전공교육 과정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규정과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조사와 수치를 차년도 전공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2.2.1	1) 학칙(제정 2001. 9. 17., 개정 2023. 5. 30.)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2) 학칙시행규칙(제정 2011. 3. 1., 개정 2023. 6. 21.)제3조(교육과정운영), 제4조(교과이수)
	3) 장안대학교 요람 교육과정 소개(2023년_식품영양학과 예시)
	4) 강의계획서 작성 협조문(2023)
	5)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2023-1예시)
	6)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정 2011.07.01., 개정 2021.1.4.)
	7)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8)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9조(현장중심 전공교육)
	9) 학칙 시행규칙 제7조(강의계획서)
	10) 수업운영규정 제7조(강의계획서)
	11)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공지(2023-1학기)
	12) 실험·실습운영위원회규정(제정 2002. 3. 1., 개정 2013. 1. 1.)
	13) 물품구매규정(제정 2005. 9. 1., 개정 2019. 3. 1.)
	14) 물품관리규정(제정 2005. 9. 1., 개정 2021. 7. 1.)
	15) 물품관리위원회규정(제정 2011. 5. 1., 개정 2015. 9. 1.)
	16) 교육시설 및 물적자원 관리규정(제정 2011. 7. 1., 개정 2016. 1. 1.)
	17) 실험/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현황 자료(관리대장 등)
	18)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제정 2002. 3. 1., 개정 2022. 4. 15.)
	19) 학생·교직원 실험·실습 안전관리 교육 현황(2022, 2023년)
	20) 대학정보공시 자료(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2022, 2023년)
	21)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제4조(조직 업무 분장))
	22)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
	2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4)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25)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26) 강의평가 운영지침제7조(결과활용)
	27) 강의평가 시행 협조문
	28) 강의개선계획 관련 기안 및 협조문
	29) 장안대 교육과정 환류체계 및 PCDA 그림
	30)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간담회 관련 자료
	31)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간담회 관련 지출 증빙
	32)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자료
	33)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지출 증빙
	34) 만족도 결과 보고서-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35) 산업체 만족도 요구도 조사

36)	학생생활연구
37)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_교과 CQI (협조문)
38)	교육과정 품질 관리 개선 보고서 제출 안내(협조문)
39)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40)	교과목 CQI_J-CESS 캡처본
41)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42)	학과별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43)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보고서 샘플 (환류 포함)
44)	사전 사후 진단평가 협조문
45)	대학수준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46)	전공교육평가 및 환류실적
47)	학칙 제6장(편입학 및 재입학)
48)	학칙 시행규칙 제42조(편입학), 제47조(교내전과)
49)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제정 2007.11.19., 개정 2023. 5. 30.)
50)	현장실습 운영규정(제정 1999.3.1., 개정 2022. 5. 13.)
51)	글로벌현장학습 운영규정(제정 2018. 8. 10., 개정 2021. 8. 24.)
52)	학칙 제28조(전과), 제51조(졸업)
53)	재수강규정(제정 2015. 8. 1., 개정 2023. 8. 24.)
54)	학칙 부칙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
<p>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8장(교과 및 이수)와 제9장(성적평가 및 졸업)¹⁾, 학칙 시행 규칙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 제2장 제4조(교과 이수), 제7조(강의계획서)²⁾,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의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³⁾,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종 제1장의 제4조(업무)⁴⁾,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지침⁵⁾, 교양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⁶⁾에 명시함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의 학점 배점기준은 전체 졸업학점의 10~20%로 함 -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은 운영지침⁵⁾에 따라 학과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함. 일반교양 교육과정의 운영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설계: 강의계획서, 프로파일, 평가계획서 · 수업운영: 자가진단평가, 사전 사후 진단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 수업평가: 능력평가 의무 2회 이상과 출석점수로 평가계획서에 따른 성취도 판정 - 일반교양은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개발·운영·평가·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음^{6),11),12),13),14)} <p>b) 추진체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에서는 교무처의 교무팀과 교육혁신지원센터의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일반교양 고도화 연구의 연구진 간 협력을 통해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 및 일반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운영·평가·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를 걸쳐 직업기초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¹²⁾ · 교육혁신지원센터: 일반교양 고도화 연구를 통해 일반교양 교육과정 운영 전반 평가²⁰⁾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양 교육과정 편성, 개정 등에 대한 심의¹⁵⁾ · 대학평의원회: 교육과정 개정 자문¹⁶⁾ 		

- 학과별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학과에서 직접 운영하며 일반교양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교무처 교무팀에서 직접 운영함

c) 운영 실적 확인

- 직업기초 교양교육은 총 10개 교과 중 각 학과에서 선택한 교과목으로 운영함
 - 2023년 : 창의적 글쓰기와 말하기, 수리능력, 문제해결 프로젝트, 자기개발능력, 인적물적 자원관리, 셀프리더쉽과 대인관계, 컴퓨터기초, 기술과 경제, 협업과 경영, 현대사회의 직업윤리
 - 직업기초 교양은 NCS 기반의 교과로 운영함
 - 2021년 기초교양 컨설팅¹⁷⁾ 후 시대적 변화와 직무 능력을 다양하게 반영한 교양 교과로 적합한 교과목으로 개선 변경되어 2023학년도에 운영됨
- 일반교양교육은 총 20개 교과로 교무팀에서 운영함^{11),13)}
- 교육혁신지원센터는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함
 - 직업기초 교과의 운영을 각 학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교수자 및 학과 교수가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함에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18),19)}
 - 우리대학은 일반교양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연구원을 모집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²⁰⁾
 - 교양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등 시대적 학문적 학습을 위한 교수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²¹⁾

2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a)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평가·환류 체계 확인

- 우리 대학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음
 -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 규정에서 전체 교육품질의 개선활동에 대한 조직 및 업무 분장을 정하고 있음²²⁾
 - 교양 교육과정 전담센터인 교육혁신센터의 운영규정 제4조(업무)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제7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센터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고 교육혁신센터의 환류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⁴⁾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³⁾에

서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의 평가와 환류 관련 내용을 규정함

- 교무팀은 각 교양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함²²⁾
- 편성되어 운영된 교육과정은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과별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도출함^{28),30),31),32),33)}
-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교육만족도 계획, 조사, 결과 분석과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²³⁾
- 교육만족도 실행 부서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무처, 산업체 만족도 조사는 산학협력처에서 실시함^{36),37)}
- 강의평가 운영 지침 제7조 (결과 활용)에 따라 우리 대학은 학습자가 학기당 2회의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70점 이하의 경우 강의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24),25),26)}

b) 교양 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확인

-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 교과목 교수자가 교과목 CQI를, 이를 모아 학과 차원의 CQI를 분석하여 개선하고, 이를 다시 대학 차원의 CQI로 분석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적용하는 체제로 운영함^{22),27),28),30),31),32),33)}
-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환류의 방법과 이를 위한 J-CESS 프로그램 사용 안내를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설명회를 매년 개최함¹⁹⁾
- 교양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학과와 교수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간담회를 매년 개최함¹⁸⁾
- 각 교양 교과목의 운영 평가로 강의평가의 일정 점수 미만의 교수자는 교수법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교수법 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음^{24),25),26)}
- 우리대학은 학과의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 교양 선택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조사를 반영한 직업기초 교양을 개편, 운영하고 있음. 이는 각 학과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와 학과 차원 지속적 품질관리 보고서에서 환류되고 있음^{7),31)}
- 우리대학 일반 교양교과는 일반교양 고도화 개발 보고서에서 환류하고 있음¹¹⁾
-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일반 교양교과의 개발 개편이 이뤄짐(SNS 크리에이터, 응급구조의 이해 등)
- 만족도 조사와 요구조사가 반영된 교과 개발 개편이 이뤄짐(생활과 공간, 생활스포츠 등)

-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양교과목이 신설됨(표준 한국어 기본, 표준 한국어 실용 등)
-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환류하고 있음
 -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와 환류를 위하여 교무처와 산학협력처 주관으로 재학생, 졸업생, 학부 모,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와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학과에 공유함³⁶⁾³⁷⁾
 - 직업기초 교양교과의 경우 각 학과에서 산업체 요구를 별도로 실시하여 환류하기도 함⁷⁾
 - 일반 교양교과의 경우 일반교양 개발 보고서를 통하여 별도로 교과 만족도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환류함. 이때 학생들의 교양 요구 조사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환류함^{11),13)}
-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를 위한 장안대학교 J-CESS 통합 프로그램 활용함
 - 학습자의 사전 교과이해도와 교육과정 후의 역량 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학기 전체 교양 교과의 사전 사후 진단평가를 실시함²⁹⁾
 - J-CESS 활용을 통하여 교양교과의 과목별 CQI를 작성하여 자체평가 및 개선에 반영함³⁸⁾
 - 각 교과목의 CQI는 차년도 강의계획 시 환류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작성하도록 J-CESS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³⁴⁾
 - J-CESS에서 실시한 교과 CQI를 모아 학과 차원에서 분석하여 학과별 지속적 품질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 전반의 개선 활동에 반영함^{28),30),31)}
- 교육혁신지원센터 주관으로 일반 교양 연구원을 선발하여 교양 교과의 강의평가를 반영하고 재학생 만족도조사, 요구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이를 개발보고서에 환류, 기술하고 있음¹¹⁾
- 이상과 같이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교무처, 교육혁신지원센터, 산학협력처 등이 조직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객관적인 교양 교육 운영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2021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리대학 교양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인지함. 이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교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다시 2023년에 2021~2022년도의 교양 교육 컨설팅을 시행함¹⁷⁾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시대적 변화와 교양교과에 적합한 교과목명으로 개선되어 운영됨¹¹⁾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의 교양은 직업기초교양과 일반교양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또한 개선을 위하여 매년 조사, 분석을 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을 통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2024년 3월 22일 기준)
2.2.2	1) 학칙 (제8장 (교과 및 이수)와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82조 4(평의원회 기능)
	2) 학칙 시행규칙(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 제2장 제4조(교과 이수), 제7조(강의계획서))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4)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 규정(제정 2022.8.30.) 제1장 제4조(업무)
	5) 직업기초교양 교육과정 운영지침
	6) 교양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
	7)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
	8)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작성 관련 기안 및 협조문
	9) 학과별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 재정지원 내역
	10) 교육과정 개발·개편 참여학과 리스트 및 관련 문서
	11) 역량 중심 지속적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12)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13)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진 회의록
	14) 교양 교과 목록
	15)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16)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17)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집합형) 사전진단보고서
	18)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간담회 관련 자료
	19)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자료
	20)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진 연구비 지급서류
	21) 2023년도 교육 연수
	22)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23)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24) 강의평가 운영 지침 (제7조(결과 활용))
	25) 강의평가 시행 협조문
	26) 강의개선계획 관련 기안 및 협조문
	27) 장안대 교육과정 환류체계 및 PCDA 그림
	28) 교육과정 품질 관리 개선 보고서 제출 안내(협조문)
	29) 사전 사후 진단평가 협조문
	30)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_교과 CQI (협조문)

31)	학과별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32)	대학 수준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33)	교육과정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제출 안내 (협조문)
34)	J-CESS 강의계획 시 교과목 CQI 환류개선사항
35)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 진단 결과 보고서
36)	교육만족도 조사
37)	산업체 만족도 조사
38)	교과목 CQI_J-CESS 캡처본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3.1.1 학생선발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공정한 학생선발 기준을 공지하고 입학전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p>a) 학생선발 기준 공시 및 대학 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입학전형 시행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의 ③항, ④항 및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일체를 준수하고 수립된 신입생 모집계획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변경기간(교육부로부터 공문수령) 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심의 및 승인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모집요강^{1), 2)}에 반영하고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³⁾ · 신입생 모집요강에 우리대학의 장점(기숙사, 취업프로그램, 장학금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p>b) 관련위원회 규정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⁴⁾, 입학공정관리위원회⁵⁾, 입학전형사정위원회⁴⁾,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⁶⁾가 있음 · 입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과 입학공정관리위원은 중복 배치하지 않고^{7),8),9),10)} 있으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당연직으로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 책임 부서장이 위촉되지 않음^{7),8),9),10)} <p>c) 학생선발에 대한 차별 방지 입학정책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 입학에 배제하지 않으며, 대학 교육목표 및 모집요강(입학정책)에 의거한 전형을 운영함^{1), 2)} 		
2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충원율은 2023년 36.2%으로 2024년 충족기준(90%)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으나¹⁾, 모집정원(정원내)의 3% 이상 정원감축의 실적이 있음^{1),2),12)} · 신입생 충원율 2023학년도: (730명 / 2,015명) × 100(%) = 36.2% 		

2024학년도: (485명 / 1,552명) × 100(%) = 31.3%

· 정원 감축율

2023학년도: (2,130명 - 2,015명) / 2,130명 × 100(%) = 5.4%

2024학년도: (2,015명 - 1,725명) / 2,015명 × 100(%) = 14.4%

3 대학은 신입생 선발(모집)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a)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 우리 대학 학생입학 관리 및 운영은 ‘학칙 제5장 입학’ 및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사정위원회,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학생모집 과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13),4),5),6)}
- 학생선발 과정 평가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입학공정관리위원회가 입학전형 자체 감사반 역할을 담당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를 실시함^{9),10)}
 - 입시결과분석자료¹⁴⁾는 신입생 모집에 관한 학과 의견을 조사하고¹⁵⁾, 학과의견 반영 등을 통해 차년도 입시정책에 환류됨^{16),17)}
- 신입생 충원을 제고 관련 계획 및 분석 평가
 - 우리대학은 매년 입시결과 분석자료집을 작성¹⁴⁾,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입시홍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입생 충원활동을 함

b) 신입생 모집 전형 평가 결과의 개선

- 입학전형평가 결과는 각 위원회별 위원과 학과, 입학팀이 모집시기별 사정회의 등을 통해 공유되며^{18),19)} 입시결과 분석자료는 학과장 회의 시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 각 학과 구성원들이 공람하게 한 후, 학과의견 반영 등을 통해 차년도 입시정책에 환류됨(2024학년도 구조조정 반영)
- 매학년도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20),21)} 학과구조개혁으로 환류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²²⁾, 이를 다음 학년도 입시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신입생 선발 활동 개선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입생 충원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연도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명단>

학년 도	순 번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성명	소속	직급/ 보직명	비고	성명	소속	직급/ 보직명	비고
2022	1	길민규	실용음악과	입학처장	위원장	조태호	게임컨텐츠과	기획처장	위원장
	2	장은겸	소프트웨어 융합과	정보지원 센터장	위원	김동필	세무회계과	전임교원	위원
	3	김현량	스타일 리스트과	전임교원	위원	방상욱	글로벌비즈니스 영어과	전임교원	위원
	4	하수연	유아교육과	전임교원	위원	윤경아	디지털공예 디자인과	전임교원	위원
	5	권혁성	입학팀	팀장	위원	조신현	패션디자인과	전임교원	위원
	6	임이철	입학팀	주임	위원				
2023	1	오희경	바이오동물 보호과	입학처장	위원장	조태호	게임컨텐츠과	기획처장	위원장
	2	김현량	스타일 리스트과	전임교원	위원	김동필	세무회계과	전임교원	위원
	3	정윤기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원격교육 지원센터장	위원	하수연	유아교육과	전임교원	위원
	4	박경란	호텔조리과	전임교원	위원	강민희	바이오동물 보호과	전임교원	위원
	5	권혁성	입학팀	팀장	위원	배장은	시각디자인과	전임교원	위원
	6	임이철	입학팀	주임	위원	성백순	프랜차이즈 경영과	전임교원	위원장
	7	이나결	식품영양학과	입학처장	위원장				
	8	박경숙	식품영양학과	전임교원	위원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공정한 학생선발 기준을 공지하고 있으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사정위원회,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입학전형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신입생 충원율은 인증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모집정원(정원내)의 3% 이상 정원감축의 실적이 있음 ▪ 향후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시결과 분석자료를 통해 입학홍보와 실행계획을 기획하고 학생 모집 평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3.1.1	1) 신입생 모집요강(2023학년도)
	2) 신입생 모집요강(2024학년도)
	3) 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게시 자료
	4)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5) 입학공정관리위원회규정
	6)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
	7)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록(2023학년도)
	8)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록(2024학년도)
	9)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록(2023학년도)
	10)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록(2024학년도)
	11)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12) 신입생 모집요강(2022학년도)
	13) 학칙 제5장 입학
	14) 입시결과 분석자료집(2023학년도)
	15) 신입생 모집에 대한 학과의견 조사 협조문(2024학년도)
	16) 입학전형세부시행계획서(2023학년도)
	17) 입학전형세부시행계획서(2024학년도)
	18) 입학전형사정위원회 회의록(2023학년도)
	19) 입학전형사정위원회 회의록(2024학년도)
	20)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회의록(2023학년도)
	21)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회의록(2024학년도)
	22) 대학 홈페이지 입학전형영향평가결과 게시 자료(2023학년도)

3.1.2 학사 및 수업관리

○ 주요 판단사항

1	수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준수되고 있는가?	✓
<p>a) 학점당 수업시간 시수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칙 제35조(교과이수단위)에 근거하여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있으며, 수업일수는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함¹⁾ - 교과별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²⁾ <p>b) 학생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기준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칙 제44조(출석의무), 학칙 제45조(출석인정), 학칙 시행규칙 제14조(출석), 제15조(출석인정), 제16조(출석부 기재)에서 출결 관련 규정을 명시함^{3),4)} - 학생의 출결 관리 및 출석 독려를 위해 강의계획서(평가계획서)를 통해 출결에 대한 제한, 출석점수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함 - 모바일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교수가 매 교시마다 출결을 체크하고, 모든 출결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함. 출석, 결석 회수에 따라 출석점수가 자동으로 환산되고, J-CESS(역량기반 교육지원시스템)에 교과목 성적 중 출석점수 20%가 연동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음⁵⁾, 출석 평가 기준에 맞게 출석 점수가 정확하게 산출됨 - 출석 미달로 인한 재학생 중도 탈락 방지 및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위해 모바일 전자출결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학기마다 3주 단위로 고위험군 학생현황을 협조문을 통해 학과에 안내하고 있으며, 장기결석자 및 출결 고위험군 학생들을 담당 교과목 교수 및 지도교수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⁶⁾ - 또한, 매 학기마다 2회 실시하는 강의평가 항목에 학생의 자가진단 항목으로 출결관리 준수 관련 문항을 포함시켜 학생 스스로 출결을 관리하도록 함⁷⁾ <p>c) 휴·보강 관리 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칙 시행규칙 제11조(휴강, 결강, 보강)에 휴·보강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함⁸⁾ - 대학본부는 매학기 협조문을 통해 매학기 시작 전 학사일정,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 수업 기간 및 휴·보강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지정 보강 주간과 공휴일, 임시휴무 등의 경우 사전에 휴·보강 관련 협조문을 추가로 발송하여 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교수의 갑작스러운 휴강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가능한 지양하고 휴강 시 바로 조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즉시 보강 계획을 잡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 		

<p>이하에 포함⁹⁾¹⁰⁾¹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보강 발생 시 담당 교·강사는 사전에 통합정보시스템(학사시스템)의 인사관리(휴·보강신청)에 휴·보강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무팀에 휴강 및 보강허가원을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서 휴·보강을 진행함¹²⁾ - 휴·보강 승인 시 모바일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담당 교·강사와 학생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휴·보강을 안내하고, 휴·보강 처리 결과는 전자출결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¹³⁾ 	
---	--

2	대학은 교원의 강의시수에 관한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	---	----------

	<p>a) 강의시수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교원의 수업시간 보장을 위해 주당 책임시간 및 강의료 관련 사항을 학칙 제42조(교수시간), 수업운영규정 제4조(수업시간 배정기준), 강의시간표 편성지침 제1조(주당 책임시수 등), 교원복무규정 제9조(책임시간) 등에 명시하고 있음^{14),15),16),17)} - 학칙 제42조(교수시간)에 의거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이고, 보직교원·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강의시간표 편성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보직 및 학부장 및 학과장은 각각 3, 5, 7시간 시수로 책임시수를 경감함 · 전임교수는 최대 18시간을 상한시수로 하나, 야간, 전공심화과정 또는 산업체위탁교육 별도 학급 강의를 있는 경우 최대 21시간까지 허용함. 정년퇴직 전 마지막 학기(안식학기 제외)에는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6시간까지 책임시수를 조정하여 운영함 ·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을 상한시수로 하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함 · 강사는 최대 6시간을 상한시수로 하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시간까지 허용함 <p>b) 강의시수 관련 규정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마다 주당 수업시간을 배정 및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의시수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가 확인 가능함 - 강의시간표 편성지침 제1조(주당 책임시수 등) 4호에 의거하여 주당 책임시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초과분, 겸·초빙교원 및 강사의 경우는 시수당 강사료를 책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함^{16),19)} - 강의 시수 미달 시 총장의 결재를 득해 보고하며,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3조(평 	
--	--	--

가영역별 점수 배분)에 의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가능한 강의시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함 ^{18),20)}		
3	대학은 학생의 수강 신청 지도와 학사경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p>a) 수강신청(재수강, 정정 포함)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칙 제43조(수강신청), 학칙 시행규칙 제9조(수강신청), 제31조(재수강), 재수강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21),22)} -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하지 못하며^{40),41)}, 수강신청기간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2학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함 - 재수강은 이미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신청과목에 대한 성적은 B+등급까지 인정하고, 재수강하는 교과목의 신청학점은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과는 학생들의 재수강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교무팀으로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무팀에서는 재수강 신청학점 12학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함^{23),24)} <p>b) 수강 신청 지도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 신청은 대학 본부 및 학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도하고 있음 - 대학 본부는 수강신청 기간 및 절차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학과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안내 및 학생 수강지도를 협조 요청함²⁵⁾ - 홈페이지 확인 및 학과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웹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모든 수강신청 내역은 전산화하여 관리함²⁶⁾ - 재수강은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이하 등급인 교과목은 재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및 지도하고, 수강신청 완료 후에는 수강신청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이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고 있음^{27),28)} <p>c) 학사경고 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칙 제51조(학사경고), 학칙시행규칙 제35조(학사경고)에 의거하여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자로서 매학기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하고 있음^{29),30)} - 학사경고는 대학 본부, 학과, 학생상담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본부는 당해 학기 성적처리가 마감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사경고자 명단을 각 학과,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에 통보하여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함³¹⁾ - 학과는 학사경고자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학사경고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 학생상담센터는 매 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학습태도, 학습동기 강화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함³²⁾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학기 학생상담센터의 요청에 따라 학사경고자 대상으로 학습지도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별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시간관리 법 등 학습지도 코칭함^{33),34)} 	
<p>판단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35조에 근거하여 수업시간이 준수되고 있으며, 학칙 제42조에 의하여 교원의 책임시간이 강의에 편성되고 있음 ▪ 학칙 제43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 제31조(재수강), 학칙 제51조(학사경고) 등에 따라 수강 신청 지도 및 학사경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Y</p>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3.1.2	1) 학칙 제35조(교과이수단위)
	2)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예시
	3) 학칙 제16조(수업일수),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44조(출석의무), 제45조(출석인정)
	4) 학칙 시행규칙 제4조(교과이수), 제10조(수업), 제14조(출석), 제15조(출석인정), 제16조(출석부 기재)
	5) J-CESS(역량기반 교육지원시스템) 출석점수 20% 연동화면 캡처
	6) 장기결석자 및 출결 고위험군 학생상담 실시 관련 협조문
	7) 강의평가 문항별
	8) 학칙 시행규칙 제11조(휴강, 결강, 보강)
	9) 학사일정 안내 협조문
	10) 강의계획서 입력안내 협조문
	11) 휴보강 신청 안내 협조문
	12) 학기별 휴강 및 보강 허가원 예시
	13) 모바일 전자출결앱 학생사용 설명서
	14) 학칙(제정 2001. 9. 17., 개정 2023. 8. 24.) 제42조(교수시간)
	15) 수업운영규정(제정 1979. 3. 1., 개정 2020. 3. 23.) 제4조(수업시간 배정기준)
	16) 강의시간표 편성지침(제정 2011. 7. 1., 개정 2023. 3. 10.)
	17) 교원복무규정(제정 2011. 5. 1., 개정 2020. 1. 1.) 제9조(책임시간)
	18)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제정 2006. 3. 1., 개정 2022. 10. 7.)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 배분)
	19) 강사료 지급 기안 (2023학년도 3월분)
	20) 전임/겸임/초빙/강사 시수, 강의편성일수 부족 및 초과 교원 현황보고 기안(2023-1 예시)
	21) 학칙(제정 2001. 9. 17., 개정 2023. 8. 24.) 제43조(수강신청)
	22) 학칙 시행규칙(제정 2011. 3. 1., 개정 2023. 6. 21.) 제9조(수강신청), 제31조(재수강)
	23) 재수강규정(제정 2015. 8. 1., 개정 2023. 6. 21.)
	24) 재수강신청서 예시
	25) 대학홈페이지 수강신청 안내 공지화면
	26) 웹지원시스템 수강신청 예시 화면
	27) 재수강신청안내 협조문 예시
	28) 수강신청 확인원 예시
	29) 학칙 제50조(학사경고)
	30) 학칙 시행규칙 제35조(학사경고)

	31)	학사경고자 관리 협조문
	32)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3)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연계 요청 협조문
	34)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도코칭 운영 결과보고서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의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산출식		요구수준		
$\text{재학생 등록유지율(\%)} = \frac{\text{정원내 재학생 수}}{\text{학년도별 정원 내 입학생 수}} \times 100$		80.0% 이상		
학년도	정원내 재학생 수(A)	*학년도별 정원내 입학생 수(B)	재학생 등록유지율 (A/B×100)	
2023	2,133	2,103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내 재학생수(A) : 2,133 - 학년도별 정원내 입학생수(B) : 2,103 - 재학생 등록유지율 (A/B×100) : 101,4 - 산출식 = 우리대학 평가지표 값/기관평가인증 기준 자료×100 				
2	대학은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해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
<p>a) 재학생 관리 체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정주기 관리체계를 통해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 재학생 중도탈락 사전 예방을 위한 ‘J-CAP 대학생활적응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입생 대상 입학 직후 3회에 걸쳐 대학생활적응검사(3월: 학교에 대한 기대감 분석, 5월: 학교에 대한 만족도 분석, 9월: 진로 및 희망 분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J-CAP에 탑재하여 학과 지도교사가 학생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¹⁾ • 학과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대학생활적응도 파악 후 1대1 개별학생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를 J-CAP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 지도교수의 J-CAP 학생상담실적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도학생 상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2),3),4)} • 출결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갖추어 매학기 초부터 장기결석생을 파악하고 해당학생 명단과 결석률을 지도교수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미달자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여 관리함⁵⁾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결석이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함⁶⁾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사전평가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학습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 및 중도탈락 예방을 지원함⁷⁾
- 매학기 종료 이후 교무팀-학생상담센터-교수학습개발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사경고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무에서 학사경고자를 파악한 후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희망하는 학생을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연계하여 학습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사경고자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8),9)}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자퇴상담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해 학교 및 학과 부적응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전문상담원이 상담하여 자퇴원인 파악 및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당 내용을 매달 전체학과 교수에게 공유하여 학과차원에서 중도탈락 예방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하고 있음^{10),11)}

b)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평가 확인

-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중도탈락 방지 및 재학생 등록 유지율 제고를 위해 학과, 교무팀, 학생지원처 산하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연계하여 중도탈락 사전예방 관리체계 갖추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J-CAP 대학생활적응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과지도교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를 파악하여 학생관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학생들의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과 및 부서에 공유함^{12),13)}
- 매 학년도 재학생 충원률, 중도탈락률을 파악하여 교수업적평가의 학생지도 부문에 반영함으로써 학과 및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14),15),16)}
- 기초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역량을 강화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학습향상프로그램은 사전에 기초학습능력을 평가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체계를 갖추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함⁷⁾
- 자퇴상담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퇴사유 및 학과별 자퇴현황을 파악 및 평가 하고 자퇴율 감소를 위해 해당 정보를 매달 각 학과 및 부서에 공유함¹¹⁾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장기결석생과 학사경고자 밀착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상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률 및 상담 만족도를 평가하여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 개선사항을 도출함⁸⁾
- 우리대학은 재학생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마다 평가체계를 갖추어 개선 및 환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ㄷ)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개선 실적 확인

- 2023학년도 우리대학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101.4%이며, 이는 2022학년도의 99.2%보다 2.2%상승한 결과로 재학생 등록유지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14),15)}
- 우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입학 자원의 부족현상 등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감소하여 학생유지율(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1학기부터 ‘J-CAP시스템’ 운영을 유지하며 고도화하고 있음
- 학생들의 정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J-CAP시스템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를 파악하고 중도탈락 예방 및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 개입을 위한 시스템으로 2014학년도 3,200천 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이후 2015년 95,000천원, 2018년 15,000천 원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상담관리, 경력관리, 취업관리, 현장실습 등 효과적인 상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에는 4,36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유지 운영하고 있음¹⁷⁾
- J-CAP시스템을 통해 지도교수는 개별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고 자퇴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업상담, 휴·복학상담 등 유형에 따라 필요시 전담부서에 연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J-CAP 지도교수 학생상담실적은 2023학년도에 총 8,615건(개인: 1,669건, 자퇴: 309건, 진로: 2,192건, 취업: 840건, 학업: 2,461건, 휴·복학: 1,064건, 비대면: 80건)로 나타났고 전체 재적학생 대비 학생상담률이 2022학년도 221.4%에서 2023학년도 235.7%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²⁾
- 중도탈락예방 및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계획 시 성과 목표 선정한 후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만족도조사, 사전·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함(장기결석자 대상 중도탈락 예방 프로그램인 ‘학교와 프로그램’ 참여자수: 2022학년도 34명 → 2023학년도 38명 참여, 만족도 3.96 → 4.83으로 증가, 기초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성과목표를 100% 달성 등)^{6),8)}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126.75%로 충족함 ▪ 재학생 관리는 J-CAP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학생 등록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자퇴상담프로그램, 장기결석생과 학사 경고자 밀착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재학생 등록 유지율 실적은 J-CAP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함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3.1.3	1) 대학생활 적응진단검사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2) J-CAP 지도교수 학생상담실적
	3) [협조문]2023년도 교수업적평가 평가자료 제출
	4) (학생상담센터) 2023 교수업적평가 학생상담 및 진로상담 실적
	5) 출결고위험군학생 관리실시 자료
	6) 학교와 상담프로그램
	7) 기초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8) 학사경고자 대상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9) 학습컨설팅 결과보고서
	10) 자퇴상담일지
	11) 학과장회의자료
	12) 대학생활실태조사 상담만족도 부분 결과보고
	13) 학생생활연구 학과 및 부서 배포 자료
	14)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15) 대학정보공시 4-라. 재학생 충원율
	16) 교수업적평가 시행규칙
	17) [기안] 2023학년도 장안대학교 학생상담센터 J-CAP 유지보수 재계약 건

3.1.4 학업 성취도 평가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p>a)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업성취도평가 기준을 학칙 제9장(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시행규칙 제4장(시험성적과 평가) 및 학업성적처리규정,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음^{1),2),3),4)} -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에게 사전 공지된 교육과정표(대학요람 중 교육과정표 (2023학년도)) 및 강의계획서(강의계획서 예시)에 교과목 교육목표와 성취수준(5단계기준)을 기반으로 시험성적, 과제 및 출결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적절하게 평가함 - 우리 대학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교육목표 및 성적평가)에 의거하여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분포 비율은 A⁺ ~ A^o 40% 이하, B⁺ ~ B^o 40% 이하 및 A, B등급이 80% 이하로 제한함⁵⁾ - 성적평가 보고를 통해 학과별 성적분포 비율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2023학년도 1학기 전공교과의 성적분포 비율은 A 33.9%, B 35.3%, C 17.4%, D 17.4%, F 8.4%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⁶⁾ 2023학년도 2학기 전공교과의 성적분포 비율은 A 34.8%, B 34.7%, C 17.7%, D 5.6%, F 7.2%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⁶⁾ <p>b) 학업 성취도 평가의 타당성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정함 및 타당성을 위하여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교육목표 및 성적평가) 2항에 의거 절대평가 할 수 있음을 규정함⁷⁾ - 이에 근거하여 수강인원 10명 미만, 현장실습 교과목, 자격증 교과목 등 학과의 특성이나 과목의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총장 승인 후 절대평가를 할 수 있으며, 총장 승인 후 2023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절대평가를 실시함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교과목 외 114 교과목 성적평가 방식 변경 · 2023학년도 2학기 슈퍼바이저론 교과목 외 214 교과목 성적평가 방식 변경 		

2	<p>대학은 학생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성과 부진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가?</p>	✓
<p>a) 성적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48조(성적), 제49조(성적의 취소)에 의거하여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고 있음⁹⁾ - 성적평가표를 통하여 F 성적을 부여받는 경우 학점을 미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p>b)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이의 제기 기회 제공 등 절차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이의제기는 성적 열람 및 정정 규정에 의거 정정 기간을 통해 정정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성적 열람 및 정정 기간을 공지하여 학생들이 열람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성적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1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입력기간 및 성적 입력 유의사항 안내 /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공지 (교무처) → 성적 및 정정기간 확인 / 성적 정정기간 내 성적이의제기 / 성적 정정기간 이후 성적 정정 신청서 작성 (학생) → 이의제기 확인 및 성적정정(교원) → 성적정정 후 교무처 제출 (교원) → 성적 부여 적합성 검토 / 총장승인 후 성적 최종 확정(교무처) -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이후 성적평가 이의제기에 의한 정정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이 성적정정신청서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는 성적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정정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시험답안지, 성적표 사본, 기타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통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성적정정이 이루어짐¹³⁾ -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의의신청 및 정정건수는 총4건(성적 전산입력 오류 1건, 출석점수 기재오류 2건, 기말점수 미반영 1건)¹³⁾ -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의의신청 및 정정건수는 총6건(출석점수 기재오류 2건, 과제점수 미반영 4건)¹³⁾ <p>c)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관리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처에서는 당해학기 성적처리가 마감 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각 학과 및 관련부서에 학사경고자 명단을 통보하여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및 강의내용, 학습방법, 수업태도 등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특별지도를 함 - 매 학기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학습태도, 학습동기 강화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함 		

<p>- 2023년 학사경고자 전화상담은 총 156건 진행되었으며(1학기 88명, 2학기 68명). 1학기 전화상담 후 2학기 등록율은 31.8%, 경고탈출 비율은 42.9%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¹⁴⁾</p> <p>-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학기 학생상담센터의 요청에 따라 학사경고자 대상으로 학습지도 코칭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별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시간관리 법 등 학습지도 코칭함^{15),16)}</p>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교육목표 및 성적평가)에 의거하는 학업 성취도도 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음 또한 학업성적처리규정 제8조에 의해 성적 정정이 가능함 ▪ 학습성과 부진 학생을 위해 학습코칭 지도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3.1.4	1) 학칙(제정 2001. 9. 17., 개정 2023. 8. 24.) 제9장(성적평가 및 졸업)
	2) 학칙 시행규칙(제정 2011. 3. 1., 개정 2023. 6. 21.) 제4장(시험과 성적평가)
	3) 학업성적처리규정(제정 2002. 3. 1., 개정 2023. 6. 21.)
	4)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제정2005. 3. 1., 개정 2023. 6. 21.)
	5)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교육목표 및 성적평가)
	6) 학기별 재학생 학업성적 결과보고서(2023학년도)
	7)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교육목표 및 성적평가) 2항
	8) 성적평가 방식 변경 기안
	9) 학칙 제48조(성적), 제49조(성적의 취소)
	10)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제정2005. 3. 1., 개정 2023. 6. 21.) 제6조(의신청 및 처리)
	11) 학칙 시행규칙(제정 2011. 3. 1., 개정 2023. 6. 21.) 제28조(성적정정)
	12) 학업성적처리규정(제정 2002. 3. 1., 개정 2023. 6. 21.) 제8조(성적열람 및 정정)
	13) 성적정정 결과보고 기안
	14)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5)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연계 요청 협조문
	16)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도코칭 운영 결과보고서

3.1.5 원격수업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p>a)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상위법인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기반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¹⁾, 「원격수업 운영규정」²⁾, 「원격수업 콘텐츠개발 운영지침」³⁾,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⁴⁾, 「C.D.L.(Center for Distance Learning) 서포터즈 운영지침」⁵⁾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지침」⁶⁾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¹⁾,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 운영규정」²⁾,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 콘텐츠개발 운영지침」³⁾,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⁴⁾,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은 「C.D.L.(Center for Distance Learning) 서포터즈 운영지침」⁵⁾, K-MOOC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지침」⁶⁾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 원격수업 정의와 분류는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2조(용어 정의)에 원격수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닝과 플립러닝으로 분류하고 있음 - 원격수업의 운영과 개설은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4조(강의개설과 운영)²⁾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4조(원격수업의 개설), 제7조(이러닝의 운영), 제8조(플립러닝의 운영)³⁾,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4조(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원격수업 개설), 제6조(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원격수업의 운영)⁴⁾에 명시하고 준수하고 있음 - 출석 및 평가, 이수 가능 학점, 학점인정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제5조(수강신청), 제6조(출석 관리), 제7조(학점인정), 제8조(성적평가)²⁾에 규정하고 준수함 - 원격수업의 분반은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4조(강의개설과 운영), 수업의 철회는 제13조(강의자 선정과 철회)²⁾에 규정하고 있음 - K-MOOC의 학점인정 및 학점 부여는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지침」 제4조(학점인정내용), 제6조(학점부여방법)⁶⁾에 규정하고 준수함 - 원격수업 학점교류는 이러닝으로 규정하여 학점을 인정함¹⁾ -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품질 향상을 위한 「C.D.L.(Center for Distance Learning) 서포터즈 운영 지침」⁵⁾을 두어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 		

b) 원격수업 지원 추진 체제 확인

<원격수업 지원 조직(원격교육지원센터 등) 및 업무분장>

- 우리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는 K-MOOC 사업운영과 비대면 교육 강화, Covid-19 대응 온라인교육업무를 위하여 2021년 4월 교무처 산하에 신설하였음. 2022년은 센터장 1명, 조교 3명이 운영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센터장 1명, 조교 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¹¹⁾
- 우리대학은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원격수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⁷⁾
 - 교무처: 총괄
 -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 K-MOOC 운영, 만족도 조사, 예산 계획 및 집행
 - 교무팀: 원격수업 운영 지원
 - 정보지원센터: 서버, DB, 하드웨어 관리, 시스템 백업, LMS 기능 개선 및 교내 타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관리
 -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의 통합적 지원, 교육과정 개발,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자문
 - 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 수업 운영 자문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원격교육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1),9)}
-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교수를 포함한 11명 내외로 구성하여 원격수업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콘텐츠의 품질관리 및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함^{1),10)}

<외부 기관 원격교육지원 협조 체계>

-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K-MOOC 사업에 선정되어 원격교육 콘텐츠 연구지원을 받음
- 우리 대학은 수도권역 대학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 협력을 협약하여 공동 활용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음^{15),17)}
-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 학점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 1학기 50명, 2023년 2학기 78명 학점 교류를 시행함¹⁶⁾
- 수도권역 전문대학원격교육 협의회 위원으로 인프라 제공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¹⁸⁾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활동>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원격수업 교과목 및 운영자 선정 심사와 원격수업 연구개발비 지급 심의,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 강화 방안, 원격수업 부서 발전 계획 및 예산 편성

안, 원격수업 관련 규정 변경, 관리위원회 구성 건, K-MOOC 운영 현안 등을 논의⁹⁾

c)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확인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 2021년 자체 원격수업관리시스템(LMS)인 E-CAMPUS에서 J-CAMPUS로 교체하여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완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중임¹⁴⁾
 - 학습관리시스템과 J-Campus를 통합한 시스템 개발로 콘텐츠 관리와 자동 출결 연동 관리기능 탑재
 - 모바일 앱지원, 온라인 시험 기능, 동시접속 5,000명 구축
 - 수업 운영 관리(수업 50분 이상 구성 시 작동) 시스템 구축
- 원격수업을 위한 이러닝 스튜디오 5개를 구축하여 운영함²¹⁾
 -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라이브 스튜디오 구축
 -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공동활용 셀프 스튜디오 구축
 - 영상 합성이 가능한 크로마키 스튜디오 2개 구축
 - 전자칠판 스튜디오 1개
- 효율적인 원격교육 스튜디오 활용을 위하여 ‘3개년 스튜디오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음²⁵⁾
- 이러닝 수업을 위한 기자재 장비 대여
 - 인공지능 AI 카메라 22대, 웹캠 180대, 무선마이크 6개, 스마트패드 18대 등 대여용 기자재 지원²⁴⁾
- 본인인증 및 보안 시스템
 -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2차 인증시스템(R-OTP)을 적용하고 있음²⁵⁾
 - 일정시간 후 자동 로그아웃이 되는 세션 타임아웃을 적용하여 보안 관리를 하고 있음²⁵⁾

<원격수업 지원(행·재정적) 실적>

- 원격수업 운영비 지원^{11),14)}
 - 2023학년도 원격수업 운영비로 30,534,030원을 지원하였음.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로 12,850,000원, 장비관리비 13,860,000원, 기계기구매입비 2,821,670원, 소모품비 108,360원, 교육훈련비 250,000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 기타운영비 644,000원을 편성하여 지원 완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 원격수업 운영비로 45,800,000원을 편성함.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로 18,200,000원, 장비관리비 21,000,000원, 기계기구매입비 500,000원, 소모품비 1,000,000원, 교육훈련비 600,000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 기타운영비 4,500,000원을 편성 및 책정함 		
2	대학은 원격수업에 관한 학사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수업을 관리하고 있는가?	✓
<p>a) 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 확인</p> <p><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원격수업 출결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원격수업운영규정 제6조(출석관리), 제9조(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⁹⁾ - 신규 LMS J-CAMPUS 구축으로 학습관리시스템과 통합하여 전자출결 자동 연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별 학습 시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활동(과제물, 퀴즈, 토론 등)으로 합계 50분 수강시 출석으로 인정됨 · 수업구성(콘텐츠 25분 이상+학습활동) 50분 미만 시 수업 개설 완료가 안되며, 반드시 50분 이상 구성하도록 구축함 · 학습활동(퀴즈, 토론, 과제)의 인정시간은 ‘원격수업 인정시간 산정 기준표’에 마련하고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의 별첨1에 명시하고 있음 · 실시간 기반 원격수업은 담당교수가 매 시간마다 실시간 출석을 기재함 - 원격수업의 출결,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음²⁸⁾ <p><원격수업 강좌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신규 콘텐츠 개발 현황^{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 기초운동생리학, 영어번역(1), 사회복지행정론, 운동카운슬링, 항공실무영어, 방송무대 스타일링, 패션트렌드 분석, 객실업무론, 외식서비스경영론, 교육학개론, 중국어회화(3), 교육과정운영세미나, 언어지도, 동물번식학, 아동안전관리 · 2024학년도 : 연회실무, 객실업무론, 특수교육학개론, 스포츠 마케팅, TOEIC(3),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교육과정 운영세미나, 지역관광의 이해, 관광학원론, 기초호텔일본어, 기초호텔중국어, 기초 호텔영어, 식품위생학, 자기개발능력, CS서비스매너기술, 병원의 이해, 패션테마 스타일링, 창의적 글쓰기와 말하기, 텍스타일 코디네이션 		

- 이러닝 원격수업 강의 활용 현황
 -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수 360명, 이러닝 재운영(1과목), K-MOOC 콘텐츠 활용(2과목), 신규운영(3과목)
 -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수 562명, 이러닝 재운영(6과목), K-MOOC 콘텐츠 활용(2과목), 신규운영(2과목),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3과목)
- 플립러닝 운영 현황
 -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수 234명, 신규개발 5과목
 -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수 63명, 신규개발 3과목
- 원격교육(LMS)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²⁶⁾
 -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등 8회 비교과 원격교육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함
- K-MOOC 이수강좌 수강인원 현황(1학점 인정, 성적 평가 P 부여)¹⁹⁾
 - 2023학년도 1학기 1명
 - 2023학년도 2학기 3명
-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학점교류(2학점 인정, 성적 평가 P 부여)¹⁶⁾
 - 2023학년도 1학기 50명
 - 2023학년도 2학기 78명

b) 원격수업 평가 관리 체계 확인

<원격수업 강의계획서 및 관리 체계>

- 「원격수업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4조(원격수업의 개설)」에 의하여 과목 개설 전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운영 대상 과목을 선정함
-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신청, 출석관리, 성적평가, 학점인정에 관련 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5조~8조에 명시하고 준수함²⁾
- 강의계획서내에 주차별 강의 계획, 평가 기준, 평가 내용을 명시함²⁸⁾
- 우리대학은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실시하고 있음
- 출결은 J-CAMPUS(LMS)시스템 상 출석 관리가 가능하며 교내 출결시스템과 자동 연동하여 관리함
- 우리대학은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학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함

- 담당교수는 제출 과제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시함^{27),28)}
- 교과목 운영결과보고서에 운영결과, 과제출제, 시험퀴즈, 팀 프로젝트 등 학습활동내역을 작성함²⁷⁾

c)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체계 확인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 우리 대학은 원격수업 질관리에 대한 규정과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갖추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음
 - 신규 개발 원격수업 교과목은 사전 신청 후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교과목을 선정함^{3),9),12)}
 - 학생 및 교직원, 교수로 구성된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서 학기당 2회 원격수업 모니터링을 시행 후 결과 및 보완사항을 담당 교수에게 전달함²⁰⁾
- 1학점당 콘텐츠 학습 25분과 퀴즈 토론 등 상호작용 시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시간을 규정하며, LMS에 50분 이상 수업 구성시만 수업 공개가 되도록 설정함. 또한, 원격수업 관리위원회가 수업 품질에 대하여 모니터링 함^{2),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우리 대학은 2010년 원격수업 운영체제 구축 후, 매년 원격수업 이러닝과 플립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였음¹⁴⁾
 - 신규 이러닝 콘텐츠는 2023학년도 1학기 3과목, 2023학년도 2학기 2과목, 2024학년도 1학기 1과목을 개발하였음^{12),13)}
 - 신규 플립러닝 콘텐츠는 2023학년도 1학기 5과목, 2023학년도 2학기 3과목, 2024학년도 1학기 6과목을 개발하였음^{12),13)}
 -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원격수업 콘텐츠는 2023학년도 2학기 3과목, 2024학년도 1학기 16과목을 확보하였음^{12),13)}
-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연장 운영 및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11조(이러닝 콘텐츠의 연장 운영)³⁾에 명시하고 있음

- 교외 연계 원격수업으로 K-MOOC,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 학점교류 교과목을 제공함
 - 2023년 K-MOOC 개별강좌 1과목, 묶음강좌 1강좌 중 1과목,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 학점교류 2과목을 제공함

<개인 보호관리 시스템>

- 우리 대학은 로그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2차 인증 시스템(R-OTP)를 운영 하고 있으며, 일정시간 후 자동 로그아웃이 되는 세션타임아웃 보안을 적용하고 있음²⁵⁾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확보 및 지원 실적>

- 우리 학교는 교비, K-MOOC 지원비, 전문대학 비대면 콘텐츠 개발지원금으로 자원을 확보함
- 2023학년도 신규콘텐츠로 총 15과목을 개발하였으며, 재운영 교과목 7과목, 외국인 유학생 별도 반 3과목, K-MOOC콘텐츠를 교내 수업용으로 재 제작한 2개 교과목을 개발하였음¹²⁾
 - 2023학년도 신규콘텐츠
 - : 기초운동생리학, 영어번역(1), 사회복지행정론, 운동카운슬링, 항공실무영어, 방송무대 스타일링, 패션트렌드 분석, 외식서비스경영론, 객실업무론, 교육학개론, 중국어회화(3), 교육과정운영 세미나, 언어지도, 동물번식학, 아동안전관리
- 2024학년도 신규콘텐츠로 19과목을 확보하였으며, 재운영 교과목 2과목,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12과목, K-MOOC콘텐츠를 교내 수업용으로 재 제작한 2개 교과목을 확보하고 있음¹²⁾
 - 2024학년도 신규콘텐츠
 - : 연회실무, 객실업무론, 특수교육학개론, 스포츠 마케팅, 토익3, 동물병원 실무 및 실습, 교육과정 운영세미나, 지역관광의 이해, 관광학원론, 기초호텔일본어, 기초호텔중국어, 기초호텔영어, 식품위생학, 자기개발능력, CS서비스매너기술, 병원의 이해, 패션테마스타일링, 창의적 글쓰기와 말하기, 텍스타일 코디네이션
- 2023년 원격수업 운영비로 30,534,030원을 지원하였음¹⁴⁾
-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하여 2022년 수도권역 원격교육지원센터 공동운영 셀프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지속 운영함¹⁷⁾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번역 프로그램, AI자막 프로그램, 편집프로그램을 지원함³⁰⁾
- 5개의 원격스튜디오로 콘텐츠의 양적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격교육 스튜디오 개선 계획(3

개년)' 으로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²³⁾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대학은 원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지침, 원격수업 운영규정 등으로 체계 및 기준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본 대학은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2장에 의거 운영기준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관리를 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3.1.5	1)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2) 원격수업 운영규정
	3)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4)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5) CDL(Center for Distance Learning) 서포터즈 운영지침
	6)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지침
	7) 원격지원센터 지원조직 및 업무분장
	8) 원격교육지원센터 위원회 위촉 (센터운영위원회 수업관리위원회)(2023, 2024)
	9)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3, 2024)
	10)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회의록(2023)
	11) 원격교육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2023, 2024) -5p업무분장
	12) 원격수업 운영자 선정(2023, 2024)
	13)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결과 보고(2023, 2024)
	14)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종 결과보고(2023)
	15)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 간 원격교육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서
	16)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학점교류 기안
	17)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인프라 구축완료 보고서
	18) 수도권역 내 전문대학 대학원격교육협의회 위원 명단
	19) K-MOOC 학점 취득 자료
	20) 원격수업 모니터링 자료(2023, 2024)
	21) LMS 학습관리시스템 보유 현황 자료(2023, 2024)
	22)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현황
	23) 스튜디오 개선 계획
	24) 보유 장비 및 대여 관리 내역
	25) 개인정보보안 자료
	26) 원격교육 비교과 운영 협조문
	27)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예시
	28) 이러닝 강의 및 평가계획서 예시
	29) 3년 경과 원격수업 콘텐츠 재개발(수도권역 공동 활용)
	30) 원격수업 AI번역, 자막 프로그램 구매 기안

3.2 교수학습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p>a) 교수학습지원 추진 체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에 기반 한 조직 구성 및 업무 진행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역량 개발, 교원의 교수역량 향상 및 교육 연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체제를 갖추고 있음¹⁾ -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교수지원프로그램, 학생지원프로그램, 교수·학생 공동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기간, 운영절차, 지원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 환류가 이루어짐²⁾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전담인력(센터장1명, 직원1명, 조교1명)을 배치하여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운영위원회 5명을 위촉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함^{3),4)}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전년도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단위의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각 프로그램은 세부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 운영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보고를 통해 환류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순환의 체제를 갖추고 있음^{5),6)} <p>b)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내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도 초 교수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분석과 개별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함^{7),8)} -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분석 후, 중요도에 대한 고려와 학내 여건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 평가, 환류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함⁵⁾ - 교수법 특강의 경우, 교원의 요구에 따라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정비율로 제공하여 교수자의 참여율 제고 및 효과성 향상을 도모함⁹⁾ - 교원의 교육기관 다양화 요구에 따라 타 대학 및 교육부 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교육을 총 6회 지원함¹⁰⁾ - 학생의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주제를 선별하고 특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습법 특강은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함^{11),12)}

2 대학은 학생의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개선하고 있는가?

v

a)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 지원 실적 확인

- 신입생은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J-CESS(역량 중심 교육지원시스템)를 활용하며 국어, 영어, 수학, 수학(공학)에 대한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향상도를 체크함^{13),14)}
- J-CESS(역량 중심 교육지원시스템)에서 기초학습능력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국어 55점 이하, 영어·수학·수학(공학) 40점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강의(10주차)를 실시함¹⁴⁾
- 기초학습향상 사전평가 실시 후 기준 점수 하위자인 학생을 학과로 통보하고 학과장의 수강지도계획을 받아 학과차원에서 학습지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¹⁵⁾
- 2023학년도 전체 신입생 757명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43명이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¹⁴⁾
-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23학년도 성과목표 대비 실적을 100% 달성함¹⁴⁾

b) 학습역량 강화 지원 실적 확인

-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장안튜터링, 학습법특강, 학습컨설팅, SMART 프레젠테이션 아카데미, JCC(Jangan CTL Contest) 프로그램을 운영함^{16),17)}
- 학습법 특강 중 일부는 ‘찾아가는 학습법 특강’으로 진행하여 학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¹⁸⁾
- 교내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습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한 학습지도 코칭(23학년도 학습컨설팅)을 진행함¹⁹⁾
- 학습자 특성의 다양화로 인해 소수집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맞춤형 포스터 제작, 유학생 및 만학도를 위한 발자국 튜터링을 신규 개설함²⁰⁾
- 2023학년도에는 교비 집행금액 16,727,500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²¹⁾

c) 학습역량 강화 지원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평가
 - 각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량적·정성적 실적을 확인하고 지난 연도 평가 결과에 제시된 환류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성과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함²²⁾
 - 프로그램의 정성적 평가는 각 단위 프로그램 실시 후 실시되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 내용 중 ‘프로그램에서 도움이 된 사항’ 과 ‘아쉬운 사항’ 을 기초로 작성되며, 학습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내의 ‘프로그램 우수사항’ 과 ‘프로그램 개선사항’ 항목에 기입함²²⁾
 - 이상의 정량적·정성적 프로그램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환류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시행계획에 반영함¹⁶⁾
- 평가 결과의 환류(개선) 실적
 - 소수집단(장애학생, 외국인유학생, 만학도, 다문화가정 등)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하여 장안튜터링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발자국 튜터링’ 을 신규 기획하여 운영함²³⁾
 - ‘소수집단을 위한 학습권보장 포스터’ 를 제작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²⁴⁾
 - 학과별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학습법특강’ 을 기획하여 각 학과에 안내함으로써, 대학생에게 필요한 학습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¹⁸⁾
 - 학사경고자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의 일환으로 학생상담센터와 협력하여 ‘학습지도 코칭 프로그램’ 을 운영함으로써, 대상자가 학업 뿐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¹⁹⁾
 - 교수학습개발센터 인스타그램을 신규 개설하고 공모전 및 우수사례 축적과 확산을 위하여 SNS(전공모아 앱, 장안대학교 유튜브 등) 홍보를 진행함²⁵⁾

3	대학은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개선하고 있는가?	✓
---	--	---

a) 강의평가 규정 및 실시 확인

- 우리 대학은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대학의 웹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기 중 2회(단, 계절학기 1회)의 강의평가를 실시함²⁶⁾
-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자에게 수업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 강의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²⁷⁾
- 강의평가는 총 16개 항목으로 조사하며, 교수자는 우리대학 웹지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강의평가 내용을 소속 학과 및 학부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어, 자신의 강의

에 대한 수준 점검과 함께 이를 강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²⁷⁾

- 우리대학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에 활용함으로써 교원 강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²⁸⁾
- 강의개선이 요구되는 교수(강의평가 70점 이하)는 강의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프로그램(교수법 특강, 교육연수, 전달연수, 교수학습 연구대회, 교원학습공동체, 티칭과워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의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음²⁹⁾

b)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확인

- 우리 대학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법 특강 및 세미나, 교원학습공동체, 교육연수, 티칭과워업 프로그램, 교수학습 연구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³⁰⁾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년 부서발전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적으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³¹⁾
- 교수자의 수요에 맞는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학과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교수법을 제공함⁷⁾
- 운영된 프로그램은 정량적·정성적 평가 과정을 거친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반영함
- 2023학년도에는 교비 집행금액 6,831,300원으로 교수들의 강의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³²⁾

c)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교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평가
 - 각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 평가 결과에 제시된 환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차년도 환류 계획을 세움³⁰⁾
 - 결과보고서의 ‘프로그램 우수사항’ 과 ‘프로그램 개선사항’ 항목은 각 프로그램 진행 후 실시된 만족도 평가 설문지의 주관식 항목인 ‘본 프로그램에서 도움이 된 사항’ 과 ‘아쉬운 사항’ 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견과 함께 반영함³³⁾
- 평가 결과의 환류(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수 후 학과에서만 진행하던 전달연수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교육연수 내용을 공유 확산함³⁴⁾ • 수요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주제선정 및 학사일정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수법 특강을 병행함으로써 교수자의 만족도 및 참여율을 높임^{7,9)} • 교수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전임교원까지 참여자를 확대하여 학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교수들의 참여율을 높임³³⁾ • 교원의 교육기관 다양화 요구조사에 따라 타 대학 및 교육부 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수법 교육을 지원함¹⁰⁾ 	
<p>판단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음. ▪ J-CESS(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학습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기준 미달 학생에게는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강의(10주)를 실시. 또한 장안튜터링, 학습컨설팅, 프레젠테이션 아카데미, JCC(jangan CTL Contes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역량 강화를 실시함. 각 프로그램은 결과 도출 및 환류를 통해 성과 개선에 노력함. ▪ 교수의 강의역량 강화를 위해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교수법 특강 및 세미나, 교원학습공동체, 교육연수, 티칭파워업 프로그램, 교수학습 연구 대회를 실시함. 이러한 프로그램의 환류를 통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p>Y</p>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3.2.1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제정 2011.5.1, 개정 2023.5.30.)
	2)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제정 2009.1.1, 개정 2022.8.1.)
	3)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분장 (2023)
	4)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시행 기안 및 회의록(2023)
	5)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 자료(2023)
	6)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2023)
	7)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지원 프로그램 의견수렴 수요조사 관련 자료(2023) pp.6~9
	8)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의견수렴 수요조사 관련 자료(2023) pp.9~14
	9)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법특강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2023)
	10) 타 대학 및 교육부 기타 기관 교수법 교육 안내 협조문(2023)
	11)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의견수렴 수요조사 관련 자료(2023) p.14
	12)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법특강 결과보고(2023)
	13) J-CESS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 시스템 사용 설명서
	14) 교수학습개발센터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15) 교수학습개발센터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과별 학습지도계획 (2023)
	16)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2023)
	17)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18) 교수학습개발센터 찾아가는 학습법특강 자료(2023)
	19)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도 코칭(학습컨설팅) 학생상담센터 연계자료 (2023)
	20)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수집단 지원내역(2023)
	21)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출 내역(2023)
	22)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23) 교수학습개발센터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장안튜터링 지원 관련 운영계획서 및 안내문(2023)
	24) 소수집단을 위한 학습권 보장 포스터(2023)
	25) 교수학습개발센터 공모전 및 우수사례 홍보자료(2023)
	26) 강의평가 운영지침
	27) 강의평가 16문항 및 교수자 웹지원 시스템 자료
	28)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정2006.3.1. 개정 2023.5.30)
	29) 강의개선이 요구되는 교수 목록 및 강의개선계획서,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내역(2023)

30)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2023)
31)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서발전계획서 (2023)
32)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지원 프로그램 지출 내역(2023)
33)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34)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연수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4.1.1 산학협력활동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p>a)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는 2004년 3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발족하였으며, 장안대학교 헌장, 장안대학교 학칙 제11조(산학협력단 설치), 제90조(부설기관)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운영함^{1),2)} - 장안대학교는 직제규정의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조직)에 의거하여 대학본부 내 산학협력처를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산학협력단(개정 2023.02.13.)을 두고 있음³⁾ - 장안대학교는 원활한 산학협력활동 운영 및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처 산하에 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4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별 운영규정을 정비함.^{4),5),6),7)} - 2022년 5월 13일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의 실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음.^{8),9),10),11)} <p>b) 산학협력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처(단)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추진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교무처 교무팀, 학생지원처 경력개발지원팀 등과 협업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산학협력처 내 취·창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2022.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전환), 현장실습지원센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국제교류센터(2022.5.13. 국제교류원으로 직제변경)는 부서별 운영계획에 따라 산업체 연계,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산학협력단 산하에는 산업기술연구소, 장안서비스카지노아카데미, 관광교육센터, 다문화지원센터를 두고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의왕육아종합지원센터 외 4곳의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산학협력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부서와 연계하여 산업체 연계 및 협력활동 업무를 수행함¹²⁾ - 산학협력처(단)는 원활한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 부서 내 3명의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처 연계 4개 센터_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1인, 조교 1인),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1인, 조교 1인, 컨설턴트 4인), 현장실습지원센터(센터장 1인, 조교 1인), 일학습공동훈련센터(센터장 1인, 전문컨설턴트 2인)는 각각 내부 전담인력을 두고 적절한 업무를 수행함¹²⁾

c)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노력¹³⁾
 - 산업체 경력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을 마련함¹⁴⁾
 -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함
-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원 노력
 -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2장(업적평가) 제4조, 교수업적평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적평가에 산학협력협약 실적 및 사업운영실적을 반영하고 있음^{15),16),17)}
 - 내부적으로 산학협력 전담인력 확대를 위해 국책사업추진 준비 및 유치 장려를 위한 ‘산학공동체’ 를 조직 및 운영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혁신교육체계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¹⁸⁾
 - 산업체 연계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을 주제로 포럼 행사를 2022년 8월 산관학네트워킹데이의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으며 14,915,940원의 예산을 지원함¹⁹⁾
- 산학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행정조직 개편,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등
 - 산학협력지원 활동 전문성 강화 및 원활한 협업을 위해 취·창업지원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산학협력처 산하 조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회계인력 1인 채용을 통해 사업운영 및 지원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을 꾀함(2022.8.1.~)²⁰⁾
 - 산학협력처(단) 전문인력의 직무 지원²¹⁾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²²⁾를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력 연구 및 사업집행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함(2022년, 2023년 총 18회, 2,880,000원)

2	대학은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	----------

a)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 산학협력처(단)는 부서별 부서발전계획서에 의거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과별 산학협력 활동 심의를 통해 결과를 학과에 통보하여 차년도 학과별 산학협력활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³⁾

- 산학협력 MOU체결, 산학협력 체결, 산관학네트워킹데이, 가족회사 운영 등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2022년)을 통해 관광공사 온라인 교육과정을 우리 대학 관광, 호텔조리, 항공분야 전공 학과와 연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장안대학교 기관맞춤과정 강좌개설, 지역상생 관광서포터즈 운영, 관광기업 전문가 초청특강 2회 개최)을 운영함²⁴⁾
 - (재)화성산업진흥원과 MOU 체결(2023년)하여 관계자가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및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함. 화성시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재)화성산업진흥원, 국제교류원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²⁵⁾
 - 산학협력 MOU 체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2023년)과 관학 협약을 체결함²⁶⁾
 - 가족회사 협약 체결: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과 외 산학협력처 자체 가족회사 협약 체결 [23년 15개 신규업체(누적 269개), 산학협력처 가족회사 체결(3개업체)]²⁶⁾
 - 산학협력 체결: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협약 기준 22년 273개 업체, 23년 239개 업체와 산학협약을 체결함. 협약체결 산업체 중 일부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27),28)29)}
 - 학과별 캡스톤디자인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현장실무능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를 개최,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심사하고 진행하였음³⁰⁾
 -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활동: 경기도 및 화성시 관내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산관학네트워킹데이를 개최(22년 8월 23일) 15개 업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함¹⁹⁾
 - 교직원 대상 외부 특강 및 포럼은 교내 혁신포럼 및 산관학네트워킹데이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22년 2회(참석인원 38명) 개최하였음^{19),31)}
 - 화성시웰빙건강클리닉 센터와 2023년 총 2회(6월, 12월) 워크숍을 진행함³²⁾

b)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산학협력처(단)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원 대상 외부사업 및 교내 사업의 적정성을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에서 운영된 외부사업으로 2022년은 18건(3,183,306,581원), 2023년은 12건(4,504,258,221원) 진행하였으며 산학협력체결을 통해 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함³³⁾³⁴⁾
 - 산업체만족도 조사분석 결과³⁵⁾(2023년도는 조사 진행중)를 통해 코로나 19의 엔데믹화에 대비하여 외부 기관 및 기업체와의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산학협력활동 홍보강화, 대학의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한 부서별

<p>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처(단) 부서발전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 성과보고서 작성 후, 개선사항을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²³⁾ · 개선사항에 따라 산학협력처(단) 내 회계부문 전담직원 1명(계약직)을 채용 · 산학협력처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학과별 산학협력 성과 및 개선보고서를 받아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2022년, 2023년)³⁶⁾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지원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교내·외 산학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산학협력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와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 다만, 2023년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활동 내용이 미비하여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C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4.1.1	1) 장안대학교 현장
	2) 장안대학교 학칙
	3) 직제규정
	4)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5)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6)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규정
	7)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정
	8) 산학협력단 정관
	9)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10)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11) 산학협력단 추진위원회 규정
	12) 산학협력처(단)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13) 신규 임용교원 산업체 경력현황(2021년)(이후 신규임용자없음)
	14)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규정
	15) 교수업적평가규정
	16)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17) 교수업적평가 산학협력 실적 및 실제반영증빙자료(샘플)
	18) 2023년 산학협력공동체 프로그램 시행자료
	19) 산관학네트워킹데이 관련 자료(2022년)
	20) 회계인력충원 자료
	21) 전문인력 직무연수(2022년, 2023년)
	22) 교원 산업체 연수 자료
	23) 부서발전계획서, 부서성과평가보고서(2023년)
	24) 한국관광공사 MOU체결 자료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자료
	25) 화성산업진흥원 MOU체결 자료 및 진행사업 자료
	26) 산학협력, 가족회사 MOU체결 자료
	27) 2022-2023년 일반협약 및 가족회사 체결 현황
	28) 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운영 자료
	29) 학과별 진로 및 취업강좌 현황(2023년)
	30) 학과별 캡스톤디자인 개설현황 및 캡스톤경진대회 관련 자료
	31) 혁신포럼 시행 자료

32)	웰빙건강클리닉 워크샵 시행 자료(6월 12월)
33)	산학협력단 사업실적 현황(2022년, 2023년)
34)	산업자문관련 자료(2022년, 2023년)
35)	2022학년도 장안대학교 산업체만족도 자료
36)	학과 산학협력 성과 및 개선보고서(2022년, 2023년)

4.1.2 취·창업 지원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p>a) 취·창업활동 지원 규정 확인</p> <p>- 우리 대학은 취업지원활동규정¹⁾과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²⁾, 대학일자리센터운영규정³⁾에 의거하여 취·창업지원 활동을 위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창업지원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창업지원규정⁴⁾, 취업동아리 운영규정⁵⁾, 창업동아리 운영규정⁶⁾, 취업지도위원회 운영규정⁷⁾ 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음</p> <p>b) 취·창업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담당인력, 업무분장 등) 확인</p> <p>- 취·창업지원센터는 업무를 총괄하는 취·창업지원센터장과 행정조교 1인,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20명)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⁸⁾</p> <p>- 진로취업지원팀(구 경력개발지원팀)은 취업통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직원 2명과 취업전담 컨설턴트 4명과 센터장으로 구성된 취업지도위원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⁹⁾</p> <p>1) 취·창업 지원 조직 및 추진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 진로취업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 외에도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처, 교무팀, 총무팀, 기획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 취업지도위원회¹⁰⁾,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¹¹⁾ · 취·창업 전담인력은 총 2명으로 학생 수와 업무량 대비 충분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별 담당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진로취업지원팀의 전담 직원 2명과 취업컨설턴트 4명이 함께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대학생활, 진로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p>c) 취·창업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p> <p>- 취·창업 내부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J-CAP 장안경력개발시스템 (이하 ‘J-CAP’)’ 을 통해 진로이력관리, 구직카드관리, 자격·면허 이력관리, 경력관리, 외국어 능력관리, 희망 직종 직무관리, 자기소개서 관리, 취 		

	<p>업 및 진로 상담 관리 등 학생들의 취업분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경력 시스템 활용과 워크넷 연동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3년에는 비대면 화상 상담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음¹²⁾(정부지원금) · 학생들의 취·창업 활용공간인 잡 카페(Job Cafe)에는 취업컨설턴트 1인당 1실의 상담실을 보유, 1:1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테이블, 의자, 컴퓨터, 전화 등이 제공되었으며 커피 등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정보검색용 컴퓨터, 취업지원 관련 참고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최신자료로 교체하고 있음. 취업전담 세미나실에는 빔프로젝터를 갖추고 있음¹³⁾ ·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내부인적 자원 구축을 위해 취업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대상으로 취업지도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총 22명이 이수¹⁴⁾하였고(정부지원금), 교원의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해 ‘2023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보수교육’에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 2명이 이수¹⁵⁾ 하였음 <p>- 취·창업 외부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외부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경기남부지역 대학연합 취·창업지원사업 G-HOP 운영에 참여하여 대학 연합의 취·창업스쿨교육, 취업 캠프, 대학 연합 경진대회로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아이디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3팀이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함¹⁶⁾ · 또한 경기남부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G-HOP 대학연합, 공공기관, 투자기관, 기술·창업 전문위원,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3년 초기창업패키지 WoW-STARTUP FESTA G-HOP 대학연합’에 참석¹⁷⁾하였고 ‘2023학년도 청년 장애인 창업공유대학 및 제3회 전국장애-비장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성과공유회’에 참석¹⁸⁾하여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LINC 3.0 사업단] 2024 LINC 3.0 공유 협업산학연 세미나에 참석¹⁹⁾하는 등 외부인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함 <p>-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의 운영으로 대학일자리센터와 취·창업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내부, 외부 인프라구축과 학생취업지원에 노력하였음</p> <p>- 대학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교내 학습과 교외 현장 직무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취·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p>	
2	대학은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a)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 및 실적 확인

- 우리 대학은 취업지원 활동 규정과 창업지원규정,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센터-학과-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취·창업지원활동을 위한 취업지원활동규정,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창업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동향 및 기업분석, 학생 요구를 적극 반영한 연차별 부서발전계획서²⁰⁾를 작성하여 취업지원계획과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서발전계획서에 명시된 연간 취·창업지원계획 이행 후 환류계획을 명시하여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²¹⁾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
- 취·창업활동 재정적 지원 실적: 우리 대학은 ‘창의적 전문직업인 양성’을 사명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취·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취·창업지원활동으로 7,544,120원(진로취업지원팀)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지원 하였고,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31,725,458)예산을 집행하여 재정지원 하였음.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 기반으로 2023학년도 300,000천원(정부지원금)을 지원함²²⁾
- 우리 대학은 교원의 취·창업 능력향상을 위한 취·창업지도사 자격증 취득지원사업(22명 이수, 500,000원)¹⁴⁾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의 취·창업 능력향상을 위한 취·창업동아리(20팀 총 254명, 9,328,208원)²³⁾,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12팀, 2,978,160원)²⁴⁾, 스타트업페스티벌(6팀, 3,062,890원)²⁵⁾, 굿즈 경진대회(22명 1,800,000원)²⁶⁾, 취창업캠프(60명, 10,950,000원, 정부지원금 6,150,000원)²⁷⁾ 등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G-HOP 경기남부대학 연합사업(경기남부권 10 총 개 대학 연합)에 참여하여 취·창업스쿨 교육, 취업캠프, 대학 연합 경진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음(3팀 총6명 참가, 3,000,000원)¹⁶⁾
- 우리 대학은 취·창업지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높은 취·창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운영계획 수립(취·창업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취·창업지원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 수요조사²⁸⁾,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²⁹⁾, 산업체 만족도 조사³⁰⁾ 등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진로취업지원팀 및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에 따른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단위 운영계획 기반,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역량 향상)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작성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운영성과 점검 및 분석) → 취·창업지원계획안 수립에 반영(개선안 검토 및 심의,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운영결과 및 개선안 도출)하여 PDCA 기반의 환류체계를 통해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선순환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모든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보고에는 반드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에 대한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출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한 뒤 추가 요구사항이나 미비사항 등을 중점 파악하여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과 취·창업지원 계획에 의하여 학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6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음³¹⁾

b) 취·창업 지원 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진로취업팀은 매년 취업지원부서 발전 수립 및 취업지원사업 운영 결과 내용을 ‘취업지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취업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취업지원사업 개선에 반영함

- 취·창업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 분석 및 개선실적

- 취·창업지원계획 수립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장안대학교 전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안대학교 학생 진로 결정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취·창업활동 지원 부서 사업계획에 반영함²⁸⁾(정부지원금)

- 취·창업지원 협력부서인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 후 ‘학생생활연구’를 발간하여 학과, 학부 및 행정부서에 배포 함. 결과를 분석 활용하여 취업 부서사업계획에 반영함³²⁾

- ▶ 2023학년도 조사 결과, 취업지원팀 인지(51%), 취업지원팀 방문(9%), Job카페 방문 경험(21%)으로 조사되어 취업관련 부설기관의 홍보와 안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위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창업지원센터는 센터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 관리, 센터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하였고, 진로취업지원팀의 취업컨설팅트의 찾아가는 취업특강³³⁾을 통해 취업교육 및 취업 자료 제공을 강화하였음. 또한, Job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및 학생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환류 사항을 반영하였음^{13),34)}

-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의 환류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취·창업동아리 운영결과, 취·창업동아리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높은 만족도와 확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2023년 부서발전계획서의 취·창업동아리 운영계획은 총 10개 동아리였으나 실제로는 20개의 취·창업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재학생을 위한 취·창업문화 확산에 이바지 함²³⁾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현실적 사업화 계획평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 회사에 의한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많은 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p>요구를 수렴하여, 채점방식과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음²⁴⁾</p> <p>· 취·창업능력향상캠프는 23년도 참가인원 목표 30명의 두배인 60명이 참가하였으며, 취·창업캠프 참여 학생들의 90%가 만족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캠프 운영 시 취업과 창업의 공통강의 후 희망진로에 맞추어 분반활동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맞춤 과정을 운영함. 차년도에는 창업과 취업을 두 번 나누어 캠프를 진행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임²⁷⁾</p> <p>· 경기남부지역대학 10개 학교가 취·창업사업(G-HOP)으로 연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각 대학 교내경진대회 우수팀을 대표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학교 대표가 2023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교내 경진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3팀만 취·창업사업(G-HOP)참가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차년도에는 장려상까지 참가 기회를 부여하여 많은 학생들이 외부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¹⁶⁾</p>		
3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 우리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2022학년도 64.9%, 2023년도 71.5%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6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³¹⁾</p>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전담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음 ▪ 취·창업지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세우는 등 환류체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음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졸업생의 취업률은 71.5%로 평가기준인 60%를 충족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4.1.2	1) 취업지원활동규정
	2)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3)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규정
	4) 창업지원규정
	5) 취업동아리 운영규정
	6) 창업동아리 운영규정
	7) 취업지도위원회 운영규정
	8) 2023학년도 취·창업지원센터 조직도, 업무분장표, 취창업동아리 선정 및 예산표
	9) 2023학년도 진로취업지원팀 부서명 변경 협조문, 조직도, 업무분장표
	10) 취업지도위원회 위원 변경 기안
	11)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기안
	12) 2023학년도 J-CAP시스템 개선(화상상담시스템) 지출결의서, 기안, 운영 계획서, 구축제안서
	13) 잡카페 내부사진, 잡카페 진로·취업도서 비치 및 대여프로그램 기안
	14) 2023학년도 취업지도사 보수교육 협조문, 결과보고서
	15) 2023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수료증
	16) G-HOP경기남부 대학연합 창업지원사업 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
	17)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WoW-STARTUP FESTA G-HOP 대학연합 참석 기안
	18) 2023년 청년 장애인 창업공유대학 및 제3회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성과공유회 참석 기안
	19) 2024 LINC 3.0 공유협업산학연 세미나 참석 기안
	20) 취·창업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
	21) 취·창업지원센터 부서성과평가보고서
	22) 2023년도 진로취업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예산집행현황, 2023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하반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23)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취창업동아리) 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
	24)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
	25)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
	26) 취·창업지원 프로그램(굿즈경진대회) 기안, 결과보고서
	27)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취창업캠프) 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
	28) 2023학년도 취·창업 지원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문

29)	2023년 학생 진로 결정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학생 실태조사 협조문, 결과요약보고서
30)	2022학년도 산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협조문
31)	취업률 정보공시
32)	학생생활연구
33)	2023학년도 찾아가는 취업특강 운영 결과보고서
34)	취·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

4.2 현장실습

4.2.1 현장실습 지원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	---

a) 현장실습 지원 관련 규정 확인

- 우리대학은 「학칙 제4장 제15조(학기),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학점인정)」, 「학칙시행규칙 제3장 제13조(현장실습)」,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1조(운영절차)」,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제3조(운영), 제4조(업무)」,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에 근거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1),2),3),4),5)}
- 「학칙 제4장 제15조(학기),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학점인정)」에서 현장실습 실시 근거와 학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운영규정」의 세부적 방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장실습 운영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보험 가입, 현장실습일지 작성, 학점인정,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관리하고 있음

<표 4.2.1-1> 현장실습 관련 규정

관련 규정	조항	내용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조(목적)~제4조(현장실습시기)	-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구분 및 체계화
	제5조(현장실습운영원칙) ~ 제7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현장실습 운영원칙
	제8조(학생) ~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 학생, 실습기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현장실습에 대한 요건
	제11조(운영절차) ~ 제17조(순회지도 및 경비지급)	- 실습학기제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
	제18조(평가 등) ~ 제21조(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현장실습 평가 기준 및 프로세스 -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제22조(학생보호) ~ 제25조(근로계약)	- 학생보호를 위한 규정 - 현장실습 운영기간, 시간 및 계약조건 등
	제26조(국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제29조(기타)	- 현장실습 형태에 따른 세부내용 - 특별상황에 대한 대처

b) 현장실습 지원조직 및 추진체계

- **현장실습 지원조직** :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지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처(단) 산하에 행정전담조직인 현장실습지원센터(센터장 1명, 조교 1명)를 구성하여 주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침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6),7),8)}

<표 4.2.1-2> 현장실습 업무분장

성명	직위	업무분장	비고
김○○	센터장	◇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 총괄 - 운영위원회 및 현장실습학과 간담회 주관 - J-WESS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현장실습 사전교육 운영 및 관리 - 현장실습학과 업무 주관 및 지원 - 현장실습업체 평가회 운영 관리 - 현장실습 품질 평가와 개선 -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연대회 운영 관리 - 역량중심 교육 품질관리 보고서 - 산학 공동운영 프로그램 개발 - 현장실습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 운영 관리 - 만족도 조사 및 종합보고서를 통한 환류 지원	
정○○	조교	◇ 현장실습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 -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 운영 지원 - 현장실습 관련 행사 업무 지원 - 현장실습 행정운영 지원 - 현장실습 학과 대응 지원 - J-WESS 현장실습프로그램 관리 및 행정운영 지원	

- **현장실습 학과별 전담교수제** : 대학 본부의 현장실습 지원 조직 외에 현장실습 시행 학과별 전담교수 23개 학과, 25명(2023학년도)를 선정하여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⁹⁾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4명의 교수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운영, 결과의 성과보고 및 환류에 객관성을 확보함^{10),11)}

〈표 4.2.1-3〉 현장실습 운영위원회(2024.1.11)

구분	성명	직위/소속	직급	
현장실습 운영 위원회	운영위원장	김○○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수
	운영위원	이○○	교수/바이오보건환경과	교수
	운영위원	김○○	교수/식품영양학과	교수
	운영위원	김○○	교수/뷰티케어과	교수
	운영위원	김○○	교수/유아교육과	교수

- 현장실습 관련 행정적 지원 :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규정’ 과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을 통해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과, 교무처, 학생지원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실습기관의 역할을 명시함

〈표 4.2.1-4〉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행정적 지원 역할

담당부서	주요 업무 내용	
현장실습 지원센터	현장실습 시행 총괄	- 현장실습 실행계획 수립 - 관련 규정 제·개정
	현장실습 운영 지원	- 학과에 현장실습 운영 공지 - 실습기관 별 수요조사(실습기간, 대상·전공 및 인원, 자격요건, 실습 내용, 기타 지원사항 등) - 학생 대상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사전교육 -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결과 수렴 - 학생 및 교수, 실습기관 대상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 지원 시스템(J-WESS)운영
	현장실습기관 관리	- 실습기관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선정 -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 실습기관 유지·관리 - 가족회사 제도 활용 - 우수 실습기관 풀(pool) 확보 - 실습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평가회 개최
	현장실습 성과 관리	- 현장실습 성과 분석 -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 - 현장실습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실시
학과	현장실습 실행 관리	- 실습생 참여 신청 - 실습생 접수 관리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현장실습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 - 현장실습 순회지도 -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실태 점검 및 지도 - 교육목표에 적합한 실습기관 발굴 후 센터에 의견 제시 - 실습기관의 건의사항 수용 -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점검 - 학과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작성 - 학과별 현장실습 품질관리보고서 작성 - 우수 현장실습 사례 발굴 - 실습기관 대상 학과 평가회 실시
교무처	교육과정 및 학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 학점 부여 및 학점 관리
학생지원처	장학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학생 장학금 지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현장실습교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현장실습 운영체계:** 현장실습 교과목의 개설과 수강신청,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교무처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산학협력처의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장학금 수여와 관련하여 학생지원처 산하 학생지원팀의 지원을 받고 있음^{12),13),14)}



[그림 4.2.1-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체계(2023)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매 학년도 부서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개최, 현장실습기관 모집, 현장실습 사전교육, 순회지도 관리 등을 통해 현장실습의 교육품질을 확보하고 있음¹⁷⁾

- **현장실습 구분 운영:** 우리대학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¹⁸⁾
-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활용:**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2021-19호)과 우리대학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반영된 ‘역량중심 현장실습 지원시스템(J-WESS)’으로 현장실습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참여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및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19),20)}
- **현장실습 참여학과 간담회 진행:**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 전 현장실습 학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과를 확정하고 현장실습 참여학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운영 안내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운영계획과 규정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²¹⁾

c)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 체계 구축

- **현장실습 안전지원 관련 규정 준수 :** 우리대학의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2조(학생 보호), 제28조(국가재난 등 상황에 따른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 제10조 (실습생 준수사항), 제11조 (순회지도)」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22),23)}

<표 4.2.1-5> 현장실습 안전지원 체계 관련 규정

관련 규정	조항	내용	비고
감염병 관리규정	제1조(정의)~ 제17조(방역)	-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반 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9조(실습기관)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 학생지도 관리를 위한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제22조(학생보호)	- 안정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현장실습시 각종 재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 관련 규정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방안	
	제28조(국가재난 등 상황에 따른 현장실습)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실습생 안전 및 보호 조치를 위한 규정	
현장실습	제9조(현장실습)	- 감염병, 안전사고,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지원센터 운영지침	운영절차)	강화
	10조(실습생 준수사항)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사전 교육(감염병 예방 수칙, 안전사고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이수 의무
	11조(순회지도)	- 학생의 실습과정의 각종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 **현장실습 순회지도 실시:**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신규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교수의 순회지도를 통하여 현장실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오프라인 순회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도 온라인 순회지도를 통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24),25)}

역량중심 현장실습(학교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1. 현장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다정유치원	순회 지도일자	2023.4.18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168번길 102		
실습 학급	만5세반	지도교사	이지은
기관 연락처	031-234-7004		

2. 실습 학생

학생 정보		평 가 관			
학과	학번	성명	적용능력 (10점)	실습태도 (20점)	계 (30점)
유아교육과	20211106	강재민	10	20	30

3. 순회지도 내용

실습 담당자와의 협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유치원의 운영 및 원아모집 어려움 등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현황 실습생 관리 지도에 대한 안내 보조 졸업생 후원회원 등 본교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실습지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생으로서의 근무태도 및 실습의 중요성에 관한 조인 실습기간 중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안내 	

위와 같이 역량중심 현장실습(학교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지도교수 : 김 수 연 

장안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역량중심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1. 현장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남부어린이집	순회 지도일자	2024.01.21
주소	안전광역시 남동구 오구포로739번길 19 (구월동)		
실습 학급	새솔반	지도교사	한영옥
기관 연락처	032-464-0094		

2. 실습 학생

학생 정보		평 가 관			
학과	학번	성명	수행능력 (10점)	실습태도 (10점)	계 (20점)
사회복지과	20220658	박소현	10	10	20

3. 순회지도 내용

실습담당자 의견 및 협의 사항 학생이 매우 열심히 실습에 임하였고, 학예회를 준비하여 부가적인 일수가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잘 수행해 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음. 앞으로도 장안대학교 학생에 대한 실습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함.	
실습지도 내용 실습을 잘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일지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 일지 작성 방법 위주로 실습 지도를 하였음.	

위와 같이 역량중심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지도교수 : 박민지 

장안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그림 4.2.1-2] 2023년도 현장실습 순회지도(하계/동계)

-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현장실습 시행 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원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부터 동계 현장실습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을 제외한 모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을 완료함^{26),27)}
-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행동요령 교육,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교육, 현장실습 성희롱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 지진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동계 및 하계 현장실습 이전에 실시하고 있음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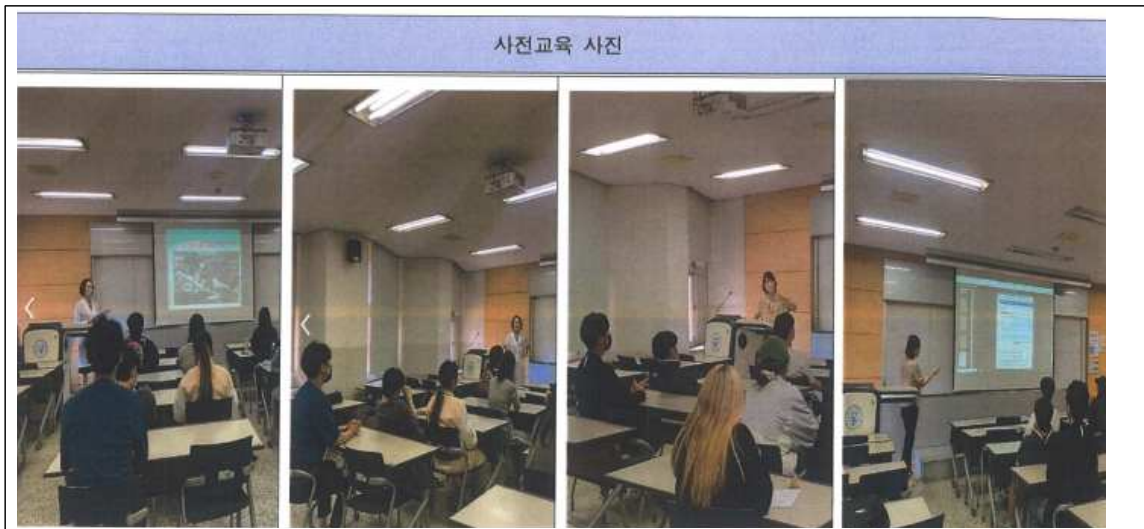
[그림 4.2.1-3] 2023년도 현장실습 사전교육(하계/동계)

- 비대면 사전교육 추가 실시 :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대면 집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음. 2023년도에도 대면 교육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학생에게도 J-Campus에서 비대면으로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그림 4.2.1-4] 2023년도 현장실습 비대면 사전교육

- 전공 맞춤형 사전교육 추가 실시: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사전 교육 외에도 현장실습 시행 학과 특성에 따라 필요시 학과별 사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전공 맞춤형 실습 유의사항 및 안전 지도 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학과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에 이와 관련하여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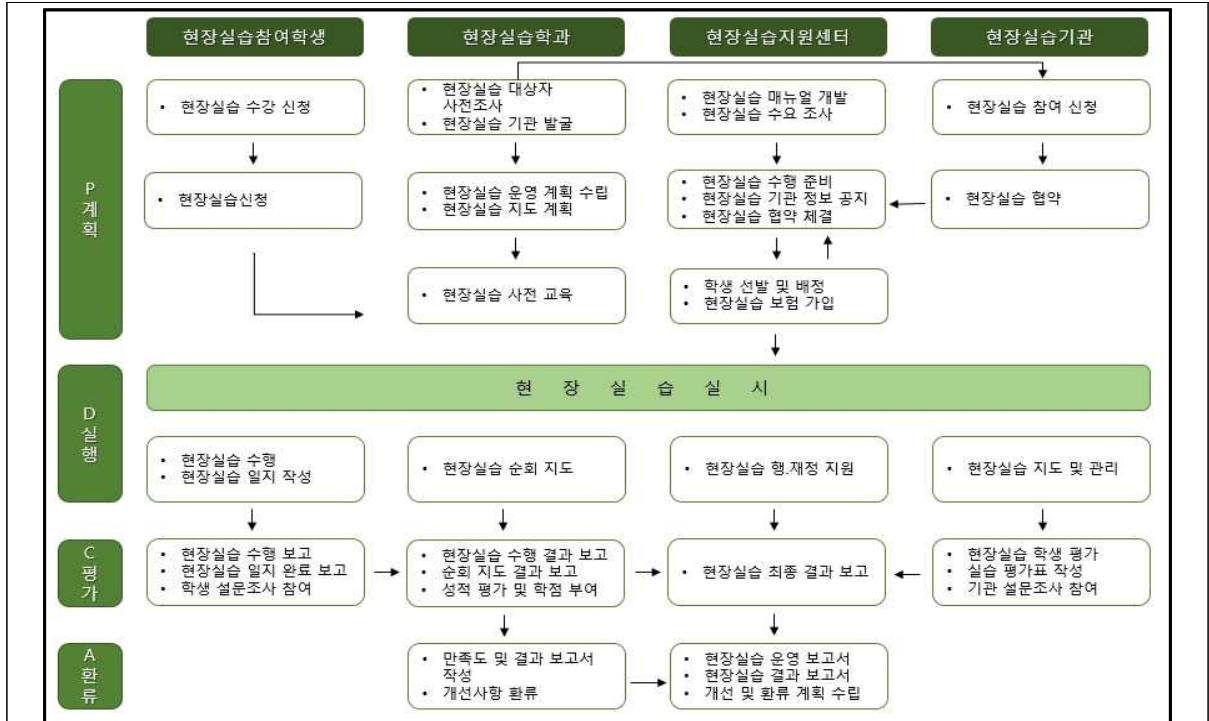
[그림 4.2.1-5] 2023년도 학과별 현장실습 사전교육(예시: 식품영양학과)

2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a)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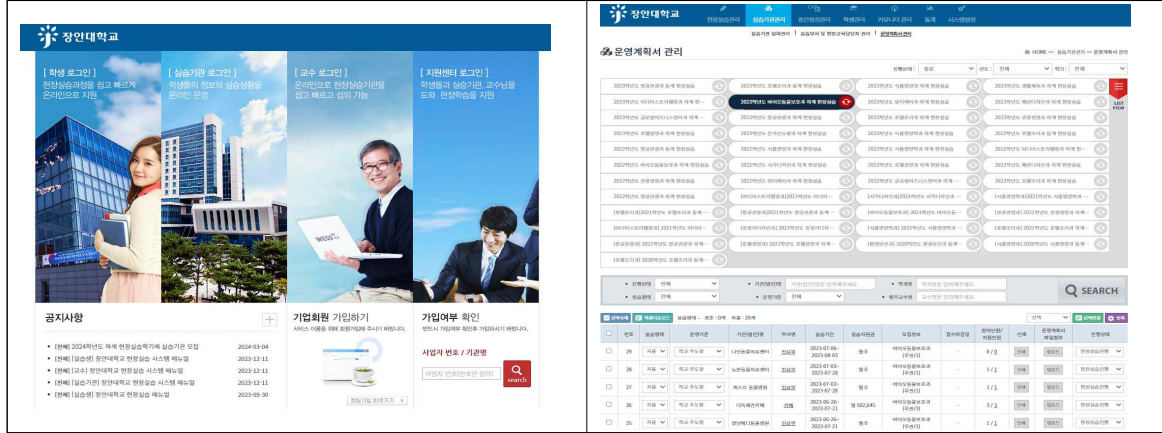
- P-D-C-A 절차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P-D-C-A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의 계획, 운영, 평가 및 환류과정을 관리하고 학과는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와 역량중심 현장실습 교육품질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30),31),32)}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을 지원하며, 현장실습 만족도 및 현장실습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환류함
- 매 학년도 초에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교육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에 의거 환류사항으로 현장실습 학과평가회와 품질평가와 개선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장실습 시행 결과에 따른 환류사항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33),34)}



[그림 4.2.1-6] 현장실습 질 제고 관리를 위한 체계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장실습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운영 결과 평가,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¹¹⁾
- **현장실습 수요조사 실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을 제외하고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 전 현장실습 관련학과 수요 조사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규모를 파악하고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함³⁵⁾
- **학과간담회 개최:** 현장실습 관련학과 수요조사 결과 확정된 현장실습 참여 학과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학과의 의견과 문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²¹⁾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으로 학점부여:** 현장실습 시행 전 현장실습 참여 학과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실습기간, 실습기관에 대한 내용 및 학과별 사전교육과 순회지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 현장실습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준수함³⁶⁾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구축:**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2020학년도 동

계 현장실습부터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해 왔으며 현장실습 시행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그림 4.2.1-7] 현장실습 지원시스템(J-WESS)

- **학과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 동계 현장실습부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실습을 시행하였으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³¹⁾
- **현장실습 관련 재정적 지원:**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현장실습교육 운영비 지원,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현장실습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투입함¹⁷⁾

<표 4.2.1-6> 2023학년도 현장실습교육 재정지원 현황

구분	세부 활동	예산(천원)
		2023
현장실습 교육 체계적 운영 지원	- 학과 간담회 - 실습기관 방문 및 순회지도 지원 -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현장실습생 대상 실습지원비 지급, 명찰 제작, 보험비, 현장실습 일지 인쇄비, 현장실습 기관 선물 구입	40,500,000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	- 현장실습 품질 평가와 개선 연구 - 산학 현장실습 공동운영 프로그램 - 현장실습 종합 성과평가 (현장실습기관 평가회, 학과 평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집 발간)	83,500,000
현장실습 질제고	- 현장실습 사전교육 지원(하계 및 동계) - 중도포기자를 위한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	3,100,000

프로그램 운영	- 교육품질관리 및 개선보고서	
계		51,950,000

- 현장실습 실적^{18),47)}

- 2023학년도 하계: 신청학생 319명, 이수학생 294명 / 표준현장실습학기제(6개 학과 29명), 자율현장실습학기제(4개 학과 12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4개 학과 249명, 사회복지과 복학생 2명), 실습기관 182업체
- 2023학년도 동계: 신청학생 33명, 이수학생 30명 / 표준현장실습학기제(2개 학과 12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1개 학과 18명), 실습기관 21업체

<표 4.2.1-7> 2023학년도 현장실습 운영 실적

구 분		주 요 내 용	운 영 실 적	2023년도 운영실적
Plan	수요조사 및 실습업체선정	- 전공 맞춤 현장실습 가능 업체 수요조사 및 실습업체 발굴 - 현장실습업체 선정기준(8개 항목)에 따라 적정성 검토	- 실습업체 선정(개)	하계 182업체 동계 30업체
	연간세부 운영계획 수립	- 교과목, 학점, 필요역량, 능력단위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 -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실습 운영횟수 및 시기, 현장실습 전 이수과목 확인, 특강 실시	- 학과별 전공 특성(일반, 교직, 자격 등)을 고려한 현장실습 세부 운영계획 수립	7개 학과
Do	오리엔테이션	- 매뉴얼 배포 : 학생, 학과, 기관용 매뉴얼 배부 - 사전교육: 실습기관 요구 직무내용 교육 및 학과별 직무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 사전 교육	- 학과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운영	14개 학과
	현장실습 실시	- (학생) 전공 연계 산업체에서 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관리 - (교수) 지도교수별 산업체 현장 순회지도, 학생 실습	- 현장실습 이수자(명) - 엄격한 실습관리를 통한 현장실습 교육의 질 제고	현장실습 이수인원 324명

구 분		주 요 내 용	운 영 실 적	2023년도 운영실적
		지도 및 산업체 실무자와 교육과정 공유		
Check	현장실습 결과보고	- 현장실습 목표, 운영현황, 평가결과 등의 총괄적 결 과보고서 작성	- 학과별 현장실습 총괄 결과보고	14개 학과
	순회지도 결과보고	- 지도 교수별 산업체 현장 순회 후 평가, 개선을 위한 순회지도 결과 보고, 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 보 고서 작성	- 지도교수 순회지도 결과보고	
	학생평가 및 학점부여	- 출석 30%, 실습일지 및 순 회지도 평가 30%, 현장실 습평가 40%를 기준으로 P/F 학점 부여	- (지도교수) 성적 산출 - (학과장) 성적확인 및 입력	
	교육 만족도 조사	- 과정 종료 후 실시	- 학생, 산업체, 지도교수 만족도 조사	각 1회
Act	개선과제 선정 및 추진	-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과 제 및 개선방안 도출	- 환류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차년도 발전계 획 수립	실시
	부서발전 계획연계	- 개선사항 차년도 부서발전 계획서 연계 추진		

b)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 실적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현장실습 목표, 기대효과, 만족도 조사 분석, 환류 계획 등을 통해 학과별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량중심 교육품질 관리보고서에서는 NCS 기반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획, 직무능력 수행 평가,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학과별 현장실습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³²⁾
- **학과 평가회 실시:**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운영학과 전임교수 주관 학과 평가회를 실시하여 학과별로 현장실습 운영 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하여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³³⁾
- **만족도 조사 실시:** 모든 현장실습에 대하여 현장실습 참여학생, 현장실습 운영학과 지도교수, 현장실습 참여기관으로 나누어 주체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³⁷⁾
- **현장실습 기관평가회 개최:** 매 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기관평가회를 개최하여 실습기관 중 우수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우수실습기관 감사장’을 수여하고


실습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실습의 지속적 품질개선을 하고 있음³⁸⁾



[그림 4.2.1-8] 2023년도 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회

- **각종 결과보고서 작성:** 우리 대학은 취업연계 현장중심 산학프로그램, 현장실습 사전 교육, 교육품질 제고프로그램 등 모든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 및 환류 결과를 도출하고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지속적 질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13),28),42)}
- **현장실습의 개선과 환류 노력:**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취업연계 현장중심 산학 프로그램,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집 발간, 현장실습 학과평가회, 현장실습 품질평가와 개선 연구, 현장실습 기관 평가회, 산학 현장실습 공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음^{13),15),16),33),34),38),39)}

(With in 24)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CLO의 3D 가상 의류 등을 상용화하고 있음



디지털 복복 (의류 선택) → 3D 가상피팅 (가상 fitting) → 3D 디자인캐스 탈 (의류 변형) → 3D바디스 캐너 (3D 신체측정) → 가상의상 그레이딩 (패턴 변형 등)

자료: 「신유패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 산업통상자원부(2020.11.11.)
 <그림 3> 개인 맞춤형 의류 제조 판매 매장(WITHIN 24) 운영 개요


③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 정부 주도 디지털 소재 특성 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한 패션 시장 통계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④ 유통채널 변화


-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의류패션 E-Commerce 시장규모는 '19년 5,251억 달러에서 연평균 8.6% 성장하여 25년에는 1조 3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코로나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의류패션 온라인판매가 증가 추세임

<세계 의류패션 E-commerce 시장전망>



자료: Statista

<국내 의류 온라인쇼핑 판매>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그림 4> 패션유통 채널의 변화

4) 현장실습 직무능력 성취도 측정 방법

- ①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는 역량중심 기반 전공교육과정과 직업기초능력교육과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과목 구성되어 있음.
- 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하게 되는 직무능력들을 바탕으로 직무능력성취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
- ③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를 할때는 평가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직무수행 수준을 파악하며, 향후 학습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이는 선순환의 교수학습과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④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는 학교에서 선정한 직무에 따라 역량중심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발·편성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들의 직업기초능력 교과목과 역량중심 능력단위와 적유가 매핑된 전공교과목의 성취수준을 의미함.
- ⑤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 영역은 직업기초능력 전공 직무능력으로 구분함. 직업기초능력의 평가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평가점수를 의미함. 전공직무능력은 역량중심 적을 전공교과목의 직무수행능력평가점수를 의미함.
- ⑥ 평가절차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과 역량중심 적을 전공교과목에 대해 평가절차의 수립, 평가 실시, 평가점수의 취합 및 분석, 평가결과와 공평과 교육활용관리보고서에 반영 및 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함.
- ⑦ 직무능력은 학생별로 관리하여, 직무능력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과목 이수 학기 중 향상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가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함.

5) 현장실습 직무능력 성취도 측정 방법

- ①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 직업기초능력의 성취도 평가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된 2개의 직업기초능력인 의사소통능력과 정보능력에 대해서 산출함.
- ②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 전공직무능력의 성취도 평가는 전체 교과목 중 역량중심 적을 전공교과목에 대해서 산출하며, 역량중심 적을 전공교과목은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에서 제시된 직무모형 및 교육과정 로드맵에 근거하여 산출
- ③ 교과목별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는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시함. 학생 개인별 평가는 담당교수가 실시 하며, 학기 종료 전 해당 교과목 평가계획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평가함.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의 현장실습 직무능력성취도 측정과정

[그림 4.2.1-9] 2023년도 산학현장실습 공동프로그램 (패션디자인과/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

- 23학년도 현장실습 품질평가와 개선연구: 당해 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품질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 방향성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에는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당해 년도 현장실습 운영 평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음³⁴⁾
- 행정과 재정적 지원: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역량중심 현장실습 지원시스템(J-WESS) 유지·보수, 학과 간담회, 순회지도 지원, 현장실습생 지원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음^{19),21),25),41)}
- 현장실습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위한 노력: 현장실습 질 제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장실습 사전교육 사업, 역량중심 현장실습 교육품질 관리보고서,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 등의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28),32),42)}
- 현장실습 관련 예산 확보: 현장실습 관련 예산은 크게 체계적 운영 지원,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 체계 구축, 현장실습 질제고 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음⁴⁵⁾
- 관련 부서 및 학과의 협업 노력: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현장실습 시행학과의 협업 관리를 통한 현장실습의 품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학과별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질 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화를 추구함^{46),48)}

-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 노력:** 현장실습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실현하는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음. 또한 수상자들의 수기와 현장실습 2개 기관 소개글을 모아 현장실습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교내뿐 아니라 현장실습기관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14),15),16)}



[그림 4.2.1-10] 2023년도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 **취업연계 노력:**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시행 학과 대상 현장실습-취업연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현장실습-취업연계 성과 관리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⁴³⁾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할 신규 기관 모집 및 발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방안 공유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개선사업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3년도 하계 및 동계 6개 학과 이수학생 44명의 실적이 나타남⁴⁴⁾
- **현장실습 독려를 위한 실습지원비 제공:** 현장실습 참여 확대와 독려,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에서 필요한 명찰을 제공

<p>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이수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실습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음(본 실습비는 대학공시자료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음). 실습지원비는 1인당 7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음^{40),41)}</p> <p>- 현장실습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 실시: 현장실습 중도포기 학생 대상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졸업 후 직장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등 현장실습 종료 후의 사후 교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실습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⁴²⁾</p> <p>-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J-WESS)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 학년도 2,400,000원을 집행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음¹⁹⁾</p>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규정과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운영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교육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4.2.1	1) 「학칙(개정 2024.02.29)」 제4장 제15조(학기),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학점인정)
	2) 「학칙 시행규칙(개정 2023.06.21)」 제3장 제13조(현장실습)
	3) 「현장실습 운영규정(제정 1999.3.1., 전부개정 2022.5.13.)」, 제11조(운영절차)
	4)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16.4.1., 개정 2024.3.8.)」, 제1장 제3조(운영), 제4조(업무)
	5)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제정 2019.1.7., 전부개정 2022.6.5.)」,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
	6) 「직제규정(개정 2024.03.08.)」, 제2장 제3조, 3. 부속기관
	7) 「사무관리규정(개정 2024.02.29.)」, 제5절 제10조(산학협력처)
	8) 현장실습지원센터 조직도
	9) 학과별 현장실습 전담교수 선정 명단 (2023)
	10)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2023)
	1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23)
	12) 현장실습 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협조문 (2023)
	13) 취업연계 현장중심 산학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14)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장학금 지출결의서 (2023)
	15)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원본 (2023)
	16)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집 발간 결과보고서 (2023)
	17)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 (2023)
	18)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2023)
	19)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지출결의서 (2023)
	20)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 매뉴얼 PDF 파일 배포 협조문 (2023)
	21)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결과보고 (2023)
	22)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 1999.3.1., 전부개정 2022.5.13.)」, 제22조 (학생 보호), 제28조(국가재난 등 상황에 따른 현장실습)
	23)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제정 2019.1.7., 전부개정 2022.6.5.)」,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 제10조 (실습생 준수사항), 제11조 (순회지도)
	24) 현장실습 신규실습기관 서면점검서 (2023)
	25) 현장실습 순회지도 지출결의서(중간점검 보고서) (2023)
	26) 학과별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지출결의서 (2023)
	27) 현장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증빙 (2023)

28)	현장실습 사전교육 결과보고 (2023)
29)	학과별 현장실습 사전교육 증빙자료 (2023)
30)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운영 P-D-C-A 체계표
31)	현장실습 학과별 결과보고서 (2023)
32)	역량중심 현장실습 교육품질 관리보고서 (2023)
33)	현장실습 학과 평가회 결과보고 (2023)
34)	현장실습 품질평가와 개선연구 보고서 (2023)
35)	현장실습 학과별 수요조사 결과표 (2023)
36)	학과별 현장실습 시행 기안, 현장실습계획서 (2023)
37)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자료 (2023)
38)	현장실습 기관평가회 결과보고 (2023)
39)	산학 현장실습 공동운영 프로그램 결과보고 (2023)
40)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지출결의서 (2023)
41)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시행기안 (2023)
42)	현장실습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 결과보고 (2023)
43)	현장실습 성과보고를 위한 취업 현황 조사 협조문 (2023)
44)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결과 (2023)
45)	현장실습 관련 예산 내역 (2023)
46)	현장실습 질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표
47)	현장실습 참여학생 및 교류업체 현황 리스트 (2023)
48)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 성과평가보고서 (2023)

4.3 평생교육체제

4.3.1 평생교육 지원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p>a)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평생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규정’¹⁾,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²⁾,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규정’³⁾에 의거 평생교육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규정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평생교육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사회 주민과 우리대학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p>b) 평생교육원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평생교육원을 원장 1명, 직원 2명, 조교 3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원장은 대외협력업무 및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일반과정, 학점은행제, 관학사업 등 담당별로 교직원을 두어 해당 업무 분장을 맡고 있음⁴⁾ - 평생직업교육 전문성 극대화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학점은행제 및 중·고등 진로교육사업 담당/ 일반강좌 및 자격증 강좌/ 홍보기획 및 시설 유지 보수/ 수강생 상담 및 등록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 - 전담 사업별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표(2023. 5. 19.)를 근거로 전담직원 및 업무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서 지원 조직원으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 평생교육과정 운영 및 상담에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⁵⁾ -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에 의거 각 분야 전문가 5인~7인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 평생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의결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일련의 과정을 검토함²⁷⁾ 		

c)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 봉사 협력 내용

- DJ특 화성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에 참여하여 지역 중학생 진로체험 재능기부를 실시함⁶⁾

1) 2023년-1학기 실적: 6개학과 교수 8명이 총 17회 진행하여 527명에게 진로체험 재능기부를 실시함

2) 2023년-2학기 실적: 5개학과 교수 6명이 총 11회 진행하여 340명에게 진로체험 재능기부를 실시함

- 2023년 학교자율과제 연계 나루고등학교 진로체험 운영으로 재능기부 실시함⁷⁾

1) 2023년-1학기 실적: 9개 학과 163명이 게임산업, 미디어콘텐츠 제작, 동물보건사, 직업군인 등의 진로체험 실시

-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진로체험지원단으로 활동 협력함⁸⁾

- 화성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및 활동 계획 구축에 협력하고 있음⁹⁾

-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용기관 등록 및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10),11)}

- 수강생의 강좌 사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통로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1) 2023년: 색소폰, 경매투자과정 배너 및 현수막 지원, 사진예술아카데미 수료증 발급¹²⁾

- 일반강좌 수강생의 90% 이상이 지역 거주자로 골프연습 교육장과 테니스 교육장, 댄스 스포츠, 한국무용, 기구 필라테스, 색소폰 연주자과정, 사진예술아카데미, 시니어모델, JEC일본어, JEC영어 강좌를 운영하여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기개발과 건강증진 문화체육활동에 기여하고 있음^{13),14)}

- 경매투자, 동물매개 활동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직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¹³⁾

- 2024학년도에는 명리학, CEO(창업경영), 퍼스널이미지 등 일반과정과 전산회계, 긍정심리상담코칭 2급, 응급처치사,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자격증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모집 계획¹⁵⁾

- 시설 활용 협력 내용

- 청소년진로교육사업(초등학생 체험형 인생교육, DJ특 화성자유학년제 현장 직업체험, 학교자율과제 연계 나루고등학교 진로체험) 과정을 진행하면서 강의실, 도서관, 학부모 대기실, 휴게실, 잡카페 등 무료 개방(2023년 지역 초, 중, 고 21개교, 총 2,153명에

	<p>게 시설 개방)¹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지역주민 대상 교육 사업(4060화성인생학교,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2개 과정을 진행하면서 주차장 무료이용, 학술정보관, 강의실, 상담실 등 무료 개방(2023년 5개 프로그램 총 60명에게 시설 개방)¹⁷⁾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화성지부 리더쉽 강좌 강의실 대관 (2022.6 ~ 2024.6.) 주차장 무료이용, 학술정보관, 강의실, 상담실 등 무료 개방¹⁸⁾ · 지역주민 수강생이 자유롭게 골프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수업시간 외 및 휴일 골프 연습장 무료 개방 <p>- 교육 협력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지자체가 공모하는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사업(4060화성인생학교, 장애유형별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대상 인성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p>1) 4060 화성인생학교 위탁사업 3개 운영, 151시간, 29명 이수함¹⁹⁾</p> <p>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사업 2개 운영, 54시간, 20명 이수함²⁰⁾</p> <p>3)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 지원사업 1개 운영, 100시간, 1,123명 이수함²¹⁾</p>	
--	--	--

2	대학은 평생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	----------

	<p>a)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2년 평생교육원 중장기 발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원 중장기 발전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함²²⁾ - 대학 중장기 발전 전략과제와 평생교육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평생교육원 부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²³⁾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²⁾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평생직업교육 특성화에 적합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²⁴⁾는 부서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²⁵⁾ 차년도 강좌 개발 및 시설개선으로 환류함 - 평생교육원 운영 과정의 PDCA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설문조사 양식을 개편하여 신규강좌 수요 조사지 양식을 개발함. 수요조사 실시대상자 DB(기존 10년간 일반강좌 및 학점은행제 강좌 수강 이수자 1,000여명)를 생성하여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수요조사 결과는 취합하여 수요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로 남김²⁶⁾ -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에 의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인~7인 	
--	--	--

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함.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부서 발전 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사업 계획과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학습 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임²⁷⁾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특성화 강좌를 개발 및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함
 - 2023학년도: 봄학기 11개 강좌 377명, 가을학기 8개 강좌 316명 운영^{13),28)}
- 프로그램의 홍보 및 모집은 ‘학기별 수강생 모집 계획’을 통해 지역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함. SNS 홍보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²⁹⁾

b)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환류는 프로그램별 목표에 대한 만족도 조사²⁴⁾를 통해 성과평가²⁵⁾를 실시하며,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에 의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논의한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교육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²⁷⁾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 학기 프로그램 종료 시 수강생들에게 수강한 강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음. 2022년 가을학기부터 만족도 조사 항목을 개선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내용은 강의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행정실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봄, 2023년도에 봄학기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11% 향상됨²⁴⁾
 - 1) 2022학년도: 봄학기 만족도 67%, 가을학기 84%
 - 2) 2023학년도: 봄학기 만족도 78%
 -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전공분야 전임 교수진을 통해서도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테니스 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개발(설계) 및 모집 계획,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개선의 운영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됨²⁸⁾
-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실적
 -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골프연습장의 낙후된 시설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 보수를 진행함(예초 및 잡목 정리, 리프트기 부품 구매 및 교체, 병커사 보충 작업, 울타리 설치, 골프망 보수 및 강풍 피해 복구, CCTV녹화기 부품 교체, 와이어지선 및 망 보수, 타석거울, 홀컵깃대, 제조제 등 구매)³⁰⁾
 - 골프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강생이 많은 과밀반 수강생들의 연습 시간 부족에 대

<p>한 불만이 제기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강좌 중 평일 오후(14:30~16:30) 화목토 골프과정 1개 반을 폐강하고, 해당 수업 시간대를 자유연습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³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 수요조사 결과 반영을 위해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을 추진함(2023학년도 경매투자, 친환경패션과창업, 시니어모델, 창업경영, 조향사취득 과정)³²⁾ ·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비학위 자격증 과정을 개발하여 전문대학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2024학년도에 자격증 과정 추가 개설을 계획함(전산회계, 긍정심리상담코칭 2급, 응급처치사,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자격증 과정)¹⁵⁾ · 2023년도 운영한 DJ특 화성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함. 만족도 조사 결과 사전수업, 전체, 내용, 시간, 체험처, 강사 만족도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평균 4.1)³³⁾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증 소지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음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이 있으며, 운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좌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4.3.1	1)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제정 1998.3.2. 개정 2018.3.1.), 제2장(조직), 제2장의 제4조(교직원), 제2장의 제5조 2(전문위원), 제3장 (운영위원회)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제정 2011.7.1. 개정 2015.9.1.), 제2조(목표), 제4조(과목선정기준), 제6조(주요내용), 제7조(개발방법)
	3)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규정(제정 2015.1.1. 개정 2022.1.1.), 제1조(목적), 제2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상황),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
	4) 평생교육원 업무분장표 및 조직도
	5) 평생교육사 자격증(김0숙)
	6) DJ특 현장직업체험 사업운영 결과 보고(2023학년도)
	7) 나루고등학교 진로체험 운영 결과 보고
	8) 진로체험지원단 선정
	9) 화성시평생교육협의회 관련 문서
	10)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용등록
	11)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현행화 협조 요청 회신
	12) 수강생 강좌 사후 활동 지원관련 문서
	13) 2023학년도 평생교육원 수강 현황 관련 문서
	14) 교육장소 개방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5) 2024학년도 봄학기 평생교육원 확정 강좌 현황 보고
	16) 2023학년도 현장직업체험 DJ특 강의실 사용 협조 요청
	17) 2023년 4060 화성인생학교 강의실 사용 협조 요청
	18) 교육 시설 사용 계약(2022학년도, 2023학년도)
	19) 2023년 4060 화성인생학교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20)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21) 2023년도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 실적보고서
	22) 평생교육원 중장기발전계획서
	23) 2023학년도 평생교육원 부서발전계획서
	24)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25) 2023학년도 부서 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요청 회신
	26) 2023년도 장안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27)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28)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관련 문서
	29)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관련 문서
	30) 2023학년도 평생교육원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 내역
	31) 2023년도 가을학기 골프연습장 시간표
	32) 2023가을학기 평생교육원 확정강좌 현황보고
	33) 2023학년도 DJ특 현장직업체험 만족도 조사 결과

5. 학생

5.1 학생복지

5.1.1 학생복지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학생복지 지원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
<p>a) 학생복지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생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정된 대학 생활 및 학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장학금지급규정,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복지위원회규정, 건강관리실 운영지침 및 생활관 운영지침 등을 기반으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 및 장학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1),2),3),4),5),6),7)} ·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주기적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우리 대학의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우수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¹⁾ · 장학금지급규정: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규정함.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구성,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²⁾ ·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술연구조사 및 대학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학술정보관의 조직과 자료의 구입, 보관, 열람, 관외대출, 자료복사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⁴⁾ · 건강관리실 운영지침: 본 대학 학생 및 교육생,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실 업무, 조직, 재정, 이용시간을 규정함⁶⁾ · 생활관 운영지침: 학생들에게 생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 생활수칙 및 징계관련 사항, 이용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⁷⁾ - 우리 대학의 학생 복지정책은 학생지원처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복지에 관한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시설 지원, 편의시설 지원, 건강의료시설 지원, 일반학생 행사지원, 총학생회 행사지원, 언론행사 지원, 통학 지원, 장애학생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정책별 담당 부서는 아래와 같음 		

- 복지시설 지원: 총무팀, 학술정보관, 정보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관리팀, 학생지원팀, 진로취업지원팀, 평생교육원
 - 편의시설 지원: 학생지원팀, 총무팀, 재무팀
 - 건강의료시설 지원: 건강관리실, 총무팀
 - 일반학생 행사지원: 학생지원팀, 교무팀
 - 총학생회 행사지원: 학생지원팀
 - 언론행사 지원: 학생지원팀
 - 통학(스쿨버스) 지원: 학생지원팀, 총무팀
 - 장애학생 지원: 학생지원팀, 관리팀
- 학생지원팀에서 2023. 5. 1.기준으로 학생활동 지원, 민원업무, 장학금 등의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주임 1명, 직원 2명, 조교 2명이 분장하여 운영함⁸⁾
 - 학생지원처에서 학생지원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등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복지 제도(학생지원시설, 학교 경영배상책임보험, 장학, 생활관 지원 등)를 갖추고 있음⁹⁾
- b)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 수렴 및 복지지원 계획 수립
- 복지관련 학생의견 수렴현황 및 학생의견 수렴실적으로는 학생생활연구보고, 수리요구서철, 학생서비스 Q&A민원, 학생식당 및 생활관 만족도조사 등이 있음^{10),11),12),13),14)}
 -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복지정책의 시행 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함¹⁵⁾
 - 만족도 조사(재학생,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학생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서비스 계획 및 개선에 활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16),17),18),19)}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서비스 Q&A게시판을 통해 학생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확인 후 즉각 대응¹²⁾
 - 2023학년도 만족도 조사(학생생활연구보고서) 실시: 1학년(대학에 기대하는 부분 중 교육시설/복지 17%,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31%, 요구 심리 검사-진로검사 29%), 2학년(대학 추천이유 중 서비스/복지 7%, 장학제도 4%,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52%, 요구 심리 검사-진로검사 60%)¹⁰⁾
 - 학생의견 수렴 결과는 차년도 ‘부서발전 계획서’에 반영하여 실천 가능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있음²⁰⁾

- 학과위원회, 과대표 등을 통하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상시로 청취하여 적극 반영 및 조치하고 있음
 - 2023학년도에 학과위원회 간담회에서 학과위원회 임원 재선출과 윗말축제 진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 학생자치회 주관의 축제를 진행하였음. 풍성한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통해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진행하였음^{22),23)}
 - 2023학년도 2학기에 학생자치회 간담회를 시행하였으며 학과 시설물 고장, 학생식당 불만사항, 동아리방 및 학과 학생회실 지원 등의 여러 요청 사항을 받아 관련 부서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학생자치회를 통한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을 위한 계획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수용한 의견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 중임^{24),25)}

c) 학생복지 지원 실적

- 학생복지 지원금 현황

추진사업명	집행금액(원)	
	2022학년도	2023년도
통학버스 운행	523,015,000	319,486,000
통학버스 예매솔루션	10,161,000	4,320,000
건강관리실 운영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등)	4,597,850	2,993,300

- 학생자치회 지원^{25),26)}

학생자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윗말축제 진행, 교무팀, 관리팀, 학생식당 등에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각 부서에 개선 협조를 요청함

- 교내외 장학금 지원 현황²⁷⁾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인원(명)	금액(원)	인원(명)	금액(원)
교내	5,365	3,108,373,678	2,816	2,630,922,786
교외	6,206	8,317,378,382	2,842	3,809,877,214
합계	11,571	11,425,752,060	5,658	6,440,800,000

- 복지정책을 위한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편의점, 서점, cafe, 스타

디카페, 영화관람실, 인터넷라운지, 학생상담센터, 식당, 기숙사, 비전홀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휴대폰 충전기, 자동증명발급기, 현금인출자동지급기가 있고 건강·의료 시설로는 건강관리실과 스포츠센터를 구비하고 있음

- 학생식당 및 생활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환류하고자 개선에 대한 계획안을 학생식당 및 생활관 위탁운영 업체에 요청하였고, 계획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완료된 개선 내용은 결과 보고를 통해 제출받고 지속적으로 개선 상태를 확인하여 동일한 건의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13),14),28),29),30)}
- 소수집단(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성공적 대학생활을 위하여 현실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을 위한 교내 장학금 지급 현황⁹⁷⁾

구분	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2학기	
	인원(명)	금액(원)	인원(명)	금액(원)
외국인 장학금	15	7,500,000	17	8,500,000
곰두리 장학금	5	4,000,000	7	4,877,000
다문화가정 장학금	8	4,000,000	6	3,000,000
합 계	28	15,500,000	30	16,377,000

- 소수집단(장애학생, 교환학생, 외국인학생)이 생활관 입사를 원할 경우 우선으로 선발함
 - 생활관 운영지침 3. 입주신청 2) 교환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학교 담당부서에서 선발 3) 장애우학생 및 도우미학생 : 사감실에서 직접신청(도우미학생은 장애우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간단한 도움을 주는 학생이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발함)
- 대학은 장애학생이 원활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여 원활한 학습을 지원함





2	대학은 보건실 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
<p>a) 보건실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응급상황 대비 및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관리실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며, 업무, 자격, 이용 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음^{6),31)} -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 내에는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환자 투약 및 처치,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 교내 사고환자 보험처리, 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3),32)} <p>b) 유(有)자격 인력 배치 및 보건실 운영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실 운영을 준수하기 위하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음³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실 담당자(이O숙)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환자 관리, 투약 및 처치,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³⁴⁾ ·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음³⁵⁾ · 건강관리실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약품수불 및 방문자 내역을 관리하여 결과 보고를 실시하고 있음^{36),37),38)} ·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헌혈캠페인, 결핵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39),40)}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구성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TFT 구성 및 예 		

<p>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⁴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대응전략 및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방역관리에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대응 매뉴얼 구축, 방역물품 확보 및 비치, 감염예방 교육 및 홍보 등)하고 있음^{41),42),43)} 		
3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정량(모니터링): 장학금 지급 비율</p> <p>a) 충족 : 10.0% 이상</p> <p>※ 정량지표 양식)5.1.1 학생복지 - 장학금 지급 비율을 활용하여 작성</p>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생복지관련 규정을 갖추고 학생지원에 있어 경험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매년 학생지원에 대한 계획을 갖추어 실행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서비스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음 ▪ 우리대학 보건실은 간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3학년도 우리대학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18.3% 로 충족 기준인 10.0% 이상을 초과하기에 충족함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5.1.1	1)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제정 2011. 7. 1., 개정 2020. 3. 23.)
	2) 장학금지급규정(제정 1980. 3. 6., 개정 2020. 1. 22.)
	3)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제정 2011. 7. 1., 개정 2021. 1. 4.)
	4)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제정 1979. 6. 1., 개정 2022. 2. 17.)
	5) 복지위원회규정(제정 2011. 5. 1., 개정 2015. 9. 1.)
	6) 건강관리실 운영지침
	7) 생활관 운영지침
	8) 학생지원팀 업무분장(2022, 2023학년도)
	9) 학교경영배상책임보험(2022, 2023학년도)
	10) 학생생활연구 보고 일부(2022, 2023학년도)
	11) 수리요구서철
	12) 학생서비스Q&A민원(2022, 2023학년도)
	13) 2023학년도 1학기 생활관 및 학생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14) 2023학년도 2학기 생활관 및 학생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15) 학생서비스 개선 실적철(2022, 2023학년도)
	16)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설문분석비 지급(2022, 2023학년도)
	17) 재학생 만족도 분석 보고서(2022, 2023학년도)
	18)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설문분석비 지급(2022, 2023학년도)
	19) 졸업생 만족도 분석 보고서(2022, 2023학년도)
	20) 부서발전계획서(2022, 2023학년도)
	21) 2022학년도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_20220915
	22) 2023학년도 학과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고
	23) 2023학년도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_20231023
	24) 2023학년도 2학기 학과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고
	25)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자치회 간담회」 개선사항 관련 협조 요청
	26) 윗말축제 시행(2022, 2023학년도)
	27) 교내 장학금 지급현황(2022, 2023학년도)
	28) 「2023학년도 1학기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학생 의견 반영 방법과 개선 조치에 대한 계획안 제출 협조 요청
	29) 학생식당 계획안
	30) 생활관 계획안
	31) 직원인사규정 일부(제정 1999. 3. 1., 개정 2018. 7. 1.)
	32) 학생생활안전관리규정(제정 2016. 7. 1., 개정 2020. 3. 23.)
	33) 건강관리실 담당자 자격증명(2022, 2023학년도)

34)	건강관리실 업무분장표
35)	장안대학교 응급처치 매뉴얼
36)	건강관리실 연간 계획표(2022, 2023학년도)
37)	건강관리실 약품수불대장(2022, 2023학년도)
38)	건강관리실 보건일지 현황(2022, 2023학년도)
39)	사회봉사 헌혈 캠페인(2022, 2023학년도)
40)	대학생 결핵 검진 결과 보고(2022, 2023학년도)
41)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서(2022, 2023학년도)
4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자료(2022, 2023학년도)
43)	코로나 감염 예방 홍보 자료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p>a)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 총 5건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및 제도보완 중 - 우리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달성,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학생복지, 건강 증진, 장학제도 및 학생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 준수하여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활동규정: 총칙, 학생총회, 총학생회, 학과위원회, 재정, 졸업준비위원회 등¹⁾ · 동아리 운영규정: 목적, 정의 자격 및 구성, 등록요건, 등록절차 및 승인, 구비서류, 임원선출, 지도교수의 권리와 의무, 재정, 등록취소 등²⁾ · 교육방송국 운영규정: 목적, 적용, 방침, 소재, 기구, 임원, 정기회의, 방송운영위원회 등³⁾ · 학보사 운영규정: 총칙, 임원 및 조직, 운영위원회, 편집회의, 징계 및 포상, 회계 등⁴⁾ <p>b) 학생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 학과위원회, 교육방송국, 학보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 학보사 운영위원회, 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 후 7개 집행부 부서의 부장을 총학생회장의 임면으로 구성하며, 학보사 운영위원회, 방송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을 포함한 부처장급 이상의 보직교수로 구성되고, 학생지도위원회는 대학의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됨^{1),3),4),5),6),7)} ·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조직 및 편제,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학생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학보사운영위원회는 학보사 운영에 관한 내용, 방송운영위원회는 방송국운영, 예산·결산 등 방송국 활동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음^{3),4),5),6),7)} 		

- 학생지원처는 학생지원팀, 진로취업지원팀, 건강관리실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부속 기관인 학생상담센터, 인권·성평등센터와 연계하여 학생활동 지원조직을 운영함⁸⁾
- 학생지원팀에서 2023. 5. 1.기준으로 학생자치회 지원, 학생지도위원회 관리 등의 학생활동 지원 관련 업무를 주임 1명, 직원 1명, 조교 2명이 분장하여 운영함^{5.1.1-8)}
- 학생자치활동 담당 부서인 학생지원팀 외에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취·창업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음^{9),10)}

- 학생자치활동 지원 현황

- 동아리 등록은 매년 초에 진행하며, 임원은 소속 동아리에서 회원의 선거로 선출하고 있음^{11),12)}
- 우리 대학은 원활한 학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아리별 간부학생 동아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제,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5.1.1-26),13),14)}
-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물적 지원으로 총학생회실, 학과위원회실, 동아리실, 학보사, 교육방송국, 자료보관실 등 사무공간을 제공
- 장학금: 총학생회 회장/부회장/임원, 학과위원회 임원 및 과대표, 동아리 임원, 학보사/교육방송국 소속 학생들에게 봉사장학금 지급(2022학년도 751명 247,540,240원, 2023학년도 609명 202,602,600원)^{5.1.1-27)}
- 학보사 및 교육방송국 임원에게는 졸업 시 공로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지원¹⁵⁾
-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학보사에서는 우리대학 학보인 ‘장안대학교 학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교육방송국에서는 정규방송을 운영함. 정규방송은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며, 정규방송 시간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유함

- 학생자치활동 참여 학생 면담

- 학과위원회, 과대표 등을 통하여 상시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 및 조치하고 있음
- 2023학년도에 학과위원회 간담회에서 학과위원회 임원 선출과 축제 운영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학생회자치활동규정 제4장 35조에 의거하여 임원을 선출하였음. 또한 풍성한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축제를 진행하였음^{5.1.1-22),5.1.1-23)}

2	대학은 학생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p>a) 학생활동 지원 연간 운영계획 및 지원 실적</p> <p>- 대학의 역할은 학생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며,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회장 선거,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자치 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자치회의 학생자치활동 운영계획을 통해 학생회장 선거,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자치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5),16)} •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물적 지원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함 • 총학생회 활동지원: 축제, 체육대회, 졸업앨범제작지원금 등 행사별 계획에 따라 장소, 비용, 교직원 참석 등 지원 • 2022학년도 학교축제 지원예산을 15,720,000원에서 27,720,000원으로 1,200만원 추가 편성^{5.1.1-21)} • 2022학년도 학교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 지원비 예산 487만원 확보¹⁷⁾ • 2023학년도 학과위원회 사업계획서에 따라 10월에 뒷말축제를 개최하였고, 풍성한 축제 운영을 위해 학과위원회에서 축제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학생지도위원회 회의 를 통해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축제 결과보고에서 나온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차년도 축제 운영을 계획하고자 함^{5.1.1-23)} • 우리 대학은 각 동아리들의 사업계획을 취합 후 검토하고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동아리 봉사장학금: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별 선발된 임원에게 봉사장 학금 지급 (2023학년도 1학기 11명 3,300,000원, 2023학년도 2학기 10명 3,000,000 원)¹³⁾ • 학보사 및 교육방송국의 언론활동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사무공간 을 확보함 • 학보 비치대 13개 설치, 학보사 및 교육방송국 2022년 2월 7명 공로상 수여, 2023년 2월 14명 공로상 수여, 2024년 2월 10명 공로상 수여¹⁵⁾ • 학보사 및 교육방송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봉사장학금 지급(2022 학년도 29명 33,800,000원, 2023학년도 1학기 16명 3,800,000원, 2023학년도 2학기 29 		

명 14,100,000원)¹⁸⁾

-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연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자치기구, 학회장, 새내기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 및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5.1.1-22),5.1.1-24),19),20)}
 - 학교 홈페이지내 Q&A게시판, 학생생활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지원 서비스 개선 사항 도출^{5.1.1-10),5.1.1-12)}

b)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연간 학생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생활연구, 재학생·졸업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간서비스 계획 수립에 활용함
 - 2023학년도 만족도 조사 실시(학생생활연구): 1학년(대학에 기대하는 부분 중 교육시설/복지 17%,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31%, 요구 심리 검사-진로검사 29%), 2학년(대학추천이유 중 서비스/복지 7%, 장학제도 4%,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52%, 요구 심리 검사-진로검사 60%)^{5.1.1-10)}
- 2022년 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실적으로는 사당역 교통혼잡에 따른 스쿨버스 탑승위치 변경을 요구하여 1번 출구에서 4번 출구로 변경하였고 2023학년 3월 통학버스 예매 솔루션 연장 계약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고 간단하게 스마트폰/PC를 이용한 승차권예매, 예매확인 및 취소, 환불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전자결제 채택으로 매표소 충전 불편을 해소 함. 수리요구서에서는 난방, 문고리 고장 수리, 전등 교체 등을 요구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음. 졸업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하여 진로·취업 프로그램, 취업멘토링, 자격증프로그램 분야를 운영함^{5.1.1-11),21),22),23),24)}
-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에 따라 2023년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지원처에서는 차년도 학생활동을 계획할 때 환류하여 반영하고자 함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서비스 Q&A게시판을 통해 학생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매일 확인 후 즉각 대응함. 2022~2023년에 학적 관련된 문의사항 처리 7건, 수강신청 및 수업 관련된 문의사항 처리 5건,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 처리 1건, 학점 및 출석 관련 문의사항 처리 5건, 장학금 관련 문의 사항 처리 19건, 스쿨버스 관련 문의사항 처리 1건,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 처리 5건, 기타 관련 문의사항 처리 9, 총 52건 처리. 개선 내용으로는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전산화 도입하고 문의 및 건의사항은 홈페이지, SNS, 문자서비스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스쿨버스

및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5.1.1-12),21),25)}

- 매년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자치회 운영 결과보고서 및 결산 안을 심사하여 평가하고 개선점을 보완함. 2023년도에는 보고서상의 결산안 금액, 기간 등이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여 보완하도록 함⁶⁾
- 학생의 언론활동과 이를 보장 및 장려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26),27)}
 - 학보사와 교육방송국은 매년 초 구성원이 모여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함
 - 자체평가회의를 개최, 해당 연도의 실시사항을 점검 후 개선사항을 도출 후 환류
 - 활동은 회의결과로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서를 작성함
- 학생자치회 간담회를 통하여 학생대표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을 추진함
 - 2022학년도에 학과위원회 간담회에서 자판기 고장, 엠티, 체육대회 등 행사개최 여부, 강의시설 고장, 강의실 야간 대여 요청 등 여러 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수리 및 행사 진행, 강의실 대여 허가 등 개선을 추진하였음²⁰⁾
 - 2023학년도 2학기에 학생자치회 간담회를 시행하였으며 학과 시설물 고장, 학생식당 불만사항, 동아리방 및 학과 학생회실 지원 등의 여러 요청 사항을 받아 관련 부서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류를 통해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 중임^{5.1.1-24),5.1.1-25)}

3	대학은 학생행사 관련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	-----------------------------------	---

a)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규정

- 우리 대학은 학과 M.T, 체육대회, 축제, 동아리활동, 교내 신입생 O.T 등 학생행사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 사전준비 및 행사 지도 시 철저히 점검함. 특히 집단연수 행사 전에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전달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서 제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하도록 함^{5.1.1-32),28)}

b)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추진체제

- 우리대학 학생지원처에서는 학생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지원팀, 관리팀, 총무팀, 건강관리실과 연계하여 학생행사 지원조직을 운영함^{5.1.1-32)}

- 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별 역할 및 조치사항으로 사고자 또는 최초 발견자가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여 학과 사무실 및 학생지원팀에 신고하고 건강관리실은 응급조치 또는 환자를 후송하고 학생지원팀에 사고내용을 보고하며 관리팀에서는 화재, 전기, 가스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주변 대피 조치를 하고 학생지원팀에 사고내용을 보고함^{5.1.1-32)}

c) 학생행사 안전관리 운영 실적

-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안전관리대책에 의거 차량, 숙소, 보험 등 관련사항 사전확인 후 행사를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지도함
- 학과 M.T, 체육대회, 축제 등 학생 행사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 사전준비 및 행사 지도 시 철저히 점검함. 특히 집단연수 행사 전에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전달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서 제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29),30),31),32)}
- 경영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1인당 · 1사고당 100,000천원, 치료비 특별약관 1인당 · 1사고당 5,000천원^{5.1.1-9)}
- 총무처 관리팀에서는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실험실습위주학과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12개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연구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함^{33),34),35),36)}
- 축제 등 행사 개최 시 학생자치회 및 행사 참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관련 면담 시간을 가져 행사 준비의 완성도를 높임³⁷⁾
- 매년 국가근로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38),39)}
-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안전문화 개선과 관련 ‘건물별 피난안내도’를 공지하여 홍보함⁴⁰⁾
- 학생지원처는 2016년부터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대학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감염병관리규정,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구축함^{5.1.1-41),5.1.1-42),41)}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학생활동과 관련한 규정을 갖추고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대학은 학생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 	Y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대학이 지원하는 학생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및 학생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있기에 기대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 대학은 학생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부서의 협업체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기에 기대수준에 충족함 ▪ 대학은 주기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행사를 준비하며 관련자와 면담을 거쳐 준비하고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매뉴얼을 관련학과에 공유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기에 기대수준을 충족함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5.1.2	1) 학생자치회활동규정(제정 1989. 3. 1., 개정 2022. 1. 1.)
	2) 동아리 운영규정(제정 2011. 3. 1., 개정 2022. 1. 1.)
	3) 교육방송국 운영규정(제정 1984. 4. 30., 개정 2016. 2. 1.)
	4) 학보사 운영규정(제정 1981. 3. 1., 개정 2016. 2. 1.)
	5) 2022학년도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_20220513
	6) 2023학년도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_20230418
	7) 학생지도위원회규정(제정 1972. 3. 1., 개정 2022. 1. 1.)
	8) 대학 운영기구표
	9) 2022학년도 취창업동아리 결과보고서
	10) 2023학년도 취창업동아리 선정결과 보고
	11) 일반동아리 시행 및 인가(2022, 2023학년도)
	12) 일반동아리 운영 결과보고(2022, 2023학년도)
	13) 학생자치회 봉사장학금(동아리회장) 지급(2022, 2023학년도)
	14) 윗말체육대회 시행(2022, 2023학년도)
	15) 전기 학사 및 전문학사 졸업생 수상자 추천(2021, 2022, 2023학년도)
	16) 2023학년도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_20230518
	17) 2022학년도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_20220927
	18) 학생자치회 봉사장학금 지급(2022, 2023학년도)
	19) 2022학년도 새내기가 꿈꾸는 장안대학교 간담회 결과 보고
	20) 학생자치회 간담회 시행(2022, 2023학년도)
	21) 사당역 스쿨버스 탑승위치 변경, 예매솔루션 임차 계약
	22) 찾아가는 진로특강 운영 결과 보고(2022, 2023학년도)
	23) 「제4회 온라인 장안진로직업박람회」 운영 결과 보고
	24) 2023 온라인자격취득 과정 운영
	25) 교내장학금 신청방법 안내(2022, 2023학년도)
	26) 학보사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회의
	27) 교육방송국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회의
	28)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29) 학과별 집단연수 (M.T)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안내(2022, 2023학년도)
	30) 2022학년도 1학기 학과별 집단연수 운영 결과 보고
	31) 2023학년도 학과별 집단연수(MT등) 행사신청서
	32) 2023학년도 학과별 집단연수(MT등) 결과보고서
	33) 2022학년도 전반기 생활관 학생 온라인 소방교육 결과보고

34)	2022년 2학기 생활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온라인 소방안전교육 실시결과 보고
35)	2023년 상·하반기 기숙사 화재대피 및 지진대응 훈련 결과 제출
36)	2023년 장안대학교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
37)	윗말축제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2022, 2023학년도)
38)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사전)교육 실시
39)	2023학년도 하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사전)교육 결과보고
40)	홈페이지 ‘건물별 피난안내도’ 캡처화면
41)	감염병 관리규정(제정 2017. 3. 1., 개정 2021. 11. 9.)

5.1.3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p>a)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규정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의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은 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지원팀(구 경력개발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의 협력체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¹⁾, 학생지도 및 상담규정²⁾, 지도교수제 운영규정³⁾, 교수학습지원규정⁴⁾,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⁵⁾, 창업지원규정⁶⁾, 취·창업센터 운영규정⁷⁾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함 <p>b)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은 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지원팀(구 경력개발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발달검사 • 진로 및 심리 개인상담 •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 진로 및 심리 집단상담 <li style="width: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기초학습능력 진단 후 1대1 맞춤 학습상담 진행 <li style="width: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희망 학생에게 전문 창업상담 제공 <li style="width: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컨설팅트 배치를 통한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상담 • 진로 및 취업 관련 심리검사 및 상담 </div>		
<p>[그림1.]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협력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신입생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주기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입학직후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 파악 후 개별 맞춤형 학생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요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 ‘J-CAP대학생활적응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도를 파악하고 중도탈락방지 및 대학생활적응, 심리정신적 문제해결, 진로지원 등을 위해 학과, 교무, 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지원팀(구 경력개발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⁸⁾⁹⁾¹⁰⁾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진로 및 심리상담에 대한 교내·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용인정신병원,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성대학교, 림스연구소 등 		

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로 및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¹²⁾

-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업무지침에 따라 센터장, 전담상담원, 전담직원, 운영위원회의 체계를 갖추어 재학생의 진로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실은 사무공간과 분리되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음. 전담상담사와 전담직원이 상근인력으로 근무하며 상담 관련 업무, 위기개입, 각종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학과 및 부서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진로 및 심리상담을 지원함⁸⁾⁹⁾



[그림2] 학생상담센터 조직도 및 상담공간

c) 유(有)자격 전문 상담사 배치 확인

- 우리대학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진로설계, 경력개발, 전공학습을 위한 학생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상담인력을 상근으로 배치하고 있음
- 학생상담센터는 상담관련 전문 자격(상담심리사 2급 등)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근무 중이며¹³⁾ 진로취업지원팀(구 경력개발지원팀)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¹⁴⁾, 학과교수68명은 진로지도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¹⁵⁾

※ 표 5-2) 5.1.3을 활용하여 작성

2	대학은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p>a) 진로·심리 상담 운영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교육 및 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학생상담 센터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대학생활 실태조사(1,377명, 1,000천원)¹⁶⁾, 적응검사(1,781명, 4,361천원)¹⁷⁾, 학과적응력 		

PG(45명, 0원)¹⁸⁾, 자살예방 PG(1,198명, 300천 원)¹⁹⁾,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PG(156명, 1,261천 원)²⁰⁾, 자퇴상담(210명), 개인(해석)심리상담(105건)²¹⁾, Online방탈출게임(68명)²²⁾, 오픈채팅방(4명)²³⁾, 스트레스 관리 집단상담(5회기) (5명, 13천 원)²⁴⁾, 학교와 전화상담 PG(38명, 414천 원)²⁵⁾, 장안 진로멘토링 프로그램(8명, 768천 원)²⁶⁾, 배려학생 전화상담 PG(7명, 0천 원)²⁷⁾, 진로발달 PG(275명, 400천 원)²⁸⁾,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평가 (791명)²⁹⁾, 수요맞춤 특강(514명, 400천 원)³⁰⁾

- 진로취업지원팀(구 경력개발지원팀) 2023년도 학생 진로 상담관련 운영 실적은 아래와 같음³¹⁾

- 찾아가는 취업특강(505명), 찾아가는 진로특강(415명), 진로 및 취업상담(1,667건), 구직서류 & 면접클리닉(758건), 취업정보제공(7,527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취창업지원센터에서 학생 진로상담 관련 창업컨설팅 지원 실적과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음³²⁾

- 6명, 3,000천 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 학습관련 상담 실적 및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학습지도 코칭(3명, 90천 원)³³⁾, 기초학습향상프로그램(143명, 996천 원)³⁴⁾

- 학과 지도교수의 J-CAP 상담이력 건수는 다음과 같음³⁵⁾

- 2023년 개인상담(1,669건), 자퇴상담(309건), 진로상담(2,192건), 취업상담(840건), 학업상담(2,461건), 휴·복학상담(1,064건), 비대면(80건)

b) 진로·심리 상담 운영 평가 및 개선 실적

-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계획 후 운영, 평가 및 요구조사 결과를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에 개선 및 환류하는 운영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운영계획 수립과 개선사항 도출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짐³⁶⁾

- 학생상담센터 및 각 부서에서는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와 해석상담, 각종 프로그램 운영 후 개별 프로그램마다 만족도를 평가하고 매년 말 성과평가보고서³⁷⁾를 작성하여 차기계획 수립에 환류하여 반영하고 있음⁸⁾

- J-CAP은 우리대학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부적응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 학생지도시스템으로 2014학년도 3구축한 이후 2023학년도 4,36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유지하고 있음.³⁸⁾ J-CAP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행정부서, 학과 지도교수가 연계하여 생활상담, 진로 및 학업 상담, 자퇴상담, 휴학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유지를 위해 밀착 지도함.¹⁶⁾ 매 학년도 상담실적을 평가하여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⁴⁰⁾, 2023학년도 J-CAP 지도상담 실적은 전체재적학생 대비 상담률이 2022학년도 221.4%보다 2.2% 증가한 235.7%로 확인되어 입학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지도 및 상담실적이 상향하였음³⁵⁾⁴¹⁾

- 2023학년도 대학생활적응검사 결과는 3월 실시한 1차 검사보다 5월 실시한 2차 검사에서 고위험군 학생비율이 14.9%→14.0%로 0.9% 감소하였으며¹⁷⁾,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22학년도 99.2%에서 2023학년도 101.4%로 전년대비 2.2% 상승하여⁴²⁾⁴⁹⁾ ‘J-CAP대학생활적응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진로지도 및 심리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²⁹⁾, 2023학년도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적응향상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³⁰⁾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정량적 평가 외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성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 있음. 2023학년도 학사경고자 상담프로그램에서는 유학생이 증가로 외국인 유학생 학사경고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교류원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함⁴¹⁾
- 2023학년도에는 학생상담센터 상담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기관인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전문가(임상심리수련생 1인)가 파견되어 주 1회 전문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담 인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⁴⁵⁾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규정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상담센터에는 상담 전문성을 갖춘 상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생의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후 프로그램 운영·평가·분석·개선을 실시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 번	자료명
5.1.3	1)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제정 2011.5.1., 개정 2016.4.1.)
	2) 학생지도 및 상담규정(제정 2014.11.1., 개정 2021.1.4.)
	3) 지도교수제 운영규정(제정 2010.3.1., 개정 2020.3.23.)
	4) 교수학습지원규정(제정 2011.7.1., 개정 2018.6.1.)
	5)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제정 2011.5.1., 개정 2022.8.30.)
	6) 창업지원규정(제정 2017.7.1., 개정 2021.1.4.)
	7) 취·창업센터 운영규정(제정 2021.1.4., 개정 2021.1.4.)
	8) 학생상담센터 부서발전계획서
	9) 업무지침 및 업무편람, 상담 관련 운영일지, 주간 및 간부 회의 자료
	10) 경력, 취창업, 교수학습 부서발전계획서
	11) 교무팀 부서발전계획서
	12) 업무협약서
	13) 학생상담센터 이력 및 경력, 자격입증 자료
	14) 경력개발지원팀 이력 및 경력, 자격입증 자료
	15) 진로지도사 2급 취득자 명단
	16)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학생생활연구 발간 (2023)
	17) 대학생활 적응검사 (J-CAP탐재) 1-2차 및 진로발달검사 결과보고서 (2023)
	18) 학과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19)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0)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 (2023)
	21) 상담 및 이용자 현황 (2023)
	22) 학생상담센터 online 방탈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3) 학생상담센터 오픈채팅방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4)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5) 학교와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6) 장안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7) 배려학생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8)	진로발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29)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평가 (2023)
30)	대학생활 적응향상특강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3)
31)	진로취업관련 2023학년도_증빙
32)	2023학년도 G-HOP 대학창업연합 운영사업 결과보고
33)	학습컨설팅 결과보고서
34)	2023학년도 기초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결과보고
35)	J-CAP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지도교수 상담이력건수 보고 및 상담 운영실적 (2023)
36)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37)	학생상담센터 성과평가보고서 (2023)
38)	[기안] 2023학년도 장안대학교 학생상담센터 J-CAP 유지보수 재계약 건
39)	(학생상담센터) 2023 교수업적평가 학생상담 및 진로상담 실적
40)	[협조문]2023년도 교수업적평가 평가자료 제출
41)	J-CAP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지도교수 상담이력건수 보고 및 상담 운영실적 (202)
42)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43)	대학정보공시 4-라. 재학생 충원율
44)	학사경고자유학생 국제교류원 연계협조증빙
45)	2023년도 수련생 파견 협조 요청 (용인정신병원)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p>a)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시행</p> <p>- 학칙(장애학생 지원 관련 내용) 반영 및 장애학생 관련 제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 학칙 제8장 제43조(수강신청)에서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우선 수강신청을 허가하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화하고 있음¹⁾ · 우리 대학은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규정」, 「장학금지급규정」, 「교육시설 및 물적자원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2),3)} <p>- 소수집단(외국인 포함) 학생 관련 제도, 규정 또는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소수집단(다문화가족, 외국인학생)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 「외국인 유학생 입학·지도관리 규정」, 「장학금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4),5)} · 「외국인 유학생 입학·지도관리 규정」은 입학자격요건, 유학생지도, 학급편성 등, 장학, 전과, 기숙사, 취업지원 및 알선, 보험 등 외국인유학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화하여 지원하고 있음⁵⁾ <p>- 소수집단 및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의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지원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담직원이 교내 생활 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지도교수 및 상담사가 장애학생 상담을 실시(2022학년도 10명 54건, 2023학년도 7명 18건)⁶⁾ · 협조문을 통한 장애학생에게 지원되는 곰두리 장학금 지급을 안내, 대학 홈페이지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각 건물로의 보행로, 보조손잡이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지원^{7),8),9)}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학칙 제43조 6항, 7항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부서인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상담과 만족도조사를 통해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 		

생의 의견을 수렴^{10),11)}

- 교무처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 장애학생들에게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함¹²⁾
- 「장애학생지원규정」에 의거하여 교무처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 담당 교수(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 시에도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음¹³⁾
-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곰두리 장학금(2022학년도 7명 4,000,000원, 2023학년도 13명 9,877,000원)과 다문화가정 장학금(2022학년도 8명 4,000,000원, 2023학년도 14명 7,000,000원)을 지급¹⁴⁾
- 학생지원처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소수집단 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 제4장 제8조(생활정보 및 교육 지원)’에서 소수집단 학생이 교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15),16)}

b)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장애학생지원규정의 제4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총무처장, 총무계장, 관리계장을 위원으로 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임¹⁷⁾
- 장애학생지원규정의 제5장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같음하여 학생지원팀에서 장애학생지원서비스, 장애학생 상담,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그밖에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를 수행함^{18),19),2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같음하여 학생지원처 산하의 학생지원팀에서 장애학생 지원 활동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21),22)}

c)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현황 및 확대 노력

- 장애학생 전용 보행로(5곳), 엘리베이터(7개관), 열람석(18개), 화장실(6개관), 주차장(30개소) 지원²³⁾
- 2024학년도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우리대학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보조기구 기부 여부 방안 논의 ¹⁷⁾ - 다문화가족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해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가지 언어 버전으로 제공 ²⁴⁾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의 기대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5.1.4	1) 장안대학교 학칙 일부
	2) 장애학생지원규정·장학금지급규정
	3) 교육시설 및 물적자원 관리규정
	4)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
	5) 외국인 유학생 입학·지도관리 규정·장학금지급규정
	6) 장애학생_상담이력(2022, 2023학년도)
	7) 교내장학금 신청방법 안내(곰두리 장학금)
	8) 대학홈페이지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9) 편의시설 관련 증빙자료
	10) 장애학생 지원 협조 요청(2022, 2023학년도)
	11) 배려학생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포함)(2022, 2023학년도)
	12)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 협조 요청(2023학년도)
	13) 장애학생 현황 보고(2022, 2023학년도)
	14) 교내장학금 지급(곰두리장학금)(2022, 2023학년도)
	15)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결과 보고(2022, 2023학년도)
	16) 다문화·탈북 학생지원계획 및 회의 자료
	17)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2022, 2023학년도)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9)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2학년도)
	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선방안 자료(2023학년도)
	21) 학생지원팀 업무분장표(2023학년도)
	22) 학생지원처 조직도(2023학년도)
	23)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자체조사 보고서(2023학년도)
	24)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가지 언어 버전으로 제공’ 캡처화면

5.2 교육시설

5.2.1 도서관

○ 주요 판단사항

1	도서관은 규정 및 추진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p>a)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p> <p>-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또는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 학칙’ 제18장 제89조(부속기관) 및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라 학술정보관 운영^{1),2)} <p>b) 도서관 운영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p> <p>- 도서관 전담인력 현황 및 업무 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발전계획서(2023)의 3. 부서 현황에 조직도, 구성원 현황, 부서업무분장을 명시하고 있음³⁾ ·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은 대학의 부속 기관으로 국내외 도서, 자료 등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학술연구 조사 및 대학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봉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 및 조직 등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음 · 학술정보관장이 운영하고 정책 결정 및 관무를 총괄하며, 학술정보관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관장하는 사서를 두고 있음 · 학술정보관은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를 두고 있음⁴⁾ · 학술정보관장은 학술정보관 정책 결정 및 총괄 지휘하며, 학술정보팀장은 학술정보관 기획 및 운영을 총괄 함. 직원(사서)이 자료구입, 연속간행물, 상호대차, 전자도서관 관리, 통계관리 등 행정 실무 및 사서 업무를 담당함. 조교(사서)가 홈페이지 관리, 자료 열람(대출·반납), 자료정리, 기타 행정업무를 보조함 <p>c) 유(有)자격 전문 인력 배치</p> <p>- 담당자 배치 현황 및 자격증 사본(도서 업무담당자)^{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정보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사서자격증과 다년간의 도서관 근무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 2023학년도에는 정사서 1급 자격을 취득한 사서 1명, 정사서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서 2명, 총 3명의 전문인력이 학술정보관에 근무함 <p>- 직무교육 실적(23학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정보관 사서 및 전문직원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에 참가하여 1인당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함⁷⁾ · 2023학년도에는 1인당 30시간 교육 이수함 		
2	도서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p>a) 도서관 운영계획 및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은 연도별 부서발전계획서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계획 및 실행 과제에 따른 진행스케줄이 부서발전계획서에 담겨 있음⁸⁾ ·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자료개발 및 확충, 시설 및 환경개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 및 사회소외계층 서비스에 해당되는 약 13개 항목이며 각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학술정보관 운영의 주요 사항들을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고 있음⁹⁾ - 도서관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 운영실적은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에 담겨 있음¹⁰⁾ · 도서관 자료개발 및 확충을 위해 연간 재학생 1인당 1권 이상(22년: 1권, 23년: 권),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1,600원 이상(22년: 33,964원, 23년: 27,416원) 달성¹¹⁾ ·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소통형 문화행사 (23년:5건) 실시¹²⁾ ·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직원 1인당 직무교육 27시간 이상(23년: 30시간) 이수¹³⁾ <p>b)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운영 평가 관련 자료 :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제11장 제44조(서비스 평가)’에 의거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에 관한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실시함^{14),15),16)} · 만족도 조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학술정보관의 서비스 개선과 정책수립에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 평가 관련 자료 : 대학도서관 평가^{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에 대학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진단을 목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평가 대상은 376개 대학도서관이며 평가 지표는 4개 분야, 24개 임 · 평가 결과 138.4점으로 우리대학이 속한 B그룹의 평균인 112.6점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 		

<p>으며 그룹내 상위 20%로 분류되었음</p> <p>- 평가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선 실적 자료 :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함¹⁹⁾ • 이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에는 학술정보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멀티미디어라운지(509호)를 개방형 열람실인 스터디카페로 새단장하여 운영함²⁰⁾ • 또한 기존 정기간행물실(306)을 만화, 오디오북, 보드게임, DVD를 즐길 수 있는 학생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개편하여 특성화 운영함^{21),22)} 		
3	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결산)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정량: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p> <p>a) 우리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22회계연도 33.9천 원, 2023회계연도 27.4천 원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21.6천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²³⁾</p>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도서관에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행·재정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정과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판단 기준을 충족함 ▪ 우리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인 21.6원을 충족함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5.2.1	1) 장안대학교 학칙(2001.9.17., 2023.2.23.) 제18장 제89조(부속기관)
	2) 학술정보관 운영규정(1979.6.1., 2022.2.17.)
	3) 부서발전계획서(2023)
	4)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제2장 기구(1979.6.1., 2022.2.17.)
	5) 학술정보관 업무분장표(2023)
	6) 담당자 사서자격증 사본(도서 업무담당자)
	7) 직무교육 실적 증빙(2023)
	8) 부서발전계획서(2023)
	9)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회의록(2023)
	10)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2023)
	11) 재정지원실적(2022,2023)
	12) 학술정보관 문화행사(2023)
	13) 직무교육 실적 증빙(2023)
	14) 학술정보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계획서(2023)
	15) 학술정보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23)
	16) 학술정보관 운영규정(1979.6.1., 2022.2.17.), 제11장 제44조(서비스 평가)
	17) 2023 대학도서관 평가 자체진단 보고서
	18) 2023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보고서
	19)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2023)
	20) 학술정보관 스테티 카페 오픈(학술정보관-631(2023.04.07.))
	21) 학술정보관 특성화 서비스 추진(학술정보관-4278(2023.12.11.))
	22) 학술정보관 자유(JAU)라운지 오픈(학술정보관-4814(2024.01.15.))
	23) 대학정보공시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2023)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법정 교사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a) 충족 : 교사확보율 10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시 산정기준에 따른 교사시설확보율은 입학정원기준 2022년 261.6%, 2023년 260.9%이며,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위한 학습·연구·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충분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음^{1),2)} 		
2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p>a) 관련 규정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시설물관리규정」에 따라 일반시설, 화재예방 및 소방, 전기 및 통신 등의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절차와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³⁾ <p>b) 교육시설의 관리 및 개선(점검, 개·보수 등) 현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시설 및 캠퍼스 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⁴⁾ - 교육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5명을 배치하여 기계, 전기, 가스, 냉난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승강기·오수정화조·교환기 및 전화기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음^{5),6),7)} - 시설물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교내 전기 시설, 가스시설 등을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내역 또한 매일 작성하여 시설물 관련 민원과 해결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있음⁶⁾ - 매년 외부 전문업체에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에 노력하고 있음^{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2022년 3월 / 2023년 3월 ·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2022년 6월, 12월 / 2023년 6월, 12월 - 우리대학은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강의실 환경 개선, 학생 지원시설 향상을 위해 매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등 적절한 예산(2022년 		

2,632,644,000원, 2023년 2,790,750,000원)을 편성하여⁴⁾ 교내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2023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후된 외국어전용관 기숙사 내부를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2022년 6월¹⁰⁾
- 학생편의시설인 대학본부G층 잡카페의 벽면누수 보수공사를 통해 편의성을 높임 : 2022년 12월¹⁰⁾
- 노후된 전공동아리관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023년 5월¹⁰⁾
- 노후된 대학본부 드림홀의 빔프로젝터 교체 공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2024년 1월¹⁰⁾

c)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 우리대학은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에 자연재난 등에 대비 교육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음¹¹⁾
- 우리대학은 ‘소방계획’¹²⁾, ‘장안대학교 안전관리계획’¹³⁾을 매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¹⁴⁾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사확보률은 260.9%로 평가기준인 100%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교육시설의 관리, 개선, 안전관리에 대해 유지보수 및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	대학정보공시(2022,2023), 14-라. 교사시설확보현황
2)	건물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3)	「시설물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2.10.7.)」
4)	부서발전계획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예산 편성 관련 입증자료)(2022, 2023학년도)
5)	시설/미화/청소 용역 계약서(전문인력 배치 입증자료)
5.2.2 6)	시설물관리내역(2022, 2023학년도) - 일반관리 업무 접수 처리 대장 - 업무일지 - 시설물 안전점검일지(전기시설, 가스시설) - 정기점검(자체) 일지(보일러, 저수조) - 정기점검(외주) 일지(소방시설, 승강기, 오수정화조, 교환기 및 전화기) - 건축물 및 토목시설 점검 대장
7)	계약 관련철(관리업체와 계약관련 입증자료)
8)	전기설비 진단 보고서 (2022, 2023학년도)
9)	건축물 안전점검 보고서 (2022, 2023학년도)
10)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실적 (2022, 2023학년도)
11)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안전관리철 (2022, 2023학년도)
12)	소방계획서 (2022, 2023학년도)
13)	장안대학교 안전관리계획(홈페이지 공지)
14)	안전교육 및 훈련 관련철(2022, 2023학년도)

5.2.3 정보보안 지원

○ 주요 판단사항

1	<p>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p>
<p>a)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준수</p> <p>-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또는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내업무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체계화하고 <p style="padding-left: 20px;">개인정보처리지침¹⁾, 개인정보처리방침²⁾, 개인정보보호에관한규정³⁾,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⁴⁾ 보안업무규정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³³⁾,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 및 복구지침^{6),11)} 관리 규정을 갖추어 사이버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비롯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정보보안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관리규정 및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운영 관리 하고 있음^{15),16)} <p>-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준수 입증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의무적 사항으로 대학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8),19)} •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관리지침에 기반한 내부관리 기본계획⁷⁾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매년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정보보안 세부계획 수립하여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16) 17),18)} <p>-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입증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 규정·지침·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이행으로 대학 교원 및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⁹⁾, 정보보안 교원 및 직원 교육 용역업체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위탁 계약체결 관리¹⁰⁾, PC 점검,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여 운영하고 있음^{20),21),22),23)} <p>b) 개인정보보호 체계</p> <p>-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실제 운영 체계 시범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의무적 사항으로 대학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⁸⁾ / 	

개인정보보호 조직(개인정보보호책임자·부서 및 학과 책임자/담당자 및 비상연락망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인정보관리 규정·지침·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이행으로 대학 교원 및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⁹⁾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위탁 계약체결 관리¹⁰⁾, PC점검, 비밀번호관리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인정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발생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매뉴얼¹²⁾ 및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 및 복구지침 및 재난재해관리지침¹¹⁾을 운영하여 사고 발생시, 사고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있음
- 대학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연 1회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계획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을 체크하여 보완하고 있음²⁸⁾
- 정보화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체계 구축 및 예산편성^{15),16),31)},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17),18)}, 침해사고 대책 수립^{19),22)}, 정보보안 기본 활동, 정보자산 관리^{30),32)}, 정보보안 교육^{20) 21)} 등 관련 지표에 대한 수준진단²⁸⁾을 실시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 중요정보(비밀번호, 주민번호)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 접근제어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함²³⁾

c)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에 대한 안전성 관련내용 기술

- 행정 정보 보호 관련 계획이나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보안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⁵⁾을 준용하고 보안담당관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배치하고 정보보안위원회^{14),19)}를 운영하여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정보보호 세부 계획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백신 및 최신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PC보안을 강화하고 대학 구성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함^{20) 27)}
- 교내 위협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외부, 내부 네트워크를 실시간 탐지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서버 및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정기점검(매월)을 실시하여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예방함^{30) 22) 27)}

- 화재, 해킹 등으로부터의 정보 보호 계획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위기 대응 절차를 매뉴얼²²⁾을 운영하고 재해재난발생시 정보 보호를 위한 매뉴얼^{12),11)}을 운영하여 사고 발생시 침해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로그기록, 백업, 인터넷차단, 이메일 보안관리, 출력물 보안 관리, 개인정보암호화를 지원하는 정보유출방지솔루션(DLP)을 구축하여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있음²⁴⁾ · 대학은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여 별도의 건물에 원격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 1회 백업을 실시하고 있음(백업 대상으로는 행정 및 학사데이터, 그룹웨어(교직원), 가상화 시스템, 백업시스템, 홈페이지 데이터 등)²⁵⁾ · 대학 행정 시스템은 해킹에 대비하여 대학 내 서비스만 허용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가상사설망 VPN을 통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²⁶⁾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정보보호 계획수립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기대수준을 충족함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5.2.3	1)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
	2) 「개인정보처리방침」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4)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
	5) 「보안업무규정」
	6)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지침」
	7) 「개인정보 내부관리 기본계획」
	8) 개인정보보호 비상연락망
	9) 개인정보보호교직원교육
	10) 개인정보위탁(유지보수)
	11)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 및 복구지침 및 재난재해관리지침 입증파일명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지침(2021.12.) 및 재해재난관리 매뉴얼(2019.01.)
	12) 장안대학교 재해재난관리 매뉴얼_v1.0
	13)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보고서
	14) 개인정보보호관리 조직도
	15) 정보보안관리규정
	16) 정보보안 기본지침
	17) 정보보안 업무 세부추진 계획
	18) 정보보안세부추진계획 따른 이행자료
	19) 정보보안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20) 정보보안 교육 실시 결과 보고
	21) 용역사업업체 정보보안 교육자료 배포 건
	22)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23)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리 자료
	24) PC필터, WEB필터, SERVER필터, 개인정보보호접속기록관리 유지보수 건 적서(출력물보안관리 기능)
	25) 원격 백업(소산)장치시스템 조치 결과 보고 및 백업 결과 목록
	26) 가상사설망(VPN) 이용 신청서 및 가상사설망 사용법
	27) 사이버보안진단의날결과보고
	28) 정보보안 수준진단 결과 보고
	29) 정보지원센터 전산운영 지침 제3장 접근통제 정책
	30) 정보시스템점검대장

	31)	정보지원센터 부서별 사업예산
	32)	네트워크 및 접근제어 시스템
	3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6. 교 · 직원

6.1 교 · 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6.1.1 인사관리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교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p>a)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 전임교원 채용 관련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임용) 내지 제39조의5(신규채용), 교원인사규정 제10조(교원의 자격)~제18조(임용취소),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임용자격)~제5조(임용기간), 외국인강의전담 교원 임용규정 제5조(임용절차 및 기간)~제7조(임용처리),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제5조(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명시하고 있음¹⁾ - 전임교원 재임용 관련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임용), 교원인사규정 제19조(재임용대상)~제24조(재임용 및 해임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평가 규정 제3장(평가시기 및 절차)~제4장(평가방법 · 영역 및 활용), 외국인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 제8조(재임용기준 및 절차),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제5조(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명시하고 있음²⁾ - 전임교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5조(정기승급)~제34조(승급 및 승진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연봉제)전환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트랙전환)에 명시하고 있음³⁾ - 전임교원 해임 관련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44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명시하고 있음⁴⁾ - 정년보장교원 임용 관련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의3(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교원인사규정 제35조(정년보장 임용대상)~제39조(탈락자에 대한 처리)에 명시하고 있음⁵⁾ - 우리 대학 강사 임용 및 재임용 관련 규정은 강사임용규정 및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자격)~제20조(재임용 거부)에 명시하고 있음⁶⁾ - 우리 대학 겸임(초빙)교원 위촉 및 재위촉 관련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임용), 겸임(초빙)교원 위촉에 관한 규정, 겸임(초빙)교원 재위촉 평가규정에 명시하고 있음⁷⁾ -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임면, 재임용, 승진임용, 해임, 비전임교원(강사, 겸임(초빙)교원) 임면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정보공개→제규정집에 공지하고 있으며 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b) 관련 법령의 준수 확인

- 전임교원 신규 임용은 관련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음
-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제5조(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교원 신규임용 평정 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2023학년도에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실적이 없음
- 신규채용: 채용계획수립→채용계획승인 제청(법인제청 및 법인승인)→채용공고(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심사위원 위촉(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심사→임용제청 후보자 선정→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 제청→이사회 심의 의결→임용→관할청 보고⁸⁾
-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관련 법령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4(계약제 임용 등)등에 명시된 절차 및 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2023학년도 2회(2023년 3월 1일자, 2023년 9월 1일자)의 실적이 있음⁹⁾
- 재임용: 임용기간 만료통보(4개월 전)→재임용 신청(만료통보 후 15일 이내)→교원인사위원회 개최(재임용 심의)→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재임용 결정)→재임용 여부 통보(2개월 전)→재임용→관할청 보고⁹⁾
- 전임교원의 승진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25조(정기승급)~제34조(승급 및 승진제한)에 따라 공정하고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며, 2022년 9월 1일 자 승진 임용 제청하였으며 이후 승진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립학원에서는 법인의 이사회가 정상화 된 이후 교원 승진임용을 순차적으로 검토 및 심의할 예정임을 통보함¹⁰⁾
- 전임교원의 해임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교원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 교원 해임 현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따른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해임,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른 징계로 인한 해임임¹¹⁾
- 강사 신규 임용은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2023학년도 신규 임용자는 46명(1학기 29명, 2학기 17명)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함¹²⁾
- 강사 재임용은 관련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등에 명시된 절차로 진행하였고 2023학년도 2회(2023년 3월 1일자, 2023년 9월 1일자)의 실적이 있음¹³⁾

- 겸임(초빙)교원 신규 위촉은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2023년 3월 신규 위촉자는 4명, 2023년 9월 신규 위촉자는 19명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함¹⁴⁾
- 겸임(초빙)교원 재위촉은 2023학년도 2회(2023년 3월 1일자, 2023년 9월 1일자)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해진 절차로 진행함¹⁵⁾

2	대학은 교원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	--	---

a)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 및 준수

-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다양한 책무 이행(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교수업적평가에 규정된 항목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전년도 10월 16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15일까지 평가 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음¹⁶⁾
- 교원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승진 등 교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¹⁷⁾
- 전임교원의 업적은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합표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영역은 교육영역, 산학협력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교수업적평가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함¹⁸⁾
- 교수업적평가의 절차: 교수업적평가 실시 승인 및 안내→실적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교원별)→실적에 대한 항목별 부서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실적 항목별 부서평가결과 검증 및 배점→교수업적평가 심의(교수업적평가위원회)→개별 교원에게 업적평가점수 통보→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이의신청 심의(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보 및 업적평가 결과보고→승진, 재임용 등 인사 사항 활용¹⁸⁾
-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심의는 물론 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평가 기구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위촉 시 계열 안배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고자 함¹⁹⁾

b)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적합성

-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와

<p>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²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인사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장이 조직하는 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성 전임교원으로 구성하였음. 또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2023년 보직자 2명으로 보직자 비율이 50% 이내가 되도록 구성함²¹⁾ -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²²⁾ -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간 중복비율은 50% 미만인 되도록 구성함 		
--	--	--

3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4월 1일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생정원 기준 59.56%, 2023학년도 4월 1일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생정원 기준 58.14%로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의 요구수준인 50% 이상을 상회함²³⁾ 		
--	--	--

4	대학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p>a)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직원의 채용, 승진, 근무업적평가 등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직원인사규정 제5조~제11조, 제13조(신규채용), 제14조~제18조(승진), 제20조(전보), 제21조~제25조(신분보장), 제12조(당연퇴직) 등을 마련하여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small>24),25),26),27),5),28),32),33)</small> - 업무 분장표를 마련하여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²⁹⁾ - 채용, 인사평가 등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 전형을 기본으로 하며, 채용절차는 규정과 방침에 의거 채용 계획 확정 및 이사장 승인 요청,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청구, 최종합격자 결정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음 · (근무업적평가) 직원 근무업적평가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1학기, 2학기 영역별로는 근무실적영역, 직무수행능력영역, 직무수행태도영역, 학교발전기여도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	--	--

<p>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³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직원승진은 직원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승진의 원칙, 승진임용의 방법, 승진소요 최저기간, 특별승진,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 직원의 전문성, 경력, 부서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를 배치하며 업무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공정성을 보장한 관련위원회 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 또한 전임교원확보율 기준(50.0%)을 상회하며 직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함 	Y

<교원인사위원회 및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명단>

학년도	순번	교원인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성명	소속	직급/보직명	비고	성명	소속	직급/보직명	비고
2023	1	김○○	유아교육과	조교수/교무처장	위원장 2023.3.1.~재임기간	조○○	게임컨텐츠과	조교수/기획처장	위원장 2022.6.1.~2023.6.30.
	2	오○○	바이오동물보호과	부교수	2023.2.1.~2023.12.31.	김○○	유아교육과	조교수/교무처장	2023.3.1.~재임기간
	3	김○○	게임컨텐츠과	조교수	2023.1.1.~2023.12.31.	김○○	항공관광과	조교수	2022.6.1.~2023.6.30.
	4	김○○	스타일리스트과	조교수	상동	서○○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상동
	5	배○○	시각디자인과	조교수	2023.8.7.~2023.12.31	조○○	세무회계과	조교수	상동
	6					윤○○	디지털	조교수	상동

							비즈니스 중국어 과		
	7					류○○	패션디 자인과	조교수	상동

※ 비고란에 위원장, 위촉기간 등 명시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6.1.1	1) 전임교원 채용 관련 규정
	2) 전임교원 재임용 관련 규정
	3) 전임교원 승진 임용 관련 규정
	4) 전임교원 해임 관련 규정
	5) 정년보장교원 임용 관련 규정
	6) 강사 임용 및 재임용 관련 규정
	7) 겸임(초빙)교원 위촉 및 재위촉 관련 규정
	8) 교원 신규 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초빙계획 기안문 등
	9) 교원 재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재임용 만료 통지서, 기안문 등
	10) 교원 승진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기안문 등
	11) 교원 해임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기안문 등
	12) 강사 신규 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채용계획, 기안문 등
	13) 강사 재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재임용 만료 통지서, 기안문 등
	14) 겸임(초빙)교원 신규 위촉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채용계획, 기안문 등
	15) 겸임(초빙)교원 재위촉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재위촉 만료 통지서, 기안문 등
	16) 교수업적평가 관련 규정
	17) 교수업적평가 활용 관련 규정
	18) 교수업적평가 시행 자료: 시행문, 회의록, 결과보고 문서 등
	19)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회 구성
	20)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21)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22)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23) 정량지표 현황 양식: 전임교원 확보율
	24) 법인서립학원 정관 제79조(임용) (제정 1991.1.14., 개정 2024.1.31.), 정관 pp.24
	25) 직원인사규정 (제정 1987.3.1., 개정 2018.7.1.)
	26) 직원인사위원회규정(제정 2011.07.01., 개정 2024.03.08.-공포)
	27) 계약직원 임용규정(제정 2011.5.1., 개정 2018.6.1.)
	28) 계약직원 채용 기안문(2023학년도)
	29) 업무분장표
	30) 직원근무업적평가 실시 기안문(2023학년도)
	31) 직원 인사발령 관련 기안문(2023학년도) *전보
	32)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기안문(2023학년도)
	33) 직원인사위원회 결과 보고(2023학년도)

6.1.2 역량개발

○ 주요 판단사항

1	대학은 전임교원 역량개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운영·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p>a) 교원 역량개발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역량개발을 촉진하여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역량개발 및 급여·복지에 관한 규정」,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¹⁾ - 「교원의 역량개발 및 급여·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교원의 역량개발 정책)에 6개월 이상의 교원 역량개발 중장기 프로그램과 전공교육, 직업교육 관련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을 명시함 -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지원금 지급)에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금 근거를 명시함 <p>b) 교원 역량개발 지원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교원 역량개발 지원 실적 중 국내외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에 대해 12명, 325천원의 지원 실적이 있음²⁾ - 교외 교원 단기 연수프로그램으로 2023학년도 20명, 3,450천원의 운영 실적과 교원의 역량개발 기회 확산을 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교내 전달연수를 실시하여 2023학년도 총 160명의 교원이 참여함³⁾ <p>c) 교원 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 환류 등의 프로세스는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전담하여 진행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 성과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함 -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중 교외 교육연수 지원의 평가를 통해 차년도에는 교육연수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함⁴⁾ - 교내 전달연수 참여 실적은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교원 승진 및 재임용 평가 등에 활용함⁵⁾ - 강의평가 70점 이하 교원의 역량개발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강의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티칭파워업 프로그램, 교수법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함. 이에 이후 학기 강의평가에서는 70점 이상을 받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⁶⁾

2	대학은 16주 이상의 연수 등 장기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는가?	✓
---	-------------------------------------	---

- 우리 대학은 재직 중인 교원이 국내외 연수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학문의 심화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6주 이상의 연구(안식)학기를 운영함⁷⁾
- 연구(안식)학기는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희망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학기 단위로 연 2회 실시함
- 연구(안식)학기 실시 교원은 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봉급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이후 승진이나 재임용에 필요한 기간에 합산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함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연구(안식)학기 실시 교원은 해당 기간 동안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연구(안식)학기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화하여, 연구 활동 성과가 향후 교육 활동에 활용되도록 함
- 2023년도 연구(안식)학기 운영 실적은 1건(이○○)의 실적이 있음⁸⁾

3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운영·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	---	---

- a) 직원의 직무역량개발 관련 규정^{9),10),11)}**
-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및 인성강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제도화 하고 있음
 - 직원 복무규정 제12조(출장 및 여비), 직원 역량개발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적·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
- b) 직원의 직무역량개발 지원 실적^{12),13),14)}**
- 각 부서별로 교육훈련비를 책정하여 담당자별 협의회 주관 교육 및 직무관련 교육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 39건 10,189천원이 교육훈련 참여 실적이 있음
 - 교직원 2023학년도 연수 프로그램(청탁금지법,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보안교육) 실시함

▶ 2023년도 청탁금지법은 33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209명이 교육 이수, 아동학대예방교육은 419명이 교육이수,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433명이 교육이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19명이 교육이수, 보안교육은 41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기타 사항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교육, 공공기관 일반 대기환경, 수질환경 기술인 실무교육 등 지원 교육에 대한 결과를 해당 직무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음

c) 직무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 직무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평가 자료

- 직무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평가로 2023학년도 교육지원에 대한 기대효과, 기타(느낀점)를 조사 실시 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이상 학교 사정으로 승진 등의 행정업무가 실시되지 아니 하였기에 평가자료의 활용 실적은 없음

■ 교원 역량 개발 (※ 최소 16주 이상 산업체 연수학기만 기재)

년도	인원수	성명	시작일	종료일	파견처	국내국외	제도명	기타
2023	1	이○진	2023.03.01	2023.08.27.	개별연구	국내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	소프트웨어 융합과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전임교원의 역량개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규정을 갖추고 운영·평가하여 활용하고 있음 ▪ 기관평가인증기준 매년 1명이상 교원연수진행을 권고 하고 있으며, 대학은 16주 이상의 연수 등 장기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Y
--------------	--	---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6.1.2	1) 전임교원 역량개발 관련 규정
	2) 국내외 학술대회 및 협의회 활동 지원 실적(2023년도)
	3)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연수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4)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연수 프로그램 결과보고(2022)
	5)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6) 강의개선계획 관련 기안 및 협조문(2023)
	7)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
	8) 연구(안식)학기 운영 실적 시행 기안문
	9) 직원 복무규정(제정 1987.3.1., 개정 2020.8.1.)
	10) 직원 역량개발규정(제정 2011.7.1., 개정 2014.9.1.)
	11) 교육훈련 참여 관련 입증자료 (2023학년도)
	12) 교육실시결과(2023)
	13) 연말정산 교육,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사 실무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연구실 안전주간 참여 등 지원 교육 관련 입증자료 (2023학년도)
	14) 직원 여비교통비 예산집행 내역(2023학년도)

6.1.3 연구

○ 주요 판단사항

1	<p>대학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가?</p>	✓
<p>a) 연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자체연구비지원 및 관리규정」,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하여 운영함. 교수의 연구 활동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교내자체연구비 지원, 연구(안식)학기 실시, 학술대회 참가비 등을 지급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¹⁾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전임교원의 교수법 연구, 역량개발, 지원 등의 수행 기능을 명시하고 계획, 실행, 결과, 환류에 대해 운영하고 있음 <p>b) 연구 활동 지원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실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연구지표 향상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34,638천원의 자체연구비 지원 실적이 있음²⁾ • 안식(연구)학기 제도를 운영하여 2023학년도 1명(이○○) 지원 실적이 있음³⁾ •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2023년도 교수 연구활동 지원 실적 63건(교내과제 62건 42,532천 원, 교외과제 1건 51,000천 원)이 있음⁴⁾ • 교원의 연구 역량개발 및 양질의 교수법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연구대회 프로그램을 연간 1회 실시하고 있음⁵⁾ • 교원의 연구 자조모임으로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주제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짐⁶⁾ • 2023학년도 교수학습연구대회에 4명 참여하여 1,3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원 학습공동체에 7팀이 참여하여 1,419천원을 지원하였음^{5),6)} <p>c) 연구 활동 성과 평가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의 장기발전 및 행정업무 혁신에 활용되도록 교원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재임용 및 승진 요건을 갖추어 2022년 5월 1일 자 부교수 승진 임용, 2024년 3월 1일 자 교수 재임용 평가 시부터 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연구비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물의 타당성 등 교수 연구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추후 대학 내 활용방안을 모색함⁷⁾ - 교수학습연구대회와 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어 교수지원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교수학습연구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연구를 통해 강의의 질제고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며 수상작은 차년도에 전체 교수자들에게 공유 및 확산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환류할 예정임 -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전공에 적합한 교수법을 연구하며 직접 적용해보는 기회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논문 작성 등 보다 연구결과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환류할 예정임 		
2	교원의 연구실적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2022학년도 0.43건, 2023학년도 0.49건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0.2건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⁸⁾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교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교원의 연구실적은 충족요건인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을 상회하므로 자체평가 기준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6.1.3	1) 연구활동 지원 관련 규정
	2) 자체연구비 지원 절차 및 지원현황
	3) 연구(안식)학기 운영 실적 시행 기안문 등
	4) 정량지표 현황 양식: 연구비수혜실적
	5) 교수학습연구대회 결과보고(2023)
	6) 교원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결과보고(2023)
	7) 자체연구비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8) 정량지표 현황 양식: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6.2.1 처우 및 복지

○ 주요 판단사항

1	교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 우리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은 2022회계연도 48.4%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3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¹⁾</p>		
2	직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p>a)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21학년도 20.6% 및 2022학년도 23.5%로 평가 기준을 충족함</p> <p>- 대학의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22년 회계연도 23.5%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인 11.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¹⁾</p>		
3	대학은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p>a)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규정 및 공지^{2),3),4),5)}</p> <p>- 교·직원 복지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교직원 복지지원을 위해 교직원 복지지원 규정에 제3조(복지지원 유형)에 의거 경조금, 자녀대학입학축하금등을 규정등⁴⁾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p>- 관련 규정 공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 지원 시 관련 문서를 메일을 통해 공지하고 신청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p>- 교·직원 복지제도 및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입증자료 ‘3. 교·직원 복지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재정적 범위 내에서 지원 및 포상을 하고 있음 <p>b)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실적 및 개선 노력^{6),7)}</p> <p>- 교·직원 복지지원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대상 복지제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p>▶ 2023년도의 경우 경조금(700천원), , 명절휴가비/월동준비수당(226,039천원), 자녀대학입학 축하금(10,000천원),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825천원)</p> <p>· 직원 대상 복지제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p> <p>▶ 2023년도의 경우 복지지원금(500천원), 경조금(400천원), 명절휴가비/월동준비수당(148,329천 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4,000천원),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3,355천원)</p>		
판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급여수준은 기준(평가기간 내 평균 30.0%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 이상)을 상회하며, 직원의 급여수준은 기준(평가기간 내 평균 11.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 이상)을 모두 상회함 ▪ 위와 같이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Y

○ 증빙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6.2.1	1) 교비회계 결산서(2022 회계연도)
	2) 교·직원 복지 지원 규정(제정 2001.1.1., 개정 2018.6.1.)
	3) 관련 규정 공지 현황(홈페이지-> 공지사항->제규정공지)
6.2.1	4) 교·직원 복지제도 및 현황(교직원 장기근속 포상규정/교직원 정년퇴직자 포상규정 -개정 2024.03.08.)
	5) 복리후생 지원 시 관련 문서 메일(장기근속포상/정년퇴직자포상)
	6) 교·직원 복지지원 실적(2023학년도)
	7) 기타 관련 입증자료-예산집행내역

제4장 종합분석 및 활용

1. 종합분석

1.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 우수사항

- 교육품질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의 연간예산 계획수립은 부서별 예산회의와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대학예산(안)에 대하여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함으로써 대·내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수립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기관평가인증 산정기준에 의거 2022년 회계연도와 2023년 회계연도 교육비 환원율은 요구수준인 100% 이상을 충족하며, A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등 제반 관련 법령과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감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예산회계규정, 내부감사규정을 재정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2) 개선 및 환류계획

- 각 부서별로 교육품질개선을 위한 당해 연도 사업결과를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는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발표,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환류체계를 구축

1.2 교육과정

1) 우수사항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정책 및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품질을 유지함

- 전공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은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진행이 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환류하여 교육과정의 질이 유지되도록 위원회를 통해 심의 평가함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개발(개편)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위해 외부 환경분석,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연구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통해 심의 평가함
- 대학의 교육품질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공교육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진행하며, 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품질개선을 위해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 변경, 교수학습법개선, 교육역량강화, 교육환경 개선을 진행 함

2) 개선 및 환류계획

- 대학의 교육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교육품질관리 관련 자체평가를 총괄점검하고 환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

1.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1) 우수사항

-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입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과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고자 입시홍보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음
- 입시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입시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입시정책 계획수립에 반영·개선하고 있음
-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학사관리규정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제반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으며, 수업 및 학생의 학사관리를 수업기간 준수 점검, 학생출결관리 점검, 성적부여 점검, 학사경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재학생 등록유지를 위해 J-CA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달성 및 교육품질개선을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전문가 상담, 다양한 제도 운영, 유관부서와의 협업, 평가 및 환류를 달성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대학은 원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영상강의 연동을 통해 원격수업 시스템 지원 및 질 제고를 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업적평가와 재임용 및 승진에 반영하고,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유절차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수의 교수학습능력 향상과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반영을 하기 위하여 환류체계를 갖추고 개선을 위해 노력함

2) 개선 및 환류계획

- 대학 구조조정 및 입시홍보 인력구축과 전문화 필요
- 학부(과, 계열) 개편 및 입학정원을 조정
- 대학 이미지제고 및 온라인홍보를 강화
- 고교 진로 특강 및 대학의 학과 진로체험을 통한 입시홍보 경쟁력 강화

1.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1) 우수사항

- 산학협력활동의 기반이 되는 가족회사와 산업체수는 B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인원이 확보됨
- 교내 취업캠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지도 등)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하고 있음
- 현장실습관리 시스템(J-WESS)이 안정화 됨
: 현장실습 시스템(J-WESS)를 통하여 편리하게 실습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보수관리를 통한 시스템이 안정화 됨
-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현장실습 안전공제 보험을 가입함
-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행함
-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위원회를 통한 운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좌모니터링과 함께 개선에 반영함

2) 개선 및 환류계획

-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수의 경우 전년대비 34개가 감소하여 각 분야 산업환경의 실

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선 필요

-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미비하여 보완 및 개선 필요
- 지자체, 유관기관 간 투자연계 지원과 확대 필요
- 공공기관 및 산업체 채용정보 발굴 및 다양한 홍보방법 모색 필요
- 현장실습의 경우 표준현장실습이 도입되면서 현장실습 참여인원이 감소되고 있어 현장실습 이수율 지표관리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현장실습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우수현장실습업체 발굴을 통한 취업연계 확대 필요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정착화 필요

1.5 학생

1) 우수사항

- 대학은 학생복지 관련 규정과 조직, 업무분장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매년 총학생회 및 학과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학생 의견수렴 과정을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음
-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비율은 2022회계연도 16.2%, 2023회계연도 18.3%로 충족 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과 조직, 업무분장의 추진체계를 갖추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만족도조사, 학생회간부 간담회 설문조사 등 학생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대학운영계획(학생활동지원)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및 개선안) 도출 작업을 통해 환류함으로써 평가체계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의 교육복지강화를 위해 규정 및 지침 등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제공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개인정보 및 학사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운영·활용하여 정보보호 수준 진단 정책을 정기적으로 시행함

2) 개선 및 환류계획

- 학생복지 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지원체제의 강화 필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한 지원체제 강화 필요
- 장애대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지원을 위한 대학생활 및 교육상담지원 제도 확대방안 수립 예정
- 학생 휴게공간의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개선과 확충 필요
- 개인정보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 필요

1.6 교직원

1) 우수사항

-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 인사평가, 해임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립학원 정관과 교원인사관리규정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인사제도 운영 시 규정준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함
-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원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엄정한 직원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교원의 역량계발을 위한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학부(과, 계열) 및 교원 업적평가규정(안식학기 연수, 산업체 연수 등)에 반영하여 재임용, 승진 등을 활용하고 있음

2) 개선 및 환류계획

- 교원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 방안 마련
- 직원의 기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의 운영방안 필요

2. 자체평가지표 평가(성과평가) 환류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환류계획	담당 부서
교지/교사	교지확보율	정보공시 산정기준에 따른 교지확보율은 입학정원기준 2023년 221.3%이며,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위한 학습·연구·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충분한 교지를 확보하고 있음	교지확보율 100%이상 충족 유지하고 있음	총무팀
	교사확보율	정보공시 산정기준에 따른 교사시설 확보율은 입학정원기준 2023년 260.9%이며,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위한 학습·연구·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충분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음	교사확보율 100%이상 충족 유지하고 있음	관리팀
교원 확보	전체교원확보율	당해 연도 평가지표 값/전년도 평가지표 값×100 산출식에 따라 계열별 전체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생 1인당 전체교원 확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계열별 전체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생 1인당 전체교원 확보의 경우 90% 이상으로 전체교원확보하고 유지하고 있음	교무팀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수 대비 교원법정 정원에 대한 전임교원 충족수준인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50.0%)상회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평가기준인 매년 8월 정보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관리가 필요함 학생수감소와 학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충족관리가 필요함	교무팀
	원어민교원 확보율	계열별 전체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생 1인당 원어민 교원확보율로 산출자료를 잡고 있음 원어민 교원확보율에 있어 외국인 교원수는 변동이 없고, 내국인 교원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교원확보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표상의 검토가 필요함	외국인유학생 관련 반이 개설되고 있어 관련학과의 강좌 및 외국어 강의 가능 교원 활용등의 원어민 교원 확보율 관리가 필요함	교무팀
재원 확보	외부회계법인 감사 평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 4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 1항, 학교법인 서립학원 정관 제25조, 내부감사규정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년도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후 감사결과보고서를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여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	변경되는 사립대학 재무회계 처리 규칙을 숙지하여 결산서를 작성함	재무팀
	재정지원사업 유치실적	2023년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상태로 외부 지원 신청에 한계가 많았음.	2024년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하여 재정지원유치 실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산학협력처
예산 관리	예산 편성내용의 적절성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2023학년도부터는 Renewal 2030)와 기관인증평가에 체계적으로 연계된 사업부서별 예산 편성하여 추진 및 운영하고 있음	대학 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법인전입금, 기부금, 수익사업)과 한정된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노력의 필요함.	기획처

강의 만족	강의평가	주기적 강의평가 결과 환류 및 개선 성과에 대해 강의평가 내용 개선 실적 및 평가 환류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평가 내용의 적합성 제고 및 환류 계획에 대한 내용의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	강의평가 문항 적합성 점검의 정례화. 강의평가 결과 환류 계획의 다각화. 강의평가 결과 하위자 대상 교수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독려 노력	교무처
교과 개설패	산업체연계교육과정개설패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발 절차로 산업체 요구분석 포함이 되었는지 대한 성과평가 항목으로 7개 학과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보고서 내 산업체 요구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시함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산업체 인사 및 회의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산업체 연계 교과목의 개발 편성에 대한 환류내용을 제시함	교무처
학생 지원	입시경쟁률	경기도 소재 30개 전문대학교 중 1,000명이상 전문대학의 신입생 경쟁률 평균값은 6.5:1이며, 장안대학교는 신입생 경쟁률이 3.4:1로 나타남	입시정책 수립시 입시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입시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분석된 입시결과를 학과별 공유하여 입학자원 유치를 위한 학과별 전략이 필요	입학처
	신입생 충원율	2023 신입생 충원율 36.23%로 기관평가인증기준을 미충족함	학과별 맞춤 전형 개발업무를 통한 신입생 충원을 및 재학생 등록 유지율을 전체(수도권, 비수도권) 90% 이상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대학의 특성화 및 장점을 살리고 입학자원인 학생자원 및 성인학습자(만학도)등 다양한 요구에 맞는 입시정책 도입.	입학처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수(A) : 2,133 학년도별 정원내 입학생수(B) : 2,103 재학생 등록유지율 (A/B×100) : 101.4 산출식 = 대학평가지표 값/기관평가인증 기준 자료×100 산출값 = 101.4/80 ×100=126.75%	학생지원 프로그램 강화 : 재학생 만족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우울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학생 커뮤니티 구축 :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증진시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높을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을 구축 함.	교무팀
학생 지원	교육비 환원률	우리대학의 교육비 환원률(총교육비/등록금수입)*100=161.5%로 기관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우리대학 교육비 환원률은 161.5%로 기관인증평가 평가충족 기준인 100%를 상회하는 결과로 등록금이 대학의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당 비율을 유지하고자 함	재무팀
	제학생 1인당 장학금	2023학년도 우리대학 등록금 산정 2가지 유형의 평균값을 목표 값으로 산정하였고 목표 값의 86.3%를 충족함	2023학년도 재정제한대학 선정으로 국가장학금 등이 전년대비 60% 감액되었으나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제1유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되어 1인당 장학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학생 지원처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외 장학금 지급비율 산출 결과 18.3%로 기관인증평가충족기준인 10.0%와 전문대학	2024학년도 장학금 지급률은 입학률 감소로 등록금 수입 감소 및 국가장학금 2유형 미참여로 인해 13%로 조	학생 지원처

		평균 장학금 지급률인 15.7%를 상회하는 결과임	정하여 책정하였으나 이는 기관인증평가 기준인 10.0%를 달성하는 결과이기에 유지할 예정임	
연구 성과	전임교원 1인당 게재논문	전임교원실적 정보공시자료 기준으로 산출 값이 208.08%로 논문게제 실적이 높아 충족된 상태임	기관평가인증시 전임교원 1인당 정보공시 및 대학자체증비포함 연구실적을 보고 있으며, 충족요구수준이 0.2건 이상으로 지표관리에 있어 1인당 게재논문 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교무팀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으로 우리 대학 평가지표 값/기관평가인증 기준 자료×100에 의거 40.34%를 보이고 있어 평가지표 기준 미충족으로 보여짐	기관평가인증 시 전임교원 1인당 정보공시 및 대학자체증비포함 연구실적을 보고 있으며, 충족요구수준이 0.2건 이상으로 지표관리에 있어 저·역서 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교무팀
산학 결연	산학결연실적	일반협약 기준으로 체결한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 체결 건수가 작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외 한국관광공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산업진흥원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함	산학협력 체결기업 및 가족회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과 교수의 참여를 유도 노력 필요	산학협력처
만족도	산학협력 수익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고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 상황임. 2023년 수익률은 작년 대비 다소 증가함.	현재 우리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서 국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차년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국고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함	산학협력처
산업체 경력	겸임초빙교수 1인당 학생수	교원확보 산출율 자료로 겸임·초빙교원수가 전년대비 89.5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초빙교원의 능률성과급 지급페이지에 따라 향후 교원 확보율 포함을 위해 산업체 재직여부 등 확인하여 겸임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규정 검토가 필요함	교무팀
평생 교육	평생교육과정 개설실적	개설 교육과정은 2023년도 총 16개로, 3개년간의 교육과정 개설 건수를 기반으로 하는 목표 값을 충족함	향후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홍보 활동 노력 필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운영 수지율	일반과정 수지율은 2023년도 지표값이 1.36으로 지난 3개년간의 수지율 평균값을 기반으로 하는 목표 값의 98%에 해당함	수지율은 매년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목표값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특장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를 지속 진행하고, 강사의 적극적인 수강생 모집의 동기부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력 필요	평생교육원

취업 성과	전체 취업률	기관평가인증지표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 전체 취업률은 2023년 71.5%로 작년 대비 6.6% 상승하였으며, 평가기간 내 평균 68.2%로 60%이상을 충족함	전년도 대비 취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취업률 상승을 위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관련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 노력 필요	취창업 지원
	정규직 취업률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업률을 기준으로 2023년 취업률은 55.9%로, 작년 대비 2.5%상승하여, 평가 충족기준 대비 100%이상을 달성함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업률이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률에 대한 개인창작활동 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어, 지속적인 정규직 취업률 상승 방안이 필요함. 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실습강화를 통한 취업기회 지속 제공 노력 필요	취창업 지원
교육 만족	재학생교육 만족도	전년도와 비교 시 전반적 만족도항목 기준 102.49%로 나타나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만족도조사의 경우 기획처, 교무처, 산학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획수립 목표값 설정과 함께 재학생 만족도 관리를 하기위한 활용방안 매뉴얼작성이 필요함	교무팀
학과 평가	학과평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과의 신입생 입학지원율 목표 달성 부진 일부 학과는 입학지원율을 신입생 총원율(등록율)로 이해하여 성과를 기재한 경우 있음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과의 재학생충원율 목표 달성 부진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과의 중도탈락률 목표 달성 부진 타 지표에 비해 취업률 목표를 달성한 학과가 많아 대학 전체 졸업생 취업률 성과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 학과 운영 전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과는 목표치를 상회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을 확인 만족도 조사결과는 교무팀의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목표 및 달성치를 기재하도록 성과관리부서에서 학과에 안내하도록 건의	전반적으로 학과성과평가보고서 작성 시 환류와 개선사항을 구분 지어 작성할 필요가 있음	기획처
부서 평가	행정부서평가	일부 부서는 부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 성과달성 미흡. 부서 인력, 예산 규모, 사업의 중요도 및 필요성,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할 필요 있음 핵심지표를 관리하는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지표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부서에서의 성과 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부재	자체평가를 통한 문제점(개선사항) 도출 미비 부서 다수 확인됨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 환류 계획 내용의 보완 필요함 구체적 개선 일정을 제시하도록 했으나 일부 부서는 개선 일정을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하여 보완 필요	기획처
외부 평가	외부기관의 평가인증실적	이행도 평가를 위한 진단항목평가표, 이행 정도를 수치화하여 추진 성과평	평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 여부에 대하여	기획처

		가 반영 필요함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한 점을 수정하여 반영된 내용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	
--	--	----------	--	--

그림 자체평가 환류시스템 체계도